

국가 기술 경쟁력 강화를 위한 직무발명 보상 조세제도의 개선

A Proposal for Amendment of Taxation System
for Compensation Act of the Employee Invention



국가 기술 경쟁력 강화를 위한 직무발명 보상 조세제도의 개선

A Proposal for Amendment of Taxation System
for Compensation Act of the Employee Invention



■ 집필위원장

백 용 기 (한국과학기술한림원 정회원, 연세대학교 연구트랙 명예 특임교수)

■ 집필위원

김 승 호 (법무법인 태평양 변호사)

박 재 근 (한국과학기술한림원 정회원, 한양대학교 교수)

임 기 병 (경북대학교 연구산학처 처장)

정 지 선 (서울시립대학교 교수)

하 흥 준 (한국지식재산연구원 보호·신지식연구실 실장)

홍 순 형 (한국과학기술한림원 정회원, KAIST 교수)

요약문

연구과제명

국문 국가 기술 경쟁력 강화를 위한 직무발명 보상 조세제도의 개선

영문 A Proposal for Amendment of Taxation System for Compensation Act of the Employee Invention

연구책임자 | 백 용 기

한림원 소속부 | 이학부

- **직무발명 보상 조세법 개정의 필요성:** 직무발명이란 대학 교직원이나 기업체 연구소 연구원 등이 현재 또는 과거의 직무와 관련하여 발명한 것으로 그 결과물은 발명자 주의 원칙에 따라 발명자의 원시적 소유이며, 실제로 국가 전체 특허의 약 80%를 차지할 만큼, R&D 결과물의 핵심 자원인 동시에 국가 기술 경쟁력의 상징으로 인식되고 있음
 - 직무발명으로 생긴 특허와 같은 산업재산권의 소유를 기업체나 사용자에게 양도할 경우 발명자는 「발명진흥법」 제15조 등에 의하여 정당한 보상을 받는데 이를 ‘직무발명 보상금’이라고 하고, 이에 대한 소득 처분을 과세하는 일련의 법적인 절차를 직무발명 조세제도라고 정의함
 - 이 직무발명 조세제도의 근간은 소위 직무발명 소득세법(예, 소득세법 제20조 제1항 제5호 및 관련 시행령)이고, 이 역시 다른 법률과 마찬가지로 국민의 평등권과 조세 형평성 및 공정성을 가장 중요한 기준으로 삼아야 함
 - 직무발명 보상에 대하여 1980년부터 2016년까지는 정부가 전액 비과세로 한 덕에 연구 발명자들은 의욕적으로 창의적인 발명을 통해 기술 이전을 활발하게 할 수 있었고, 그에 힘입어 오늘의 국가 기술과 경제적 위상을 가질 수 있었다고 믿어짐

- 그러나 아직도 개발도상국의 지위를 감안 우리나라는 정부가 더 적극적으로 나서서 발명자의 사기를 북돋우는 정책을 실행해도 모자랄텐데, 오히려 역주행하고 있음은 매우 안타까운 현상임. 그 이유는 바로 문제가 많은 소위 “직무발명 소득세법” 때문임
- 현 직무발명 소득세법은 특허 등과 같은 산업재산권의 양도로 발생한 소득에 대해 기타소득으로 규정해 놓고도, 재직 중인 발명가에게만 차별적으로 세율이 최고 42%인 징벌적인 근로소득세와 무조건적인 종합소득세를 부과하고 있음
- 이는 매우 불공평한 과세 정책이므로 이 어려운 난국에 연구자들의 발명 의욕을 꺾을 뿐 아니라 정부 스스로 헌법 제11조에 규정한 평등권과 조세 형평성 원칙을 심각하게 위반하고 있다고 믿어짐
- 따라서 이 징벌적인 직무발명 소득세법을 지금 고치지 못할 경우, 치열한 무역 분쟁과 기술 경쟁 속에서 국가 기술 혁신의 동력을 잃는 치명적인 결과를 가져 오지 않을까 매우 우려됨

■ **직무발명 보상 조세법의 문제점:** 현 직무발명 소득세법의 3대 결함 내용을 간단히 요약하면 다음과 같음

- 첫째, 현 직무발명 소득세법(소득세법 제20조 제1항 제5호)은 헌법 제11조 평등권에 위배됨. 특허권 등의 양도 또는 대여로 인한 소득을 얻을 시 재직자에게는 근로소득세(최고 42%)를, 퇴직자에게는 기타소득을 각각 과세하는 행위는 목적이 분명하지 않은 자의적 차별 행위이기 때문임
- 둘째, 현 직무발명 조세법은 이중적 과세 기준을 적용하고 있어 위법임
 - 발명 특허와 같은 산업재산권 양도는 모두 기타소득으로 규정해 놓고도 근무 관계의 유지 여부(재직 vs 퇴직)에 따라 동일한 소득에 대하여 그 성격이나 담세력에 있어서 차이가 없는데도 소득의 구분 변경(근로소득에서 기타소득으로의 구분 변경)을 초래하여 이중과세 기준을 인위적으로 만들고 있으므로 위법임

○ 셋째, 현 직무발명 조세법은 사회적 합의 없이 졸속으로 개악된 소득세법임

- 2016년 12월 소득세법을 개정 시 관련 분야 종사자들에게 왜 소득세법을 바꿔야 했는지에 대한 당위성이나 이유를 공개적으로 제시한 바 없고, 의견 수렴 과정도 거치지 아니한데다, 개정 과정도 매우 투명하지 않았기에 졸속 개악법으로 여겨짐([부록 ②] 참조)

- 위의 3대 위법성을 지닌 현 직무발명 소득세법은 심각한 부작용을 일으킬 수 있는바 이 중 5가지만 적시하면 다음과 같음

- 하나, 현 직무발명 관련 조세법은 발명 의욕 저하와 조기 퇴직을 유도하여 발명자의 후속 연구가 필요한 고부가 가치의 제품화 개발을 원천적으로 막을 수 있을 뿐 아니라
- 둘, 발명 의욕 저하로 인해 국가 기술 혁신을 방해하여 일본이나 중국 등 기술 경쟁국들을 이롭게 할 수 있음
- 셋, 국가 R&D 선순환을 막아 지속적인 기술 경제 개발의 원동력을 상실케 할 뿐 아니라
- 넷, 특허 양도 계약으로 얻은 기타소득 대상에 잘못된 근로소득세를 부과하여 과세 요건 법정주의 및 명확주의를 위배함으로써 발명자들의 과도한 재산권을 침해 하고 있으며
- 다섯, 장기적으로는 발명 의욕 상실 등 상기한 부작용으로 인해 기술 경쟁국 대열에서 밀려나 글로벌 시장에서 사라진 노키아의 길을 따라갈 우려를 자아내게 함

○ 결론적으로, 2015년 대법원과 조세심판원의 여러 판결들에 의해 현 직무발명 소득세법의 논란중의 하나이기도 한 ‘지급 방법이 세금 종류를 결정했던 사례’가 위법 판정을 받았는데도 정부가 계속 재직자의 직무발명 소득에 대해서만 불평등하고 차별적인 근로소득세를 과세하는 것은 국가 권력의 중대한 남용으로 인식될 수 있으므로 즉각 개정해야 함

■ **직무발명 조세제도 개선을 위한 정책 제언:** 현재 문제가 많은 직무발명 소득세법을 개정하는 데에 다음과 같은 고려 사항을 반영할 것을 제언함

- 첫째, 개선 방향: 직무발명 보상에 대한 조세제도를 개정할 때는 발명자의 의욕을 살려 직무발명을 활성화할 수 있는 방향으로 추진해야 할 것임
- 둘째, 공평 과세: 다른 산업재산권 양도와 동일하게 직무발명 보상금도 근무 지속 여부와 관계없이 기타소득세로 과세해야 함. 왜냐하면, 소득의 특성상 취득가액 자체가 존재하기 힘든 조세 구조를 갖고 있어 일정한 기타소득 과세가 합당함
- 셋째, 고용 관계: 대학의 경우 산학협력단과 발명자 간에는 직접적인 고용 관계가 성립되지 않으므로, 산학단을 통한 교직원에 대한 발명 보상금은 기타소득으로 과세하여야 함
- 넷째, 소득의 성격: 직무발명 보상금은 일시적인 소득이지 정기 급여나 그의 일부인 상여금이 아님. 우리와 직무발명 제도가 비슷한 일본에서도 이것을 '일시적인 잡소득'으로 보기 때문에 성격상 기타소득 과세가 타당함
- 다섯째, 비과세 한도: 선진국에 비해 직무발명 평균소득이 매우 영세함을 감안해 비과세 한도를 3,000만 원으로 정하고, 초과분에 대하여는 규정대로 처분하는 것이 바람직함
- 여섯째, 조건부 종합과세: 2016년 12월 정부가 직무발명 보상금에 대한 과세 방식 개정 시 조건부 종합과세 항목에 들어있지 않았기에 즉각 수정이 필요함. 짐작 하건대 이는 심각한 행정 착오로 믿어짐. 그렇지 않을 경우 뇌물, 알선 수재 및 배임 수재에 의하여 받는 금품, 계약금이 위약금·배상금 등과 같은 부류로 남게 되는 실수를 반복하게 됨

■ 결론: 이런 모든 문제점을 해소하기 위해 직무발명 조세법의 개정 대상을 아래와 같이 건의함

- 첫째: 소득세법 제12조 제3호 어목의 비과세소득을 모든 직무발명 보상금으로 수정 및 관련 규정 정비
- 둘째: 소득세법 제20조 제1항 제5호 및 제21조 제22호의2 등의 삭제 및 간주 필요경비 규정 정비

- 제20조(근로소득) 제1항 제5호 종업원 등 또는 대학의 교직원이 지급받는 직무발명 보상금
- 제21조(기타소득): 제22의2 종업원 등 또는 대학의 교직원이 퇴직한 후에 지급 받는 직무발명 보상금(제20조 제1항 제5호가 삭제될 경우 제22의2는 불필요함)
- 셋째: 소득세법 시행령 제17조의3에 따른 비과세되는 직무발명 보상금의 범위를 3,000만 원까지로 상향

■ 직무발명 보상금 조세법 개정을 위한 노력과 이의 경제적 효과

- 통합적 노력: 직무발명 조세제도 개선을 위해 정부, 국회 연구계 및 산업계가 다음과 같이 협력하여 직무발명 보상제도를 구체적으로 다음과 같이 개선해야 함
 - 정부는 즉시 직무발명 소득세법을 개정해 연구자들의 발명 의욕을 살려내고, 직무발명을 활성화시킴으로써 국가 기술 혁신을 도모하고, 경제 위기를 극복 하는 데에 발 벗고 나서야 함
 - 국회는 계류 중인 직무발명 조세법 개정안을 신속 처리해 발명 진흥 발명자의 연구 의욕을 회복시켜야함
 - 기업은 직무발명 기반 기술 경쟁력 선진화 정착을 통해 사용자와 발명을 한 종업원 사이에 합리적인 이익 배분이 가능케 하여, 종업원의 연구 의욕을 회복 시켜야 함
 - 대학은 산학단과 교원, 그리고 연구원 간의 합리적 이익 공유 제도를 실행하고, 직무발명자 지원 시스템을 확대해 기술 이전 후에도 연구가 지속되도록 장려 해야 함
- 기술 개발 시너지 효과: 이 제안한 대로 직무발명 소득세법을 제정할 경우 발명자의 발명 욕구가 회복되고 첨단 기술 개발 등 4차 산업혁명과 관련된 국가의 기술 혁신도 앞당길 수 있을 것임
- 세수 증대 효과: 발명이 사업화에 따라서 수익이 창출되면 추가적으로 법인세, 양도소득세 등을 부과할 수 있기 때문에 직무발명 자체에 대하여는 일정한 금액을 비과세하여도 국가의 입장에서는 오히려 세수가 증가할 수도 있을 것임

목 차

국가 기술 경쟁력 강화를 위한 직무발명 보상 조세제도의 개선

A Proposal for Amendment of Taxation System for Compensation Act of the Employee Invention

I. 서론 및 개요	1
1. 문제 제기	2
2. 현행 직무발명 조세제도의 법률적인 3대 결함	8
3. 현 직무발명 조세제도의 위법성 따른 5대 부작용	10
4. 직무발명 보상금의 지급 현황과 실태	14
5. 직무발명을 과도한 세금으로 억누르는 정부에 대한 공개 질의	20
6. 본 보고서 발간의 목적	22
[부록 ①] 한국과학기술한림원 원탁 토론회	23
[부록 ②] 직무발명 조세제도 개정을 발의한 2016년 국회 기획재정소위 2차 회의록	24
[부록 ③] 대학 직무발명 보상금 지급 현황(발명 신고·출원·등록 보상)	25
[부록 ④] 2016년도 대학별 기술 이전 수입 현황	27
[부록 ⑤] 2017년도 대학별 기술 이전 수입 현황	31
[부록 ⑥] 2018년도 대학별 기술 이전 수입 현황	35
II. 직무발명	39
1. 직무발명이란?	40
2. 직무발명 보상제도	41
3. 직무발명 보상금	44
III. 직무발명 보상 조세제도의 법률적인 문제점	47
1. 직무발명 관련 조세제도	48
2. 직무발명 보상금 관련 주요 국가의 과세제도	55
3. 직무발명 보상금 관련 소득세 과세제도의 법률적인 문제점	67



IV. 직무발명 보상 조세제도의 개선 방안 77

1. 직무발명 보상 조세제도의 개선 필요성 78
2. 직무발명 보상 소득세 과세제도의 개선 방안 79
3. 직무발명 보상제도 과세 체계 개선이 경제 발전에 미치는 영향 87

V. 결론: 직무발명 보상 조세제도 개선에 대한 정책 제언 95

1. 현행 직무발명 보상 조세제도 개선의 당위성 96
 2. 현행 직무발명 보상 조세제도의 주요 결함과 그로 인한 부작용 가능성 98
 3. 직무발명 관련 조세제도의 개선을 위한 정책 제언 100
 4. 직무발명 보상제도 과세 체계 개선이 경제 발전에 미치는 긍정적인 영향 103
 5. 종합 결론 104
- 참고문헌 109

목 차

표 목차

<표 1.1> 직무발명 관련 보상금에 대한 개정된 소득세법의 문제점	12
<표 1.2> 직무발명 보상금 세법 개정 이후 소득세액 증액분 등에 대한 발명자들에 대한 세금 부가 실태 조사 결과	16
<표 1.3> 대학별 산학협력단의 기술 이전 발명 보상금 집행 기준 현황	19
<표 2.1> 우리나라 기업의 직무발명 도입률 추이	41
<표 2.2> 발명 단계별 직무발명 보상의 종류	43
<표 4.1> 2018년 대학 산학협력단의 직무발명 보상금 과세 현황	90



그림 목차

<그림 1.1> 직무발명과 정당한 보상 및 국가 기술력 증진 간의 선순환 시스템	4
<그림 1.2> 대학 교직원에 적용되는 사례로 본 현 직무발명 조세제도의 내용 및 실태	5
<그림 1.3> 직무발명 조세 규정의 변경 전과 변경 후 소득세 구분 변화	6
<그림 1.4> 현 정부의 과학기술 혁신 모델에서 지식 생산 확산 및 활용의 변화	7
<그림 1.5> 직무발명 조세법의 3대 결함 및 5대 부작용 가능성	8
<그림 1.6> 현재 직무발명 조세제도는 국가 R&D 선순환 구조를 파괴할 수 있음	11
<그림 1.7> 직무발명 조세법 개정 전후의 최근 3년간 기술 이전 실적 동향	17
<그림 2.1> 직무발명 승계 및 보상 절차	41
<그림 5.1> 직무발명 조세제도의 개정 전과 개정 후의 차이	103
<그림 5.2> 직무발명 조세제도 개선 후 기대되는 경제적 파급 효과	105



서론 및 개요





I

서론 및 개요

1. 문제 제기

□ 정의

- 직무발명이란 종업원 등의 현재나 과거의 직무에 대하여 발명한 것이 사용자의 업무 범위에 속하는 발명을 의미함(제2장 참조). 다른 선진국과 마찬가지로 우리나라의 경우 전체 특허의 80%가 대학이나 연구소 같은 기관(법인)에서 생산되는 직무발명에 속하므로¹⁾, 직무발명이 곧 국가 기술 경쟁력의 원천이고, 국가 R&D의 핵심자원으로 인식되고 있음. 직무발명으로 생산된 산업재산권(예, 특허 등)에 대한 권리를 사용자가 승계한 경우에는 「발명진흥법」 제15조 등에 의하여 정당한 보상을 하도록 하고 있음. 이를 ‘직무발명 보상금’이라고 정의하고, 이와 관련된 조세 행정을 직무발명 보상 조세제도라고 함²⁾

□ 국가기술 경쟁력 관련 최신 동향

- 최근 일본의 일부 반도체, 디스플레이 산업에서 꼭 필요한 첨단소재 품목의 수출규제 조치를 보고, 그동안 국제 경쟁력이 있다고 본 우리나라 주력산업에 불확실성이 드리워지고 있음. 이번 사건으로 극복해야 할 기술적 취약성이 노출되고, 한국의 ‘반도체 강국’ 이미지도 퇴색될 지경임. 세계 각국은 미-중, 한-일 무역 분쟁을 계기로 4차 산업혁명을 리드할 것으로 기대되는 인공지능, 대용량 정보 공유 기술은 물론이고 및 블록체인 및 자율 자동차 등 각종 기술 혁신에

1) 직무발명제도, 특허청, 2011.12 발간

2) 한국지식재산연구원 심층분석보고서 2018-18호, 2018.12.20 발간

대규모 투자와 관련 산업재산권 확보 및 연구 네트워크를 선점하기 위한 기술 경쟁력을 한층 강화해 나갈 것으로 예상됨

- 한 국가의 기술 경쟁력은 일반적으로 독점적인 양질의 산업재산권 보유량으로 비교되기도 하는데 그중에서도 특허권은 한 나라의 기술 수준을 판단하는 가늠자로서, 글로벌 경제 흐름을 바꿀 수 있는 지렛대로 쓰이고 있음. 가령, 중국만 하더라도 미·중 무역 전쟁의 와중에서도 세계 최다의 특허 출원국 답게 산업재산권의 증대와 기술 이전을 통한 신제품 개발을 통해 4차 산업혁명 시대 기술 패권을 노리고 있을 뿐 아니라 기술 이전 규모에서도 121억 위안, 원화로 따지면 2조 6천억 원으로 국내 대학의 전체 기술 이전료인 약 800억 원의 30배를 넘고 있음이 보고된 바 있음³⁾
- 이번 사태로 국가 기술 경쟁력의 기준을 한 번 더 정리해볼 필요가 있음. 실례로 반도체·디스플레이 등 첨단소재 분야는 물론이고 부품, 장비 분야에서 우리나라가 선진국 수준의 기술 경쟁력 보유를 인정받으려면, 적어도 초정밀 소재 및 중간재 생산 능력, 희소 자원 재가공 또는 제품화 기술, 연구 인프라와 전문가의 선도적 리더십을 객관적으로 입증해야 할 것임. 무엇보다도 이런 요소들을 모두 포함하는 잣대가 있다면 기술력의 화폐라고 불리는 독점적인 특허권이고, 이것의 선점 여부로 국가의 기술 경쟁력이 판가름될 것임⁴⁾
- 외형적으로만 보면 한국은 GDP 대비 R&D 투자액이 많아 과학기술 혁신 의욕은 앞선 나라로 평가를 받고 있으나 연구 개발의 성과는 매우 낮다고 함³⁾. 이 지적은 R&D 투자로 진행한 기초 연구 성과가 기업체로 기술 이전 되는 게 다른 선진국에 비해 매우 미흡할뿐더러 국제 기술 경쟁력 확보도 낮아 연구 투자 대비 생산성이 적다는 것을 시사함. 정부는 이를 개선하기 위해서라도 직무발명을 활성화하여 기업체로의 기술 이전을 적극 장려해야 함을 인식해야 함

3) 한국과학기술한림원, 제134회 한림원탁토론회 자료집, 2019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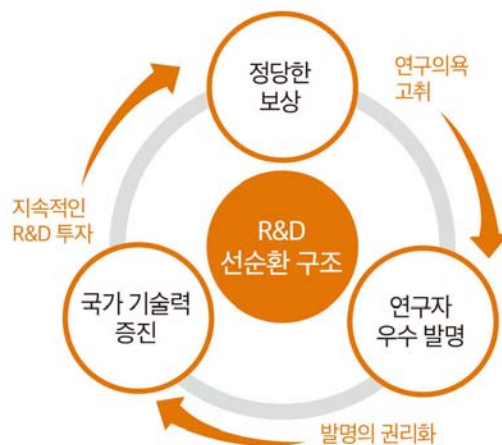
4) 정성철·윤문현·장진규, 특허와 기술혁신 및 경제발전의 상관관계, STEPI, 정책연구2004-15



□ 국가 R&D의 선순환

- 그러면, 기술 이전의 핵심 항목인 산업재산권은 누가 어떻게 만드는가? 아무리 인공지능이 발달했다 하더라도 원천 기술 개발은 일차적으로 사람의 발명 욕구와 창의적 아이디어에서 기인되는 것으로 봐야함. 따라서 국가산업을 발전하려면, 직무발명에 대한 연구원들의 의욕과 특허 양도를 통한 기술 이전 시 그들이 받을 보상이 적절하게 이루어져야 추가 발명의 동기 부여가 주어지는 것임(발명진흥법 제15조). 그리고 이를 뒷받침 하는 선진화된 연구 환경도 중요한데, 이것을 ‘국가 R&D의 선순환 시스템’이라고 정의함⁵⁾(<그림 1.1>)
- 그렇기 때문에, 연구자의 발명 의욕은 국가의 R&D 선순환과 원천 기술 개발의 가장 중요한 기폭제라고 봐야함. 실제로 4차 산업혁명 기술들의 기반인 인공지능이나 빅데이터, 블록체인 같은 기술도 그 시작은 개인의 직무발명으로부터 시작되고 있지 않은가?

<그림 1.1> 직무발명과 정당한 보상 및 국가 기술력 증진 간의 선순환 시스템



자료: 국제지식재산연수원 내부자료

5) 국가 R&D 선순환시스템, 한국지식재산 연수원, 2017

□ 불공평하고 차별적인 현 직무발명의 보상제도

- 국내 기초 연구 인력의 대부분을 차지하고 있는 대학과 연구소의 연구원들은 기관에 속해 있으면서 오랜 기간 창의적 연구를 통해 특허를 창출하고(직무발명), 그것이 산업재산권으로 기업체에 양도되어 기술 이전되면 그 노력에 대한 대가로 소정의 ‘직무발명 보상금’을 받고 있음(발명진흥법 제15조). 앞서 기술한 대로, “직무발명 관련 조세제도”는 바로 직무발명 보상금에 대하여 적절한 세금의 종류(예, 기타소득, 근로소득 등)와 과세 범위를 결정하는 “소득세법 규정과 그 시행령”을 일컬으며, 이 법은 다른 법률과 마찬가지로 국민의 평등권과 조세 형평성 및 공정성이 생명임⁶⁾(<그림 1.2>)
- 더욱이 우리나라는 아직도 개발도상국의 지위를 부여받고 있어서, 선진국보다 더 적극적으로 국가가 나서서 직무발명을 촉진하고 보다 많은 산업재산권의 양도를 통해 기술 이전을 독려해 국가 기술 경쟁력을 강화해도 모자랄 판인데, 작금의 상황을 보면, 직무발명 조세정책면에서는 정부가 역주행을 하고 있는 듯함. 기획재정부를 비롯한 조세 당국이 2016년에 졸속으로 단행한 직무발명 소득세법 때문임

<그림 1.2> 대학 교직원에게 적용되는 사례로 본 현 직무발명 조세제도의 내용 및 실태



6) 국세기본법 제2장, 세법적용원칙, 국가법령정보센터, 2018. 12.



이로 인해 연구자와 정부 부처, 대학 산학협력단 간 극심한 갈등과 혼란을 겪고 있음 (<그림 1.3>). 이 같이 공정하지 못한 제도로 인해 연구원들의 발명 의욕 저하는 물론이고, 대일 무역 분쟁의 와중에서 국가의 R&D 정책이 제대로 실행될 지 의문이 들고 있음

<그림 1.3> 직무발명 조세 규정의 변경 전과 변경 후 소득세 구분 변화

개정 전	현행('17년~)
[직무발명 보상금] 비과세 기타소득	재직 중 : 근로소득* 퇴직 후: 기타소득* (300만 원 이하는 비과세 처리**) (500만 원 이하는 비과세 처리***)
*소득세법[법률 제14389호, 2016.12.20., 일부개정] → 제12조 제5호 어목 / 제20조 제5호 ** 소득세법 시행령[대통령령 제27829호, 2017.2.3., 일부개정] → 제17조의3 *** 소득세법 시행령[대통령령 제29523호, 2019.2.12., 일부개정] → 제17조의3	

자료: 정영룡, 제134회 한림원탁토론회 자료집, 2019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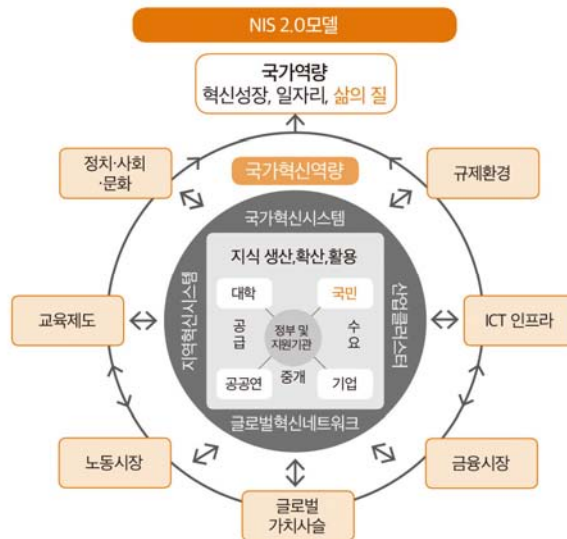
- 1980년부터 2016년 말까지 비과세가 되거나 기타소득으로 비교적 세금이 부담스럽지 않았던 직무발명 보상금에 대해 2016년 말에 개정된 ‘현 직무발명 조세제도’는 불공평한 징벌이고 차별적인 최소 42%의 근로소득과세를 하고 있음. 현 직무발명 소득세법은 같은 소득에 대하여 재직자와 퇴직자를 차별하고 있을 뿐 아니라 일부 법 적용에서도 일관성을 잃고 있음. 지금 벌어지고 있는 이런 엄중한 현상을 해당 정부 부처가 과연 얼마나 이 상황을 심각하게 인식하고 있을까 의구심마저 들고 있음

□ 정부 부처 간 일관성 없는 직무발명 관련정책

- 현재 정부 내 부처 간에도 발명 진흥과 관련해서도 일관성이 없는 것 같음. 예를 들면, 과학기술정보통신부는 과학기술 혁신 정책 2.0을 수립해 그 나름대로 급변하는 4차 기술혁명 시대를 대비하는 것으로 보이며(<그림 1.4>), 그 정책의 중심에는 특허권으로 상징되는 ‘지식 재산의 생산과 활용’이 자리 잡고 있어서 직무발명의 중요성을 국가의 과학기술 정책 추진에 핵심전략으로 삼고 있음을 알 수 있음. 특허청도 직무발명 담당 부처로서 각종 특허출원 진흥정책 일관성

있게 해오고 있음을 알 수 있음. 그러나 이들 부처와는 정반대로, 기획재정부와 조세 당국은 졸속으로 개악된 직무발명 조세법에 의거 기타소득 부과 대상인 직무발명 보상금에 유독 재직 중의 연구자들에게만 차별적으로 근로소득과 무조건적인 종합소득세를 부과함으로써 과학기술 혁신 정책에 큰 장애물을 만들고 있음(<표 1.1>)

<그림 1.4> 현 정부의 과학기술 혁신 모델에서 지식 생산 확산 및 활용의 역할



자료: 과학기술정보통신부, 국가기술혁신체계(NIS) 고도화를 위한 국가R&D 혁신방안(안), 2018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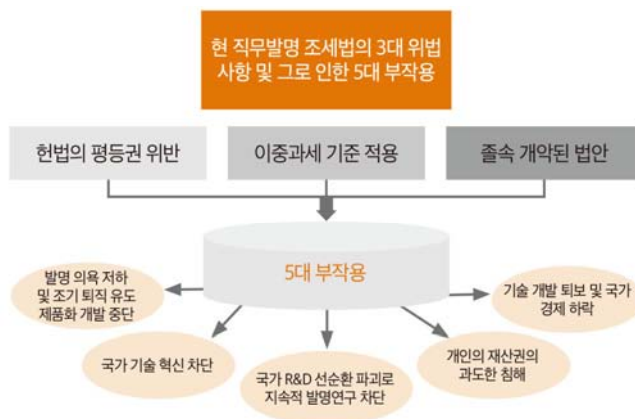
- 조만간 이러한 모순된 직무발명 조세제도를 개정하지 못할 경우, 치열한 무역 분쟁과 기술 경쟁 속에서 특히 발생으로 상징되는 국가 기술 혁신의 동력을 잃는 치명적인 결과를 안기게 될 우려가 있음
- 이러한 엄중한 상황을 직시하여, 한국과학기술한림원(한림원)에서는 2019. 4. 18. 양재동의 엘타워에서 ‘직무발명 조세제도 개선’을 주제로 원탁 토론회를 개최 하였음([부록 ①]). 잘못된 현행 직무발명 조세제도에 대한 개선안을 마련하고자 개최된 이 회의에는 발명가는 물론, 법률 전문가, 지적재산권 전문가 및 대학 산학단 관계자들이 참석하였으며 이 법의 각종 문제점과 폐단을 지적하고 개선

방안을 제안한 바 있음. 이 장(章)에서는 이러한 원탁 토론회의 연장선에서 현행 직무발명 보상 조세제도의 주요 문제점이 무엇인지를 짚어 보고, 향후 개선 방안(제5장)에 대한 논리적 근거를 제공하고자 함

2. 현행 직무발명 조세제도의 법률적인 3대 결함

지금 큰 혼란을 일으키고 있는 직무발명 조세제도는 크게 3가지 결함과 최소한 5가지의 부작용 유발 가능성을 갖고 있다고 사료됨(<그림 1.5>). 이들은 별개가 아니라 상호 의존적이며 인과 관계로 얽혀 있음

<그림 1.5> 직무발명 조세법의 3대 결함 및 5대 부작용 가능성



□ 첫째, 현 직무발명 소득세법(소득세법 제20조 제1항 제5호)은 헌법 제11조 평등권에 위배됨

○ 현행법은 입법자가 특허권 등의 양도 또는 대여로 인한 소득과는 달리 재직자의 직무발명 보상금에 대하여 근로소득세(최고 42%)를 중과세하고 있는데, 이는 목적이 분명하지 않은 자의적 차별 행위라고 생각함⁷⁾

7) 김원석·김진수, 알기 쉬운 세법령 기초 연구, 한국조세연구원, 2009.12.

- 아울러, 이런 차별적인 행위를 정당화할 객관적이고 합리적인 이유가 현행법 어디에도 제시되지 않고 있어, 2016년에 개악된 현재의 직무발명 소득세법의 시행 취지를 의심케 하고 있음

□ 둘째, 현 직무발명 조세법은 이중적 과세 기준을 적용하고 있어 위법임

- 현행 소득세법에서도 발명 특허와 같은 산업재산권 양도는 모두 기타소득으로 규정해 놓고 있음(소득세법 제21조, 기타소득조항)
- 그러나 특허 양도 계약으로 얻은 소득을 일괄 기타소득이라고 규정해 놓고도 실행 과정에서 재직 중인 발명가에게만 무거운 근로소득세를 부과하고 있음은 헌법 제59조에 근거 과세 당국의 자유 재량을 배제하기 위한 원칙에 의거 만든 ‘과세 요건 법정주의 및 명확주의를 위배’하여 국민의 재산권을 과도하게 침해한 것으로 볼 수 있음
- 특허 동일한 기타소득에 대하여 근무 관계의 유지 여부(재직 vs 퇴직)에 따라 세부담에 현저한 차이를 주는 소득의 구분 변경(근로소득에서 기타소득으로의 구분 변경)을 초래하는 것은 조세 형평성 원칙을 심각하게 훼손하고 있음
- 왜냐하면, 근무 지속 여부로 동일한 소득에 대하여 그 성격이나 담세력에 있어서 차이가 있는 것이 아니기 때문임

□ 셋째, 현행 직무발명 조세법은 사회적 합의 없이 졸속으로 개악된 소득세법으로 원천 무효임

- 비과세를 하던 과거 직무발명 소득세법을 2016년 12월 현재의 문제가 많은 직무발명 소득세법으로 개정할 때, 관련 분야 종사자들에게 왜 이처럼 급격하게 소득세법을 바꿔야 했는지에 대한 당위성이나 이유를 공개적으로 제시한 바 없고, 의견 수렴 과정을 거치지 아니했으며, 법률 개정과정도 매우 석연치 않음 ([부록 ②] 국회 기획재정소위 2차 회의록)



- 이처럼 깜깜이 논의 과정은 물론 관련 부처 간 협의도 없이 졸속 입법을 강행한 것이 맞다면, 사회 통념상 현행 직무발명 소득세법은 완전 무효라고 사료됨 ([부록 ②])

3. 현 직무발명 조세제도의 위법성에 따른 5대 부작용

□ 부작용 1. 현 직무발명 관련 조세법은 발명 의욕 저하와 조기 퇴직을 유도해 제품화 개발을 막을 수 있음

- 현행법은 활동이 왕성한 재직 연구자들이 직무발명 보상금에 부과되는 막대한 근로소득세를 피하기 위해 조기 퇴직을 선택하게 함으로써, 그들의 산업화 지원 연구를 포기하게 만들 것임. 이는 일본 수출 규제를 감안하면 국제적으로 경쟁력 있는 소재나 제품 생산을 막아 위기에 처한 국가 경제를 더욱 위태롭게 할 것임

□ 부작용 2. 위헌적인 직무발명 조세법을 남용함으로써 정부 스스로 국가 기술 혁신을 방해하고 기술 경쟁국을 이롭게 할 가능성이 큼

- 2015년 대법원과 조세심판원의 여러 판결들에 의해 지급 방법이 세금 종류를 결정했던 사례가 위법 판정을 받았는데도(<표 1.1>의 11항 참조), 정부가 직무발명 소득에 대해서만 불평등하고 차별적 과세를 계속 하는 것은, 사법부의 판결을 무시한 행정부의 권력 남용으로 보여짐
- 이로 인해, 연구 의욕이 꺾이고 국가기술 혁신이 방해받고 있다면, 누가 책임을 질 것인가? 이런 불평등 조세제도의 폐해로 이득을 보고 있는 세력은 바로 일본, 중국과 같은 우리의 경쟁 국가들임을 직시해야 함

□ 부작용 3. 국가 R&D 선순환을 파괴하여 지속적 발명 연구를 차단할 수 있음

- 현 직무발명 조세법은 국가 기술 경제 개발의 원동력인 R&D 선순환 시스템을 파괴하지 않나 우려됨(<그림 1.6>). 즉, ‘연구 발명 의욕 → 우수 특허 생산 → 기술 이전 → 적절한 보상 → 국가 기술 혁신’이라는 국가 R&D 시스템의 선순환 구조가 연구 발명 의욕 저하로 첫 단계부터 손상되고 있기 때문임

<그림 1.6> 현재 직무발명 조세제도는 국가 R&D 선순환 구조를 파괴할 수 있음



- 현행 세법은 창의적 발명의 가치를 조세 수입적 측면에서만 판단하여 수많은 발명인들의 창의성을 억제하여 지속적인 발명을 차단할 수 있음

□ 부작용 4. 직무발명 조세법은 연구 발명자들의 과도한 재산권을 침해 하고 있음

- 직무발명 소득은 정상적인 근로소득과는 달리 임시소득 또는 변동소득의 성격을 지니고 있어, 특정 연도 편중성은 불가피한데, 과중한 세부담의 누진적인 증가를 가져오는 문제가 있음. 현행법 하에서는 평균과세 장치를 도입하여 무조건적인 종합소득세⁸⁾를 부과하는데, 이는 곧 지나친 재산권 침해임

8) 「소득세법」 제63조



- 기타소득에 해당하는 직무발명 보상공금은 원천징수되는 소득임에도 불구하고 조건부 과세 방식을 적용하지 않아서 원천징수되지 않는 범죄성의 뇌물 등과 취급되어 같이 무조건 종합과세가 대상으로 처분되고 있어 재직 중인 직무 발명자에게 매우 큰 세금 폭탄을 안기고 있는 셈임
- 특히, 근로소득세가 인상되면, 지방세, 종합소득세 역시 올라감으로, 오히려 받은 보상공금보다 세금을 더 내는 역올한 사례도 실제 보고되고 있음(<표 1.2>)

□ 부작용 5. 발명 의욕 저하로 기술 변화에 적응 못해 글로벌 시장에서 사라진 노키아의 길을 따라갈 수 있음

- 한국은 과학기술 혁신 의욕은 앞서지만 연구 개발의 성과는 매우 낮다는 평가가 있는데, 직무발명을 활성화 시켜 이런 오명을 씻어야 함
- 따라서, 정부는 오직 세수 확보에만 관심을 가진 나머지 발명자에게 세금 폭탄을 던지는 근시안적인 조세 정책을 과감히 바꾸지 않으면, 휴대폰의 선두주자였다가 기술 변화에 적응 못해 경쟁 대열에서 사라진 노키아의 길을 따라갈 수 있을 것임

<표 1.1> 직무발명 관련 보상공금에 대한 개정된 소득세법의 문제점

	개정 전 (~2016.12)	개정 후 (2017.1~현재)	현행법 근거	모순점
과세 여부	직무발명은 원시적으로 발명자에 속하므로(1), 그 권리의 양도에 따른 보상공금은 액수에 관계없이 비과세 혹은 기타 소득(2,3)으로 인정함	종업원 등 또는 대학의 교직원이 지급받는 특허 양도에 따른 직무발명 보상공금은 산업재산권의 양도에 따른 기타소득(2,3)인데, ○ 재직 중 받는 경우엔 근로소득이고(4,5), ○ 퇴직 후 받을 경우엔 기타 소득으로 규정함	○ 직무발명 근거와 보상의 성격(6) ○ 직무발명 대가의 성격을 근로소득으로 규정한 것(4,7).	직무발명은 산업 재산권인 특허권의 양도로 발생한 기타 소득인데, 근무 지속 여부에 따라 근로소득세 혹은 기타소득세로 과세함은 헌법11조 평등권(10) 위반이고, 대법원 판결에도 저촉됨(11)
비과세 대상		직무발명 보상공금(발명진흥법 제2조 제2호에 따른 직무 발명으로 받는 보상공금)으로 연 500만 원 이하만 비과세로 인정	소득세법 제21조 제1항 제22호의2(4,5) 비과세소득(소득세법 제12조 제3호 어목(8) 소득세법 시행령 제17조의3)(9)	

<표 1.1> 직무발명 관련 보상금에 대한 개정된 소득세법의 문제점(계속)

	개정 전 (~2016.12)	개정 후 (2017.1~현재)	현행법 근거	모순점
법적 근거	- 제33조 ① 발명을 한 자 또는 그 승계인은 이 법에서 정하바에 의하여 특허를 받을 수 있는 권리를 가진다. - 제21조(기타소득) ① 기타소득은 이자소득·배당소득·사업소득·근로소득·연금소득·퇴직소득 및 양도소득 외의 소득으로서 다음 각 호에서 규정하는 것으로 한다. <개정 2010.12.27.~2018.12.31.> 광업권·어업권·산업재산권·산업정보, 산업상 비밀, 상표권·영업권(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점포 임차권을 포함한다), 토사석(土砂石)의 채취허가에 따른 권리, 지하수의 개발·이용권, 그 밖에 이와 유사한 자산이나 권리를 양도하거나 대여하고 그 대가로 받는 금품 - 소득세법 제21조, 제15호등: 산업재산권, 상표권 등의 양도 대가는 '기타소득'으로 처리한다. - 제20조(근로소득) <개정 2016.12.20.> ① 항 5호: 근로소득은 해당 과세기간에 발생한 다음 각 호의 소득으로 한다 (5호) 종업원 등 또는 대학의 교직원이 지급받는 직무발명 보상금: 단, 종업원 등 또는 대학의 교직원이 퇴직한 후에 지급받는 직무발명 보상금은 (근로소득부와 대상에서) 제외한다 (제21조 제1항 22항의2 참조). - 제12조(비과세소득) 다음 각 호의 소득에 대해서는 소득세를 과세하지 아니한다. <개정: 최근 2018.12.31.> 어. 「발명진흥법」 제2조 제2호에 따른 직무발명으로 받는 다음의 보상금(이하 "직무발명 보상금"이라 한다)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금액 (1) 「발명진흥법」 제2조제2호에 따른 종업원 등(이하 이 조, 제20조 및 제21조에서 "종업원 등"이라 한다)이 같은 호에 따른 사용자 등으로부터 받는 보상금 (2) 대학의 교직원 또는 대학과 고용 관계가 있는 학생이 소속 대학에 설치된 「산업교육진흥 및 산학협력촉진에 관한 법률」 제25조에 따른 산학협력단(이하 이 조에서 "산학 협력단"이라 한다)으로부터 같은 법 제32조 제1항 제4호에 따라 받는 보상금 [개정세법.소득세]	- 제33조 ① 발명을 한 자 또는 그 승계인은 이 법에서 정하바에 의하여 특허를 받을 수 있는 권리를 가진다. - 제21조(기타소득) ① 기타소득은 이자소득·배당소득·사업소득·근로소득·연금소득·퇴직소득 및 양도소득 외의 소득으로서 다음 각 호에서 규정하는 것으로 한다. <개정 2010.12.27.~2018.12.31.> 광업권·어업권·산업재산권·산업정보, 산업상 비밀, 상표권·영업권(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점포 임차권을 포함한다), 토사석(土砂石)의 채취허가에 따른 권리, 지하수의 개발·이용권, 그 밖에 이와 유사한 자산이나 권리를 양도하거나 대여하고 그 대가로 받는 금품 - 소득세법 제21조, 제15호등: 산업재산권, 상표권 등의 양도 대가는 '기타소득'으로 처리한다. - 제20조(근로소득) <개정 2016.12.20.> ① 항 5호: 근로소득은 해당 과세기간에 발생한 다음 각 호의 소득으로 한다 (5호) 종업원 등 또는 대학의 교직원이 지급받는 직무발명 보상금: 단, 종업원 등 또는 대학의 교직원이 퇴직한 후에 지급받는 직무발명 보상금은 (근로소득부와 대상에서) 제외한다 (제21조 제1항 22항의2 참조). - 제12조(비과세소득) 다음 각 호의 소득에 대해서는 소득세를 과세하지 아니한다. <개정: 최근 2018.12.31.> 어. 「발명진흥법」 제2조 제2호에 따른 직무발명으로 받는 다음의 보상금(이하 "직무발명 보상금"이라 한다)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금액 (1) 「발명진흥법」 제2조제2호에 따른 종업원 등(이하 이 조, 제20조 및 제21조에서 "종업원 등"이라 한다)이 같은 호에 따른 사용자 등으로부터 받는 보상금 (2) 대학의 교직원 또는 대학과 고용 관계가 있는 학생이 소속 대학에 설치된 「산업교육진흥 및 산학협력촉진에 관한 법률」 제25조에 따른 산학협력단(이하 이 조에서 "산학 협력단"이라 한다)으로부터 같은 법 제32조 제1항 제4호에 따라 받는 보상금 [개정세법.소득세]	- 발명진흥법 제15조(직무발명에 대한 보상) ① 종업원 등은 직무발명에 대하여 특허등을 받을 수 있는 권리나 특허권 등을 계약이나 근무 규정에 따라 사용자등에게 승계하게 하거나 전용 실시권을 설정한 경우에는 정당한 보상을 받을 권리를 가진다. - 개정소득세법 제20조 5항. 종업원 등 또는 대학의 교직원이 지급받는 직무발명 보상금 (제21조 제1항 제22호의2에 따른 직무발명 보상금은 제외한다) - 제12조(비과세소득) 다음 각 호의 소득에 대해서는 소득세를 과세하지 아니한다.(2018.12.31.) 3. 근로소득과 퇴직소득 중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소득; 어. 「발명진흥법」 제2조 제2호에 따른 직무발명으로 받는 다음의 보상금(이하 "직무발명 보상금"이라 한다)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금액 (1) 「발명진흥법」 제2조제2호에 따른 종업원 등이 같은 호에 따른 사용자등으로부터 받는 보상금 (2) 대학의 교직원 또는 대학과 고용관계가 있는 학생이 소속 대학에 설치된 「산업교육진흥 및 산학협력촉진에 관한 법률」 제25조에 따른 산학협력단으로부터 같은 법 제32조 제1항 제4호에 따라 받는 보상금 - 소득세법 시행령 제17조의3(비과세되는 직무발명 보상금의 범위) 법 제12조제3호(목적) 1. 2) 외의 부분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금액"이란 연 500만 원 이하의 금액을 말한다. <개정 2019.2.12.> - 헌법 제11조: 모든 국민은 법 앞에 평등하다. 누구든지 성별·종교 또는 사회적 신분에 의하여 정치적·경제적·사회적·문화적 생활의 모든 영역에 있어서 차별을 받지 아니한다. - 직무발명 보상금이 기타소득임을 판결한 근거: 조세심판원 2012전2623(2013.4.25.) / 대법원 2015.4.9. 선고, 2014두15542 판결 / 대법원 2015.4.23. 선고, 2014두15559 판결문 / 대법원 2018.4.9. 선고, 2014두15566 판결문 등	



4. 직무발명 보상금의 지급 현황과 실태

□ 대학 직무발명 보상금 과세 현황

- 직무발명 조세법이 2016년 12월 개정된 후, 2019년 4월에 과학기술정보통신부는 지난 2년간의 직무발명 보상금 현황 및 실태를 대학과 기업체 연구소 및 공공 연구소를 대상으로 파악하였음.⁹⁾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연구제도혁신과에서 전국 대학을 중심으로 조사한 현황에 따르면 크고 작은 문제점들이 야기되고 있음을 볼 수 있음(<표 1.2>)
- 수집된 자료는 2019년 4월 30일 현재 조사된 것으로 여기에는 2016년부터 2018년 12월까지 3년간 직무발명을 통한 기술 이전 통계를 아래와 같은 자료로 간단히 정리하였음

<표 1.2> 개정된 직무발명 보상 조세법에 따른 직무발명 보상금 관련 실태
 [부록 ③] 2018년도 대학 직무발명 보상금 지급 현황(발명신고·출원·등록 보상)
 [부록 ④] 2016년 대학별 기술 이전 수입 현황
 [부록 ⑤] 2017년 대학별 기술 이전 수입 현황
 [부록 ⑥] 2018년 대학별 기술 이전 수입 현황

- [부록 ③]에 따르면 2018년도 비영리기관(대학)에서 연구자(A) 총 4,109명이 이룬 기술 이전 총액은 872억 원이고 이들에게 지급된 2018년 직무발명 보상금 총액(C)은 약 150억 원이고, 위 연구자(A) 중 직무발명 보상금에 대해 과세를 받은 연구자(B)는 총 951명임
- 또한, 전체 연구자 대비 직무발명 보상금에 대해 과세를 받은 연구자 비율(B/A)은 평균 60%이고, 1인당 직무발명 보상금(C/B) 평균은 약 1,700만 원임
- 위 [부록 ③]에서 산출된 값들이 의미하는 바와 관련하여,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측에서는 특별하게 비과세에서 과세로 전환한 상황을 비교하기 위한 것이 아니라, 현재 일반 현황을 조사하기 위한 목적이라고 함

9) 과학기술정보통신부 공문 연구제도혁신과-687 (2019.4.30.)

□ 대학 직무발명 보상금 과세 실태에 대한 연구자들의 불만 사례

-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연구제도혁신과의 제출 요청에 따른 과세 현황 조사(2018.4.30.) 결과는 <표 1.2>와 같음
- <표 1.2>는 2017년부터 개정 세법의 적용에 따라 발생한 비영리 기관(대학)들의 사례를 나타낸 것으로, 11개 대학에서 발생한 사례를 제출한 것으로, 비록 통계 산출에 부족한 2년간의 짧은 기간이지만, 전반적으로 세법 개정 후 대학 연구자들의 발명 의욕이나 기술 이전 의지가 현 직무발명 조세법에 의해 크게 영향을 받을 수 있는 상황에 근접한 것을 느낄 수 있음
- 즉, 이 결과를 면밀히 분석하면 연구자들이 피부로 느끼는 발명 보상금에 대한 만족도나 성취감은 찾아보기 힘들고, 오히려 세금 문제로 인한 심한 자괴감과 피해 의식이 만연되어 있음을 알 수 있음(<표 1.2>)
- 뿐만 아니라, 총 기술 이전 수익의 경비(특허출원·등록·유지)를 제외한 40~50%를 대학의 산학협력단이 가져간 후 나머지를 발명자가 수령하는데, 수령한 발명자 보상금 중에서도 약 20~40%를 추가 근로소득으로 납부하게 됨. 기술 이전의 연구 결과 창출과 실제의 기술 이전, 그리고 후속 관리 책임까지 모두 떠안은 발명자인 교수는 이러한 막대한 과세로 인해 기술 이전 의욕이 저하될 수밖에 없을 것임



**<표 1.2> 직무발명 보상금 세법 개정 이후 소득세액 증액분 등에 대한
발명자들에 대한 세금 부가 실태 조사 결과**

연번	기관명	직무발명 보상금에 대한 과도한 세금 부과 관련 불만 사례
1	A	- 직무발명 보상금 소득세법 변경에 따라 기타소득세(4.4%)가 적용되던 2016년도 대비 2018년 기술 이전 건수는 27% 감소, 기술 이전 기술료 입금액도 28% 감소 - 연구자의 소득 수준에 따라 소득세율 38%를 적용받는 경우가 있어 중대형(1억 원 이상) 기술 이전을 기피하는 현상이 발생
2	B	- 기술 이전의 범위가 넓어 일반기업체 용역 또한 기술 이전에 포함 될 수 있으나, 세금 징수 방법이 근로소득세로 변경됨에 따라 기술 이전 수입이 현저히 낮아지고 일반 기업체 용역 체결 수가 증가하는 이면이 발생 - 주요 기업의 요청에 따라 현재 아이템 추가 R&D, 신규 아이템 발굴을 위한 R&D 등 여러 형태의 R&D가 발생하나, 노하우 기술 이전으로 가능한 건도 일반 기업체 용역 R&D로 계약하는 경우도 발생할 수 있음(이유: 기술 이전 수입 → 근로소득세 징수, 일반 기업체 용역 → 기타소득세 징수) - 연구를 많이 하는 연구자의 급여는 통상 1억 원 이상으로, 사업에 필요한 기술 개발이 용이하여 연간 2~3건의 고액 기술 이전(5,000만 원~1억 원 이상)건이 많이 발생(예: 기업체 출신 교원) - 발명자 보상금은 회계연도 기준(1월~12월 말)으로 누적되어 연말에 많은 세금 징수로 부담스러워 기술 이전을 하지 않아, 산업체로 이전되어야 할 우수 기술이 사장되는 현상 발생
3	C	- 권**교수의 경우 2018년 5억짜리 기술 이전을 실시하여 본인이 받는 보상금 3.5억 원 중 약 1.05억 원이 세금으로 발생
4	D	- 개인소득세 부담(약 40% 이상 과세), 연말정산 시 환수금 과다납부로 급여 총당 범위 초과 - 기관부담금(연금, 건강보험 등) 추가 납부로 기관 예산 부담액 증액 - 기술 이전 대신 "산업 자문" 또는 "산업체 과제" 등 우회적 방법에 대한 요구 사항 증가
5	E	- 2018년 A교수 기술 이전 인센티브 지급액: 32,006,000원 / 인건비 기준(30%) 납세액: 9,601,800원 / 기타소득 기준 (6.6%) 납세액: 2,112,396원 - 2018년 B교수 기술 이전 인센티브 지급액: 11,735,000원 / 인건비 기준(25%) 납세액: 2,933,750원 / 기타소득 기준 (6.6%) 납세액: 774,510원
6	F	- 소득세법 시행령 개정 전인 2016년 직무발명 보상금을 1,570만 원 받은 A교수는 2017년 직무발명 보상금으로 1,368만 원을 받아 전년도보다 202만 원 감소하였으나 결정세액은 1,260만 원에서 1,670만 원으로 400만 원 증가 - 2018년 직무발명 보상금 2,559만 원(2016년 대비 989만 원 증가)을 받아 연말소득 정산결과 결정세액이 2,580만 원(2016년 대비 1,320만 원 증가)이 되어 직무발명 보상금보다 세금이 더 많게 되었다며 직무발명 보상금으로 인한 세금 증가로 기술 이전에 대해 부정적인 견해를 갖게 됨
7	G	- 기술 이전 발명자 보상금에 대해 근로소득으로 과세함에 따라 연구자들의 특허 중대형 기술 이전 회피 경향 심화 - 특허 기술 이전보다 산업자문, 기술지도 등으로 전환 경향
8	H	- 기술 이전료 40,000,000원 발생 / 발명자 보상금 비과세: 3,000,000원 / 과세: 19,189,749원 - 기술 이전료 10,000,000원 발생 / 발명자 보상금 비과세: 3,000,000원 / 과세: 1,590,630원 - 기술 이전료 44,000,000원 발생 / 발명자 보상금 비과세: 3,000,000원 / 과세: 23,400,000원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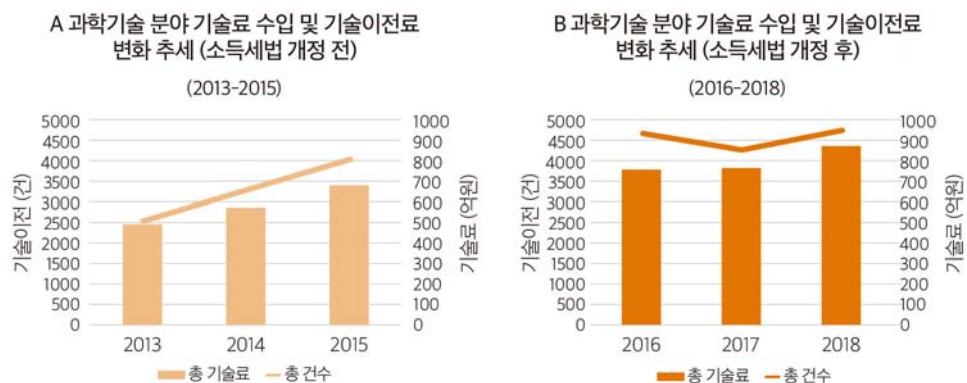
**<표 1.2> 직무발명 보상금 세법 개정 이후 소득세액 증액분 등에 대한
발명자들에 대한 세금 부가 실태 조사 결과(계속)**

연번	기관명	직무발명 보상금에 대한 과도한 세금 부과 관련 불만 사례
9	I	- A 교수의 경우 연봉 1.3억 원, 발명자보상금으로 6천만 원 수령, 5.7천만 원에 대한 근로소득 과세를 통하여 지급 시에 일괄 22%세율로 적용하여 나가기 때문에 연말정산 시 추가로 약 850만 원가량 납부해야 하는 상황 발생
10	J	- 가장 많은 직무발명 보상금을 수령한 연구원의 총 직무발명 보상금: 82,806,942원 / 소득세법 개정 전 법 적용 시(기타소득 6.6%): 77,341,683원 수령 / 소득세법 개정 적용 시(비과세 300만 원, 비과세 제외 금액 근로소득 40%): 50,884,165원 수령 / 소득세 증가분: 26,457,518원
11	K	- UNIST와 같이 특별법에 의해서 설립된 대학의 경우 산학협력단이 별도의 법인으로 설립된 것이 아니라 내부 조직으로 되어 있는데, 이 경우 소득세법 제12조 3호 어목에 명시하고 있는 "산업교육진흥 및 산학협력촉진에 관한 법률" 제25조에 따른 산학협력단으로부터 지급하는 보상금이 아니므로 해석상의 문제가 있을 수 있음 - 따라서 해당 항목에 대한 개정이 필요한 것으로 보임

□ 2016~2018년 대학별 기술 이전 수입료 및 계약 실적 실태([부록 ④, ⑤, ⑥])

- 직무발명 조세법이 개정된 후 전체적인 대학별 기술 이전 건수나 총수입 및 평균 수입/인은 실제 정체 되어 있다고 보는 것이 맞을 것 같음(<그림 1.7>). 지난 세법 개정 전인 2014~2016년간의 실적에 비해 실질적인 증가율이 거의 없는 상황임

<그림 1.7> 직무발명 조세법 개정 전후의 최근 3년간 기술 이전 실적 동향



자료: 국가통계포털, 과학기술 분야 전임교원 1인당 기술이전 건수 및 기술료 현황, 2019



<그림 1.7>에서 볼 수 있듯이 소득세법 개정 전과 후의 3년간 기술료 건수와 액수의 추이를 보면, 가장 대비되는 부분이 기술 이전 건수와 총액의 증가 폭이 소득세법 개정 전에는 매년 10% 이상 증가한 데에 비해 개정 후 3년간은 증가 추이가 거의 정지되어 있고, 1인당 평균 기술료 수입도 정체 수준에 있음(<그림 1.7>). 예를 들어 후자의 경우, 2016~2018년도 3년간을 1인당의 세금 공제 전 수입을 보면 1,632만 원(2016), 1,802만 원(2017) 및 1,838만 원(2018)을 각각 기록하여, 큰 변화가 없는 상황임. 그러나 실질소득 면에서는 새로운 소득세법 적용으로 근로소득세가 최대 42% 부과되고, 그로 인한 종합 소득세를 낼 경우, <표 1.2>에 적시된 일부 사례대로 개인별 재직 발명자의 수입은 대부분 세금 납부로 실질적인 노력에 대한 보상이 매우 적거나 거의 없는 경우가 나올 것으로 예상됨. 이러한 추세대로라면 향후 5년간의 기술 이전 건수나 액수 등에도 크게 증가를 기대하기는 어려울 전망이다. 한마디로 발명자는 직무발명을 하고도 기업체에 무한 책임만 질 뿐 발명자 개인에게는 세금 폭탄 외 아무런 보상이 없는 상황이 될 우려가 있어, “왜 발명을 해야 하는지”라는 회의가 들 수밖에 없을 것이고 그로 인한 발명 의욕 저하는 충분히 예견될 수 있음

- 따라서, 이 문제에 대한 가장 좋은 해결 방법은 현행 직무발명 조세법을 즉시 개정하여 근로소득세를 종전처럼 기타소득으로 변경해 발명가들의 사기를 진작 시키는 것임

□ 대학별 산학협력단의 기술 이전 발명 보상금 집행 기준 현황

- 각 대학별 발명자와 대학(산학협력단) 간의 기술 이전 발명 보상금 분배 비율은 대체적으로 1억 원 이하는 100~60% : 0~40%이며 1억 원 이상은 70~50% : 30~50% 정도로 비교적 비슷한 수준을 유지하고 있음(<표 1.3>)

□ 총 기술료 수익 중 실제 발명자 보상금 비율

발명자:대학 기술료 분배 비율	70:30	60:40	50:50
세율 20%	56%	48%	40%
세율 30%	49%	42%	35%
세율 40%	42%	36%	30%

- 총 기술료 수익 중 경비를 제외하고 대학의 발명자 보상금을 분배하면 실제 발명자인 교수가 수령하게 되는 발명자 보상금의 비율은 28~40% 정도로 추정됨
- 기술 이전의 모든 행위와 법적인 책임을 지는 발명자인 교수가 평생의 연구 업적에서 몇 차례 밖에 오지 못하는 기술 이전의 경우, 현 소득세법상으로는 총 기술 이전 금액의 28~40% 정도밖에 수령하지 못하게 되어 있어 발명자 교수의 기술 이전 의욕이 급격히 저하될 우려가 있음
- 뿐만 아니라 기술 이전을 통한 발명자 보상금 수령으로 발명자 교수의 총 근로 소득 증가로 인해 종합소득 세율 증가의 추가 세금을 납부해야하는 현상이 발생 되어 왜 교수가 기술 이전을 해야 하는가에 대해 자괴감을 가지고 있다고 함 (<표 1.2> 참조)
- 대학에서 수령하는 30~50%의 발명자 보상금은 면세 대상으로 발명자인 교수가 발명 보상금 중에 소득세 지불 금액이 너무 크기 때문에, 이를 해결하기 위해 대학에게 대학의 발명자 보상금의 배분을 줄여달라고 요청한 사례도 있으나 개선된 보고는 아직 없음
- 결론적으로, 현재의 발명자 보상금에 대한 개정된 소득세법은 교수의 기술 이전 의욕을 저하시키거나 교수를 불법적으로 기술 이전을 하도록 유발시키는 가능성이 크기 때문에 이에 대한 개정이 시급함

<표 1.3> 대학별 산학협력단의 기술 이전 발명 보상금 집행 기준 현황

연번	대학	기술 이전 유형에 따른 기술료 분배 비율(%) 발명자:대학(산학협력단)		비고
		특허	노하우	
1	서울대학교	2천만 원 이하-100:0 2천만 원~1억 원-80:20 1억 원~5억 원-70:30 5억 원 초과-50:50	2천만 원 이하-100:0 2천만 원~1억 원-80:20 1억 원~5억 원-70:30 5억 원 초과-50:50	
2	포항공과대학교	50:50	50:50	
3	KAIST	50:50	50:50	
4	연세대학교	1억 원 이하-60:40 1억 원 초과-50:50	1억 원 이하-60:40 1억 원 초과-50:50	



〈표 1.3〉 대학별 산학협력단의 기술 이전 발명 보상금 집행 기준 현황(계속)

연번	대학	기술 이전 유형에 따른 기술료 분배 비율(%) 발명자:대학(산학협력단)		비고
		특허	노하우	
5	고려대학교	70:30	80:20	
6	성균관대학교	5천만 원 미만-80:20 1억 원~5억 원-70:30 5억 원 이상-60:40	5천만 원 미만-80:20 1억 원~5억 원-70:30 5억 원 이상-60:40	
7	한양대학교	60:40	70:30	
8	부산대학교	60:40 또는 50(발명자):20(학과, 센터 등) :30(산학협력단)	70:30	특허의 경우 발명자가 지정 기관 선택 가능
9	경북대학교	5천만 원 이하-80:20 5천만 원~1억 원-70:30 1억 원 이상-60:40	5천만 원 이하-90:10 5천만 원 이상-80:20	
10	UNIST	50:50	50:50	
11	중앙대학교	70:30	70:30	
12	전남대학교	산학협력단 중개-60:40 발명자 발굴-65:35	70:30	
13	전북대학교	1억 원 이하-70:30 1억 원 초과-60:40	80:20	

5. 직무발명을 과도한 세금으로 억누르는 정부에 대한 공개 질의

끝으로 다음의 질문들은 앞에서 제기된 각종 문제들을 종합하여 객관적인 시각에서 정부 당국에 시정을 촉구하는 의미로 던지는 질문임. 관련 부처는 즉시 이 문제를 심각하게 생각하고 필요한 조치를 해야 할 것임

- 하나, 직무발명으로 인한 산업재산권 양도를 통해 생성된 일시적인 발명자 소득을 놓고 조세심판원, 대법원 모두 비과세 기타소득이 맞다는 판결을 내렸는데, 왜 정부는 이러한 판례까지 위배하면서까지 과학기술자들에게 계속 부당한 세금을 거둬들이는 저의가 무엇인지? 그렇게 거둬들인 세금을 통해 나라 살림에 얼마나 큰 도움이 되는지?

- 둘, 치열한 국제적인 기술 경쟁력 시험장에서 이렇게 징벌적인 조세제도를 시행 하면 과연 일본의 수출 규제 파고를 넘고 치열한 경쟁이 시작된 4차 산업혁명을 견인하기 위한 과학 중흥 정책을 끌고 갈 수 있는지?
- 셋, 현재 독소 조항이 많은 직무발명 소득세법을 방치하는 것은 정부 내 다른 부처인 과학기술정보통신부의 과학기술 2.0과 완전히 괴리되고 역주행하는 행위가 아닌지?
- 넷, 글로벌 차원에서 직무발명은 기술을 독점하여 국가의 기술 경쟁력 향상에 기대하는데 여기에 기여하는 발명자에게 징벌적 세금을 부여하면서 무슨 명목으로 과학기술계에 국가 기술 혁신 역할을 당부할 수 있는지?
- 다섯, 지금처럼 근로소득이 적용됨으로써 발명자의 직무발명 의욕이 저하된다면 국가 전체적으로는 ‘빈대 잡으려고 초가삼간 태우는 소탐대실’이 아닌가?
- 여섯, 과연 글로벌 경쟁에서 이런 부실한 과학기술 직무발명 조세 정책으로 누가 이득을 얻는가? 우리나라의 과학기술자인가 아니면 경쟁국의 기업들인가?
- 일곱, 이러한 많은 문제를 갖고 있는 현행 직무발명 보상금 관련 소득세법 조항을 즉각 개정할 의지가 있는지?
만약 개정을 지연시킨다면 정부의 직무 유기이며 국가 산업 발전에 매우 치명적인 손상을 끼칠 것이다.
- 여덟, 특히 작금의 일본 수출 규제 사태만을 보더라도 우리 기술의 낙후성이 현저하게 드러난 판국인데, 이를 극복하기 위한 원천 기술을 개발하는 과학기술 발명자에 대하여 징벌적인 과세를 한다는 것은 ‘나무만 보고 숲을 못 보는 우(愚)를 범하는 것과 다름 아니다.



6. 본 보고서 발간의 목적

- 본 보고서에서는 직무발명 조세제도를 현실에 맞게 개정하는 방안을 제안하고, 기술 혁신에 중요한 범정부적인 직무발명 진흥책을 촉구하는 제안을 담았음
- 본 내용은 크게 5장으로 구성되었으며, 각 주제별로 핵심적인 문제를 발굴하고, 이에 대한 법적 근거와 제도적인 해결책을 기술하고 있음. 이를 통해 정부 내 관련 부처는 물론, 대학과 연구소, 국회 및 기업체 구성원이 맡아서 해야 할 개선 방안과 그에 대한 후속 조치를 촉구하고자 함
- 본 자료를 통해 정부의 관련 부처가 과학기술계에서 제기하는 직무발명의 근본적 문제점을 찾고, 합리적이고 신속한 세법 개정에 반영하여 조세 형평의 원칙과 공평한 세금 과세를 할 수 있기를 기대함

[부록 ①] ‘한국과학기술한림원’ 원탁 토론회

제134회 한림원탁토론회

‘혁신성장을 이끄는 지식재산권 창출과 직무발명 조세제도 개선’

일시 : 2019년 4월 18일(목), 15:30

장소 : 양재동 엘타워 멜론홀(별관 5F)

I. 주제발표 1 ‘국가 경제성장에 있어서 지식재산권의 중요성: 4차 산업혁명의 전개와 발명자의 역할’	1
• 하홍준 한국지식재산연구원 보호/신지식연구실장	
II. 주제발표 2 ‘판례를 통하여 살펴본 직무발명보상금 과세제도의 문제점’	15
• 김승호 법무법인태평양 변호사	
III. 주제발표 3 ‘직무발명보상금 관련 과세제도의 합리적인 개선방안’ ...	25
• 정지선 서울시립대학교 교수	
IV. 지정토론 (좌장: 박재근 한림원 공학부 정회원(한양대학교))	39
• 백용기 한림원 이학부 정회원(연세대학교)	43
• 설원식 숙명여자대학교 산학협력단장	51
• 안상훈 한국개발연구원 선임연구위원	57
• 안진호 한양대학교 교수	77
• 정영룡 한국대학기술이전협회 부회장(전남대학교)	81



[부록 ②] 직무발명 조세제도 개정을 발의한 2016년 국회 기획재정소위 2차 회의록

34 제346회-기획재정소위 제2차(2016년11월14일)

○소위원장 이현재 이것은 이렇게 하세요.

사실은 조세 형평성 차원에서는 당연히 우리가 면세자를 없애자는 차원에서 세금을 부과해야 되지만 지금 경기가 어렵고 더군다나 임차인의 입장에서 부담이 될 수 있다는 것 또 건강보험체계가 이렇게 많이 부작용이 생길 수 있다는 측면에서 아마 정부도 불가피하게 2년 더 연장하자는 제안을 한 것 같습니다.

그래서 한쪽 면만 볼 것은 아니고 박광은 위원님이 지적하셨듯이 실질적으로 어느 정도 피해가 되는지 하는 구체적인 자료를 정리해서 다음번에 재논의하도록 하겠습니다.

○기획재정부제1차관 최상목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소위원장 이현재 지금 시간이 많이, 12시 15분입니다.

위원님들, 고생 많으셨습니다.

그러면 효율적인 의사 진행을 위해서 잠시 정회한 후 2시 30분에 속개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2시15분 회의중지)

(14시34분 계속개회)

○소위원장 이현재 의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심사를 계속하도록 하겠습니다.

전문위원,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조의섭 오전에 이어서 소위 자료 43페이지입니다.

직무발명보상금 과세기준 보완 내용입니다.

주요 내용을 말씀드리면 현행법상 기타소득의 비과세 대상으로 규정되어 있는 직무발명보상금을 재직 중에 받는 경우에는 근로소득으로, 퇴직 후에 받는 경우에는 기타소득으로 구분하고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일정 금액에 한하여 비과세하도록 하려는 것입니다.

검토의견 말씀드리겠습니다.

개정안은 재직 중에 받는 직무발명보상금은 근로소득으로, 퇴직 후에 받는 보상금은 기타소득으로 명시함으로써 규정 해석상의 불명확성을 해소하려는 것입니다. 44페이지입니다.

현행법상 비과세되는 직무발명보상금을 기타소득으로 규정하고 있어서 매년 계속적·반복적으로 지급되는 경우에는 근로소득에 해당되니까 과세한다고 하였다가 그게 행정소송에서 번복되는 등 논란의 소지가 있어 왔습니다.

그래서 명확히 할 필요가 있을 것 같습니다.

다만 보상금액이 적은 등록출원 보상과 달리 실시보상의 경우에는 매출액의 일정 비율로 하는 경우가 많기 때문에 비과세 한도를 신설하되 대통령령으로 정하도록 위임하셨습니다만 이게 세액 결정의 중요한 요소이기 때문에 법률로 한도를 정해 주고 그 한도 이하에서 할 수 있도록 하는 방식이 타당할 것으로 보입니다.

○소위원장 이현재 이것은 정부안이기 때문에 정부 입장 다른 것 없지요?

○기획재정부제1차관 최상목 지금 전문위원 의견 중에서 비과세 한도를 법률로 상향 입법하자는 것에 대해서 저희가 의견이 있습니다.

지금 경제 상황 및 필요성에 따라서 저희가, 만약에 국민한테 권리를 제한하거나 의무를 부과하는 경우가 아니고 이렇게 혜택을 주는 비과세의 경우에는 다른 입법례에서도 시행령에 규정하는 사례가 다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 경우에도 시행령에서 이 부분의 비과세 한도를 설정했으면 좋겠다는 게 저희의 의견입니다.

○소위원장 이현재 위원님들,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염용수 위원 시행령에 비과세는 대충 얼마 이하라고 안을 가지고 있습니까?

○기획재정부제1차관 최상목 예, 저희는 연간 한 300만 원 정도로.

○염용수 위원 연간 300만 원.

○소위원장 이현재 차관님, 실시보상의 경우는 이게 크지 않나요?

○기획재정부제1차관 최상목 그래서 지금 한도를 두는 것입니다

○소위원장 이현재 그런데 300만 원?

○기획재정부제1차관 최상목 예.

○소위원장 이현재 다른 의견 없으십니까?

그러면 이것은 일단 정부안대로 합의하는 것으로 하겠습니다. 다음.

○전문위원 조의섭 45페이지입니다.

자녀세액공제 확대 및 저소득자 자녀세액 추가 공제 신설 내용입니다.

먼저, 정부안에서 출생·입양 세액공제 확대입니다.

[부록 ③] 대학 직무발명 보상금 지급 현황(발명 신고·출원·등록 보상)

(단위: 명, %, 만 원)

연번	기관명	소속 연구자수 (A)	직무발명 보상금에 대해 과세를 받은 소속 연구자수(B)	직무발명 보상금에 대해 과세를 받은 소속 연구자 비율(B/A)	소속 연구자의 직무발명 보상금 총액(C)	1인당 직무발명 보상금(C/B)
1	가톨릭관동대학교 산학협력단	3	3	100	5,318	1,772
2	강릉원주대학교 산학협력단	4	4	100	4,514	1,128
3	건국대학교 글로벌 산학협력단	23	9	39	18,171	2,019
4	건양대학교 산학협력단	24	16	67	14,860	929
5	경기대학교 산학협력단	11	8	73	26,371	3,296
6	경북대학교 산학협력단	94	54	57	97,516	1,806
7	경상대학교 산학협력단	84	62	74	58,104	937
8	고려대학교 세종산학협력단	13	8	62	4,263	533
9	광운대학교 산학협력단	24	15	63	25,063	1,671
10	남서울대학교 산학협력단	4	4	100	1,552	388
11	단국대학교 천안산학협력단	20	20	100	29,105	1,455
12	대구가톨릭대학교 산학협력단	13	6	46	3,427	571
13	대구경북과학기술원	69	52	75	82,516	1,587
14	대구한의대학교 산학협력단	18	3	17	1,380	460
15	대전대학교 산학협력단	23	10	43	6,791	679
16	동국대학교 산학협력단	54	19	35	17,654	929
17	동아대학교 산학협력단	34	31	91	32,088	1,035
18	동의대학교 산학협력단	25	11	44	10,331	939
19	명지대학교 산학협력단	15	10	67	13,936	1,394
20	배재대학교 산학협력단	6	2	33	1,139	570
21	부경대학교 산학협력단	83	64	77	164,635	2,572
22	부산대학교 산학협력단	68	48	71	17,518	3,649
23	상명대학교 천안산학협력단	1	1	100	400	400
24	상명대학교 산학협력단	5	3	60	4,074	1,358
25	서강대학교 산학협력단	52	34	65	59,153	1,740
26	서울과학기술대학교 산학협력단	45	35	78	30,746	878
27	서울대학교 산학협력단	2,101	71	4	180,030	2,536



연번	기관명	소속 연구자수 (A)	직무발명 보상금에 대해 과세를 받은 소속 연구자수(B)	직무발명 보상금에 대해 과세를 받은 소속 연구자 비율(B/A)	소속 연구자의 직무발명 보상금 총액(C)	1인당 직무발명 보상금(C/B)
28	서울여자대학교 산학협력단	4	1	25	314	314
29	세명대학교 산학협력단	8	4	50	8,409	2,102
30	숙명여자대학교 산학협력단	10	8	80	23,472	2,934
31	순천대학교 산학협력단	18	9	50	7,689	854
32	안동대학교 산학협력단	16	9	56	11,675	1,297
33	울산과학기술원	10	6	60	13,625	2,271
34	울산대학교 산학협력단	42	22	52	29,640	1,347
35	이화여자대학교 산학협력단	39	18	46	36,611	2,034
36	전북대학교 산학협력단	86	59	69	90,339	1,531
37	전주대학교 산학협력단	31	16	52	21,017	1,314
38	제주대학교 산학협력단	33	11	33	15,735	14,305
39	조선대학교 산학협력단	59	30	51	37,967	1,266
40	중앙대학교 산학협력단	40	28	70	49,198	1,757
41	차의과학대학교 산학협력단	3	3	100	5,775	1,925
42	포항공과대학교 산학협력단	42	13	31	69,771	5,367
43	한국과학기술원	628	38	6	71,259	1,875
44	한국교통대학교 산학협력단	18	12	67	14,583	1,215
45	한국해양대학교 산학협력단	28	13	46	12,972	998
46	한라대학교 산학협력단	1	1	100	18	18
47	한밭대학교 산학협력단	29	20	69	22,229	1,111
48	한양대학교 산학협력단	48	27	56	55,751	2,065
합계		4,109	951	2,910	1,508,704	85,130
평균		85.6	19.8	60	31,431	1,773

* '17.1 소득세법 시행령 개정 이후 근로소득세로 과세된 직무발명 보상금을 대상으로 함(2018년 과세 현황 조사)

** 작성 기준: 2018년도 지급기준 직무발명 보상금 기준

(A)소속 연구자수: 직무발명 보상금을 지급한 연구자 수(학생과 같이 기타소득 대상자는 제외)

(B)직무발명 보상금에 대해 과세를 받은 소속 연구자수: 연간 3백만 원을 초과하여 보상금을 받은 연구자의 수(3백만 원 미만으로 지급받은 연구자 제외)

(C)소속연구자의 직무발명 보상금 총액: (B)에 해당하는 연구자가 받은 보상금의 총액

[부록 ④] 2016년도 대학별 기술 이전 수입 현황

학교명	건수	수입료(천 원)	1건당 수입료(천 원)
가야대학교(김해)	5	0	0
가천대학교	11	337,248	30,659
가톨릭관동대학교	15	159,820	10,655
가톨릭대학교	74	921,435	12,452
강릉원주대학교	40	425,005	10,625
강원대학교	85	1,350,809	15,892
건국대학교	47	1,057,351	22,497
건국대학교(글로벌)_분교	13	225,454	17,343
건양대학교	34	216,463	6,367
경기대학교	11	96,739	8,794
경남과학기술대학교	8	31,818	3,977
경남대학교	67	191,727	2,862
경북대학교	95	996,230	10,487
경상대학교	62	927,014	14,952
경성대학교	6	65,525	10,921
경운대학교	47	74,581	1,587
경일대학교	19	121,600	6,400
경희대학교	56	2,737,061	48,876
계명대학교	60	619,060	10,318
고려대학교	104	3,691,222	35,493
고신대학교	3	25,000	8,333
공주대학교	19	130,487	6,868
광운대학교	28	442,921	15,819
광주과학기술원	20	1,219,000	60,950
광주대학교	63	226,045	3,588
광주여자대학교	4	6,000	1,500
국민대학교	93	957,733	10,298
군산대학교	55	401,972	7,309
극동대학교	8	35,600	4,450
금오공과대학교	69	470,863	6,824
남부대학교	8	43,636	5,455
남서울대학교	4	10,000	2,500
단국대학교	41	622,670	15,187
단국대학교_제2캠퍼스	26	435,959	16,768



학교명	건수	수입료(천 원)	1건당 수입료(천 원)
대구가톨릭대학교	20	260,469	13,023
대구경북과학기술원	17	1,066,020	62,707
대구대학교	30	270,500	9,017
대구의학대학교	16	290,500	18,156
대전대학교	44	114,919	2,612
덕성여자대학교	2	5,000	2,500
동국대학교	66	648,277	9,822
동국대학교(경주)분교	5	27,944	5,589
동명대학교	36	129,703	3,603
동서대학교	28	346,338	12,369
동신대학교	49	215,179	4,391
동아대학교	80	327,587	4,095
동의대학교	39	224,604	5,759
명지대학교	12	641,322	53,444
목원대학교	8	94,000	11,750
목포대학교	33	121,117	3,670
목포해양대학교	2	3,511	1,756
배재대학교	5	32,000	6,400
백석대학교	1	33,000	33,000
부경대학교	59	608,138	10,307
부산대학교	116	1,877,328	16,184
삼육대학교	2	30,000	15,000
상명대학교	5	124,256	24,851
상명대학교_제2캠퍼스	4	10,000	2,500
서강대학교	99	1,529,114	15,446
서경대학교	1	0	0
서울과학기술대학교	65	1,066,455	16,407
서울대학교	127	4,819,278	37,947
서울시립대학교	29	532,615	18,366
서울여자대학교	4	10,909	2,727
서원대학교	6	12,500	2,083
선문대학교	85	412,773	4,856
성균관대학교	117	3,817,657	32,630
성신여자대학교	1	1,836	1,836
세명대학교	4	6,000	1,500
세종대학교	28	1,452,994	51,893
세한대학교	9	18,500	2,056

학교명	건수	수입료(천 원)	1건당 수입료(천 원)
송원대학교	2	5,900	2,950
수원대학교	3	0	0
숙명여자대학교	3	387,228	129,076
순천대학교	35	329,079	9,402
순천향대학교	45	548,250	12,183
송실대학교	27	603,472	22,351
송실사이버대학교	1	3,000	3,000
신라대학교	7	39,591	5,656
아주대학교	43	1,181,272	27,471
안동대학교	16	49,700	3,106
안양대학교	3	83,374	27,791
연세대학교	68	1,851,017	27,221
연세대학교(원주)_분교	19	150,990	7,947
영남대학교	75	1,443,379	19,245
영산대학교	8	14,000	1,750
우석대학교	37	88,540	2,393
우송대학교	4	18,000	4,500
울산과학기술원	17	1,300,252	76,485
울산대학교	35	395,294	11,294
원광대학교	114	573,190	5,028
위덕대학교	4	10,510	2,628
을지대학교_제2캠퍼스	8	65,454	8,182
이화여자대학교	28	366,147	13,077
인제대학교	43	435,833	10,136
인천대학교	25	411,278	16,451
인하대학교	64	736,261	11,504
전남대학교	80	2,382,698	29,784
전북대학교	90	1,604,843	17,832
전주대학교	22	194,125	8,824
제주대학교	62	272,703	4,398
조선대학교	74	605,059	8,176
중부대학교	50	65,095	1,302
중앙대학교	107	1,337,700	12,502
중원대학교	4	25,000	6,250
차의과학대학교	2	40,000	20,000
창원대학교	63	369,572	5,866
청운대학교	4	13,000	3,250



학교명	건수	수입료(천 원)	1건당 수입료(천 원)
청주대학교	6	14,708	2,451
충남대학교	140	1,647,430	11,767
충북대학교	137	1,357,301	9,907
평택대학교	1	20,000	20,000
포항공과대학교	29	5,124,836	176,718
한경대학교	13	82,727	6,364
한국과학기술원	61	2,701,170	44,281
한국교통대학교	26	346,794	13,338
한국국제대학교	4	10,500	2,625
한국기술교육대학교	58	538,428	9,283
한국방송통신대학교	3	9,545	3,182
한국산업기술대학교	70	428,954	6,128
한국외국어대학교	1	220,000	220,000
한국항공대학교	13	299,817	23,063
한국해양대학교	30	128,240	4,275
한남대학교	13	145,521	11,194
한동대학교	2	56,707	28,354
한림대학교	27	392,343	14,531
한밭대학교	40	455,700	11,393
한서대학교	14	347,145	24,796
한성대학교	1	3,000	3,000
한신대학교	1	10,000	10,000
한양대학교	33	2,211,987	67,030
한양대학교(ERICA)_분교	42	697,011	16,596
호남대학교	23	101,636	4,419
호서대학교	20	165,818	8,291
홍익대학교	12	217,272	18,106
홍익대학교_제2캠퍼스	1	0	0
136개 대학	4,667	76,191,787	16,326

자료: 대학알리미

[부록 ⑤] 2017년도 대학별 기술 이전 수입 현황

학교명	건수	수입료(천 원)	1건당 수입료(천 원)
가천대학교	16	557,247	34,828
가톨릭관동대학교	18	82,043	4,558
가톨릭대학교	44	723,810	16,450
강릉원주대학교	20	254,878	12,744
강원대학교	113	1,282,484	11,349
건국대학교	35	583,810	16,680
건국대학교(글로벌)_분교	18	357,048	19,836
건양대학교	5	35,800	7,160
경기대학교	12	79,831	6,653
경남과학기술대학교	3	14,931	4,977
경남대학교	39	113,230	2,903
경동대학교	4	14,681	3,670
경북대학교	78	1,567,668	20,098
경상대학교	66	1,220,953	18,499
경성대학교	10	67,721	6,772
경운대학교	31	52,181	1,683
경일대학교	34	108,390	3,188
경희대학교	59	2,828,450	47,940
계명대학교	57	395,022	6,930
고려대학교	107	3,673,977	34,336
고려대학교(세종)_분교	4	64,500	16,125
고신대학교	1	24,000	24,000
공주대학교	23	136,483	5,934
광운대학교	25	535,906	21,436
광주과학기술원	31	1,797,967	57,999
광주대학교	38	113,036	2,975
광주여자대학교	5	30,000	6,000
국민대학교	81	723,010	8,926
군산대학교	60	515,024	8,584
극동대학교	14	33,000	2,357
금오공과대학교	38	616,178	16,215
남부대학교	3	176,636	58,879
남서울대학교	5	39,090	7,818
단국대학교	40	484,805	12,120



학교명	건수	수입료(천 원)	1건당 수입료(천 원)
단국대학교_제2캠퍼스	28	359,154	12,827
대구가톨릭대학교	15	255,454	17,030
대구경북과학기술원	38	1,173,200	30,874
대구대학교	45	540,160	12,004
대구의학대학교	18	140,550	7,808
대전대학교	3	110,386	36,795
대진대학교	1	20,000	20,000
동국대학교	65	688,397	10,591
동국대학교(경주)_분교	4	47,510	11,878
동명대학교	36	272,160	7,560
동서대학교	29	263,783	9,096
동신대학교	21	89,545	4,264
동아대학교	58	540,166	9,313
동의대학교	37	297,009	8,027
명지대학교	17	611,681	35,981
목원대학교	5	25,863	5,173
목포대학교	9	102,672	11,408
목포해양대학교	4	22,454	5,614
배재대학교	8	27,000	3,375
백석대학교	4	20,000	5,000
부경대학교	85	1,748,568	20,571
부산가톨릭대학교	4	21,000	5,250
부산대학교	96	2,712,049	28,251
부산외국어대학교	2	16,818	8,409
삼육대학교	4	22,500	5,625
상명대학교	10	223,290	22,329
상명대학교_제2캠퍼스	5	18,000	3,600
상지대학교	6	100,200	16,700
서강대학교	96	1,256,019	13,084
서경대학교	1	12,000	12,000
서울과학기술대학교	58	470,958	8,120
서울대학교	105	4,171,662	39,730
서울시립대학교	22	388,545	17,661
서울여자대학교	7	35,309	5,044
서원대학교	2	20,000	10,000
선문대학교	50	113,958	2,279
성균관대학교	156	3,622,054	23,218

학교명	건수	수입료(천 원)	1건당 수입료(천 원)
성신여자대학교	0	2,670	#DIV/0!
세명대학교	11	88,000	8,000
세종대학교	34	783,654	23,049
세한대학교	11	10,000	909
수원대학교	4	0	0
숙명여자대학교	14	1,466,047	104,718
순천대학교	30	196,077	6,536
순천향대학교	35	530,232	15,149
송실대학교	22	497,200	22,600
송실사이버대학교	0	5,000	#DIV/0!
신라대학교	12	119,581	9,965
아주대학교	65	1,962,808	30,197
안동대학교	13	82,110	6,316
안양대학교	1	15,000	15,000
연세대학교	86	2,989,361	34,760
연세대학교(원주)_분교	23	325,576	14,155
영남대학교	55	784,600	14,265
영산대학교	9	21,600	2,400
용인대학교	1	1,207	1,207
우석대학교	28	84,736	3,026
우송대학교	4	19,636	4,909
울산과학기술원	19	297,878	15,678
울산대학교	61	601,431	9,860
원광대학교	61	238,769	3,914
위덕대학교	1	1,100	1,100
유원대학교	2	100,000	50,000
을지대학교_제2캠퍼스	10	160,818	16,082
이화여자대학교	29	612,685	21,127
인제대학교	57	477,213	8,372
인천대학교	38	301,165	7,925
인하대학교	74	811,793	10,970
전남대학교	87	2,784,642	32,007
전북대학교	81	1,836,819	22,677
전주대학교	20	357,990	17,900
제주국제대학교	1	10,000	10,000
제주대학교	74	541,811	7,322
조선대학교	58	821,560	14,165



학교명	건수	수입료(천 원)	1건당 수입료(천 원)
중부대학교	5	18,350	3,670
중앙대학교	68	2,113,324	31,078
중원대학교	2	10,000	5,000
차의과학대학교	2	30,000	15,000
창신대학교	1	20,000	20,000
창원대학교	41	536,059	13,075
청운대학교	6	19,800	3,300
청주대학교	7	38,838	5,548
충남대학교	94	1,821,373	19,376
충북대학교	101	1,481,368	14,667
포항공과대학교	25	1,287,066	51,483
한경대학교	9	30,909	3,434
한국과학기술원	45	2,683,436	59,632
한국교통대학교	18	265,955	14,775
한국국제대학교	1	0	0
한국기술교육대학교	54	428,138	7,928
한국방송통신대학교	3	85,181	28,394
한국산업기술대학교	56	311,219	5,557
한국외국어대학교	5	462,000	92,400
한국항공대학교	13	461,758	35,520
한국해양대학교	33	279,845	8,480
한남대학교	24	183,968	7,665
한동대학교	1	448	448
한라대학교	1	16,000	16,000
한림대학교	27	314,917	11,664
한밭대학교	35	382,400	10,926
한서대학교	33	91,171	2,763
한성대학교	6	22,090	3,682
한신대학교	3	10,000	3,333
한양대학교	47	2,881,969	61,318
한양대학교(ERICA) 분교	32	771,566	24,111
호남대학교	22	97,545	4,434
호서대학교	10	59,678	5,968
호원대학교	1	0	0
홍익대학교	14	201,000	14,357
홍익대학교 제2캠퍼스	3	11,000	3,667
144개 대학	4,270	77,233,004	18,202

자료: 대학알리미

[부록 ⑥] 2018년도 대학별 기술 이전 수입 현황

학교명	건수	수입료(천 원)	1건당 수입료(천 원)
가야대학교(김해)	7	0	0
가천대학교	35	955,466	27,299
가톨릭관동대학교	13	181,364	13,951
가톨릭대학교	58	1,398,140	24,106
강릉원주대학교	29	308,955	10,654
강원대학교	89	1,184,508	13,309
건국대학교	38	562,726	14,809
건국대학교(글로벌)_분교	31	285,587	9,212
건양대학교	43	207,391	4,823
경기대학교	10	377,712	37,771
경남대학교	70	196,340	2,805
경동대학교	4	14,545	3,636
경북대학교	91	1,463,437	16,082
경상대학교	58	1,264,492	21,802
경성대학교	7	75,227	10,747
경운대학교	72	88,436	1,228
경일대학교	28	191,738	6,848
경희대학교	96	3,709,005	38,635
계명대학교	57	426,486	7,482
고려대학교	103	3,175,501	30,830
고려대학교(세종)_분교	13	99,636	7,664
고신대학교	3	27,500	9,167
공주대학교	20	218,291	10,915
광운대학교	22	581,663	26,439
광주과학기술원	24	1,397,256	58,219
광주대학교	15	92,764	6,184
광주여자대학교	5	12,720	2,544
국민대학교	78	5,784,772	74,164
군산대학교	54	500,591	9,270
극동대학교	6	31,900	5,317
금오공과대학교	48	285,478	5,947
김천대학교	1	4,545	4,545
남부대학교	7	51,273	7,325
남서울대학교	5	22,455	4,491



학교명	건수	수입료(천 원)	1건당 수입료(천 원)
단국대학교	30	369,170	12,306
단국대학교_제2캠퍼스	22	623,840	28,356
대구가톨릭대학교	8	122,205	15,276
대구경북과학기술원	36	2,002,027	55,612
대구대학교	31	339,250	10,944
대구의대의대학교	38	150,200	3,953
대전대학교	33	191,123	5,792
대진대학교	1	4,000	4,000
동국대학교	89	811,088	9,113
동국대학교(경주)_분교	9	83,367	9,263
동명대학교	41	329,780	8,043
동서대학교	31	282,321	9,107
동신대학교	26	159,591	6,138
동아대학교	70	656,753	9,382
동양대학교	1	22,000	22,000
동의대학교	72	417,367	5,797
명지대학교	12	262,591	21,883
목원대학교	10	60,200	6,020
목포대학교	15	118,300	7,887
목포해양대학교	5	11,091	2,218
배재대학교	3	15,000	5,000
백석대학교	7	23,500	3,357
부경대학교	71	1,648,723	23,221
부산가톨릭대학교	1	22,727	22,727
부산대학교	82	2,277,272	27,772
삼육대학교	13	104,000	8,000
상명대학교	5	86,091	17,218
상명대학교_제2캠퍼스	4	15,000	3,750
상지대학교	2	909	455
서강대학교	72	1,100,698	15,287
서경대학교	1	0	0
서울과학기술대학교	30	448,091	14,936
서울대학교	88	4,226,888	48,033
서울시립대학교	28	331,870	11,853
서울여자대학교	3	28,400	9,467
서원대학교	2	22,000	11,000
선문대학교	75	288,055	3,841

학교명	건수	수입료(천 원)	1건당 수입료(천 원)
성균관대학교	112	5,015,518	44,781
성신여자대학교	0	3,594	0
세명대학교	3	75,198	25,066
세종대학교	38	1,659,944	43,683
세종사이버대학교	1	1,000	1,000
세한대학교	11	10,000	909
수원대학교	6	8,445	1,408
숙명여자대학교	9	787,733	87,526
순천대학교	20	104,156	5,208
순천향대학교	49	560,273	11,434
송실대학교	24	791,300	32,971
신라대학교	12	110,282	9,190
아주대학교	57	2,136,968	37,491
안동대학교	41	69,291	1,690
안양대학교	0	18,182	0
연세대학교	76	3,432,856	45,169
연세대학교(원주)·분교	24	398,856	16,619
영남대학교	97	1,287,636	13,275
영산대학교	0	3,000	0
우석대학교	71	263,168	3,707
우송대학교	2	6,000	3,000
울산과학기술원	22	378,380	17,199
울산대학교	59	841,668	14,266
원광대학교	93	369,271	3,971
위덕대학교	1	1,100	1,100
울지대학교 제2캠퍼스	2	18,091	9,046
이화여자대학교	33	887,557	26,896
인제대학교	53	559,898	10,564
인천대학교	34	229,650	6,754
인하대학교	63	740,478	11,754
전남대학교	88	1,465,626	16,655
전북대학교	74	1,673,655	22,617
전주대학교	26	332,624	12,793
제주대학교	150	632,367	4,216
조선대학교	80	979,163	12,240
중부대학교	2	18,182	9,091
중앙대학교	71	2,005,142	28,241



학교명	건수	수입료(천 원)	1건당 수입료(천 원)
중원대학교	1	2,727	2,727
차의과학대학교	9	325,000	36,111
창원대학교	65	616,971	9,492
청운대학교	6	55,000	9,167
청주교육대학교	0	48	0
청주대학교	12	46,500	3,875
충남대학교	118	1,760,680	14,921
충북대학교	143	1,889,006	13,210
포항공과대학교	26	2,093,875	80,534
한경대학교	15	51,674	3,445
한국과학기술원	64	2,594,652	40,541
한국교통대학교	27	238,129	8,820
한국기술교육대학교	54	532,944	9,869
한국방송통신대학교	3	65,500	21,833
한국산업기술대학교	58	291,024	5,018
한국외국어대학교	13	653,600	50,277
한국항공대학교	8	344,773	43,097
한국해양대학교	29	281,963	9,723
한남대학교	18	169,519	9,418
한동대학교	3	14,091	4,697
한라대학교	2	18,182	9,091
한림대학교	41	458,436	11,181
한밭대학교	35	475,400	13,583
한서대학교	22	94,953	4,316
한성대학교	4	49,200	12,300
한양대학교	58	2,291,279	39,505
한양대학교(ERICA)_분교	41	610,047	14,879
호남대학교	24	121,818	5,076
호서대학교	10	52,091	5,209
호원대학교	0	6,000	0
홍익대학교	17	220,182	12,952
홍익대학교 제2캠퍼스	6	56,273	9,379
140개 대학	4,743	87,191,174	18,383

자료: 대학알리미



직무발명





II

직무발명

1. 직무발명이란?

□ 직무발명은 i) 종업원, 법인의 임원 또는 공무원이 그 직무에 관하여 ii) 발명한 것이 성질상 사용자·법인 또는 국가나 지방자치단체의 업무 범위에 속하고 iii) 그 발명을 하게 된 행위가 종업원 등의 현재 또는 과거의 직무에 속하는 발명을 말함(발명진흥법 제2조 제2호)

○ 사용자와 종업원의 이익을 합리적으로 조정하여 R&D 투자 촉진 및 종업원의 혁신적인 발명 활동을 장려하기 위함

○ '74년 제도 도입' '06년 발명진흥법으로 근거법 일원화(기존 특허법에 내용 기재), '13년 정당한 보상문화 정착'을 위한 법 개정

- 직무발명 보상 우수 기업 지원 근거 마련, 종업원의 절차적 권리 보장 등

□ 중소기업의 직무발명 제도 도입 확산을 위한 정책적 지원 필요

○ 우리나라 기업의 직무발명 제도 도입률은 65%('17)로 87%인 일본에 비해 저조한 상황임

- 대기업과 중견기업의 직무발명 보상제도 도입률 대폭 증가함(대기업: 84.4%('14) → 92.6%('17), 중견기업: 75%('14) → 92.6%('17))

- 반면, 중소기업의 직무발명 도입 비율 또한 증가 추세임에도 불구하고 대기업, 중견기업에 비해 저조한 현황을 보임(41.1%('14) → 60.2%('17))

<표 2.1> 우리나라 기업의 직무발명 도입률 추이

구분	2014	2015	2016	2017
기업전체	51.5%	55.6%	60.2%	65.0%
대기업	84.4%	77.7%	91.7%	92.6%
중견기업	75.0%	71.6%	86.1%	91.6%
중소기업	41.1%	46.2%	48.8%	60.2%

자료: 하홍준 외, 직무발명보상금과 조세제도 분석 및 시사점, 2018

2. 직무발명 보상제도

□ 직무발명 보상제도는 종업원이 개발한 직무발명을 기업이 승계·소유하도록 하고, 종업원에게는 직무발명에 대한 정당한 보상을 해주는 제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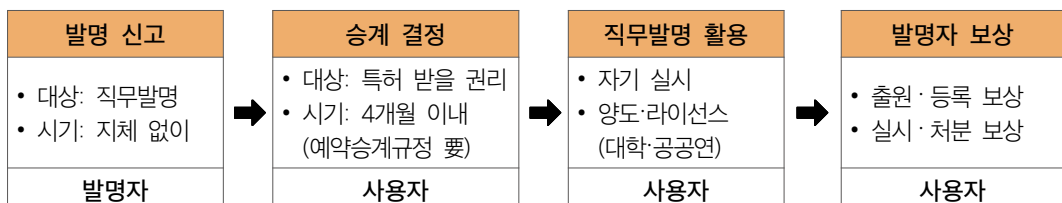
○ 종업원에게는 지식재산권 권리 귀속 및 연구 개발 노력에 대한 보상을 하고 기업에게는 연구 개발 투자 및 인프라 제공의 이익을 돌려주는 종업원과 기업 간의 합리적 이익 조정을 위한 선순환 구조

○ 종업원의 물질적 보상 및 연구 개발 의욕 향상과 기업의 직무발명에 대한 권리 안정적 실시 및 기술 축적과 이윤 창출의 기회를 제공함

□ 종업원은 직무발명 완성 후 지체 없이 사용자에게 신고하여야 하며, 사용자는 신고 후 4개월 내에 승계 여부를 결정*하여 통지해야 함

* 다만 사용자가 예약 승계 규정을 두고 있지 않은 경우에는 종업원 의사와 다르게 직무발명 권리 승계를 주장할 수 없음

<그림 2.1> 직무발명 승계 및 보상 절차





- (종업원 권리) 기본적으로 특허 받을 권리를 보유, 권리 승계 시 정당한 보상 청구권, 분쟁 해결을 위한 심의위원회 개최 요구권
- (사용자 권리) 예약 승계 규정*에 따라 직무발명에 대한 권리 승계, 직무발명에 대해 종업원·제3자가 특허 취득 시 통상실시권 보유

* 미리 직무발명에 대한 권리를 사용자에게 승계시키도록 하는 계약 또는 근무 규정

□ 직무발명의 중요성이 높아지면서 법인과 연구자 사이의 분쟁도 증가하고 있음

< 벌크핀펫 기술 소유권 분쟁 >

▷(사건 개요) 인텔로부터 100억 원 라이선스 계약, 삼성전자로부터 4,400억 원 배상 평결을 이끌어낸 벌크핀펫* 미국 특허에 대한 소유권 분쟁 발생

* 반도체 칩을 소형화하고, 성능은 높이면서 소비 전력은 줄이는 3차원 트랜지스터 기술

▷(현행 제도 문제점) 직무발명에 대하여 해외에서 특허를 받을 수 있는 권리를 종업원이 다시 취득하는 절차가 명확하게 규정되어 있지 않음

< 크리스퍼 유전자 편집기술*의 기술 거래 논란 >

▷(사건 개요) 국가 연구 개발비를 지원받아 직무발명으로 취득한 특허권을 연구 책임 교수가 겸직 중인 벤처 기업에 과소 평가된 가치로 기술 이전했다는 의혹

*세균의 면역 체계 시스템을 이용해 세포 내 표적 유전자를 자유롭게 편집할 수 있는 기술

▷(현행 제도 문제점) 기관의 특허 관리 및 사업화 담당자들이 직무발명 관련 법규에 대한 이해가 부족하여 기술 이전 시 기술 가치에 대한 적절한 평가와 거래가 제대로 지켜지지 않는 사례가 드러난 점

□ 직무발명에 대한 정당한 보상을 지급하고 직무발명 성과 활용을 촉진할 수 있는 합리적인 직무발명 보상제도 구현 필요

- 비공무원 발명자 직무발명의 보상 과정에서 공무원에 비해 차별받는 등 정당한 보상을 저해하는 제도의 개선을 추진
- 기관 직무발명 보상제도 운영 과정상의 애로사항 해소
- 직무발명으로 창출된 특허 활용 촉진을 위한 제도 마련

□ 보상의 종류와 형태

- 직무발명에 대한 보상은 금전적 보상과 비금전적 보상으로 구분되며, 제안, 출원, 등록, 실시 등 발명 단계에 따라 다음과 같이 보상의 종류를 구분

<표 2.2> 발명 단계별 직무발명 보상의 종류

구분	내용
발명(제안) 보상	발명 보상은 종업원이 고안한 발명을 특허청에 출원하기 전에 받는 보상으로 출원 유무에 관계없이 종업원의 아이디어와 발명적 노력에 대한 일종의 장려금적 성질을 가진 보상
출원 유보 보상	사용자가 종업원의 직무발명을 노하우(know-how)로 보존하는 경우 또는 공개 시 중대한 손해가 발생할 우려가 있다고 판단되어 출원을 유보하는 경우 지급하는 보상으로, 이 경우 보상액을 결정할 때에는 그 발명이 산업재산권으로 보호되었더라면 종업원 등이 받을 수 있었던 경제적 이익을 고려하여야 함
출원 보상	출원 보상은 종업원이 한 발명을 사용자가 특허 받을 수 있는 권리를 승계하여 특허청에 출원함으로써 발생하는 보상으로 미확정 권리에 대한 대가이기 때문에 장려금적 성질을 가지며, 특허성과 경제성이 있다고 판단해서 출원한 것이고, 일단 출원 후에는 후원 배제의 효과와 출원 공개 시 확대된 선원의 지위를 가질 수 있기 때문에 지급하는 보상
등록 보상	사용자가 승계 받은 발명이 등록 결정되어 특허 등록되었을 때 지급하는 보상
실시(실적) 보상	사용자가 출원 중인 발명 또는 특허 등록된 발명을 실시하여 이익을 얻었을 경우 지급하는 보상금으로 사용자가 얻은 이익의 금액에 따라 차등 지급하는 보상
자사 실시 보상	직무발명을 발명자가 속한 회사에서 이용하여 수익이 발생하는 경우 지급하는 보상
타사 실시 보상	직무발명을 라이선스 계약 등을 통해 타 기업에게 이전하고 기술료 수입이 발생한 경우 지급하는 보상
처분 보상	사용자가 종업원의 직무발명에 대하여 특허 받을 수 있는 권리 내지 특허권을 타인에게 양도하거나 실시를 허여했을 경우 지급하는 보상으로 처분 금액의 일정 비율로 지급하는 보상
기타 보상	이 외의 보상에는 출원 발명의 심사 청구 시에 보상하는 '심사 청구 보상', 자사의 업종과 관련 있는 타인의 출원 발명에 대하여 이의 신청 또는 심판에 참여하여 무효로 하였을 경우 또는 자사의 특허에 대한 침해 적발 시 지급하는 '방어 보상' 등이 있음

자료: 특허청·한국발명진흥회, 2011년도 직무발명제도 운영 우수사례집, 2011

- 주로 금전적 보상인 경우가 일반적이지만, 내부 실정에 따라 비금전적 보상 등 다양한 보상 형태를 자율적으로 결정
- 금전 보상: 통장 입금, 현금, 상품권, 복지 포인트 등
 - 비금전적 보상: 유급 휴가, 승진, 해외 연수, 유학, 안식년, 학위 과정 지원, 희망 직무 선택권 부여 등



3. 직무발명 보상금

□ 종업원 등은 직무발명에 대하여 특허 등을 받을 수 있는 권리나 특허권 등을 계약이나 근무 규정에 따라 사용자 등에게 승계하게 하거나 전용실시권을 설정한 경우에는 정당한 보상을 받을 권리를 가짐(발명진흥법 제15조 제1항)

○ 우리나라는 특허법 제33조 제1항*을 바탕으로 발명자주의를 취하고 있어 직무발명에 대하여 특허를 받을 수 있는 권리는 원칙적으로 발명자인 종업원에게 귀속되는 것이 원칙

*특허법 제33조 제1항 발명자 또는 그 승계인은 이 법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특허를 받을 수 있는 권리를 가진다

- 현재 우리나라와 미국의 특허법, 독일의 종업원발명법 등이 해당
- 이에 반해, 사용자주의는 종업원의 직무발명에 대하여 특허를 받을 수 있는 권리 내지 그 특허권은 원칙적으로 연구 시설과 자금을 지원한 사용자에게 귀속된다는 입장임

○ 사용자가 그 발명에 대한 권리를 승계하려면 당사자 간 계약, 근무 규정 기타 약정이 필요하며 그에 따른 보상 조치가 요구됨

- 종업원이 특허를 받게 되면 사용자는 그 특허권에 대해 통상실시권을 가짐(발명진흥법 제10조 제1항)

□ 소득세법상 직무발명 보상금

○ 소득세법 제12조(비과세소득)에서는 「발명진흥법」 제2조 제2호에 따른 직무발명으로 받는 보상금(이하 "직무발명 보상금"이라 한다)으로서 다음의 금액을 직무발명 보상금으로 인정함

○ 근로소득과 퇴직소득 중

- 「발명진흥법」 제2조 제2호에 따른 종업원 등(이하 이 조, 제20조 및 제21조에서 "종업원 등"이라 한다)이 같은 호에 따른 사용자 등으로부터 받는 보상금

- 대학의 교직원 또는 대학과 고용 관계가 있는 학생이 소속 대학에 설치된 「산업교육진흥 및 산학연협력촉진에 관한 법률」 제25조에 따른 산학협력단 (이하 이 조에서 "산학협력단"이라 한다)으로부터 같은 법 제32조 제1항 제4호에 따라 받는 보상금
- 기타소득 중 종업원 등 또는 대학의 교직원이 퇴직한 후에 지급받거나 대학의 학생이 소속 대학에 설치된 산학협력단으로부터 받는 직무발명 보상금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금액

소득세법 시행령

제17조의3(비과세되는 직무발명 보상금의 범위) 법 제12조 제3호 어목1)·2) 외의 부분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금액”이란 연 500만 원 이하의 금액을 말한다.

산업교육진흥 및 산학연협력촉진에 관한 법률

제25조(산학협력단의 설립·운영) ① 대학은 학교규칙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대학에 산학연협력에 관한 업무를 관장하는 조직(이하 “산학협력단”이라 한다)을 둘 수 있다.

② 산학협력단은 법인으로 한다.

③ 산학협력단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주된 사무소의 소재지에서 설립 등기를 함으로써 성립한다.

④ 산학협력단의 명칭에는 해당 학교명이 표시되어야 한다.

⑤ 산학협력단이 해산하는 경우 남은 재산은 해당 학교의 설립·경영자에게 귀속한다. 이 경우 학교 법인에 귀속하는 남은 재산은 「사립학교법」 제29조 제2항에 따른 교비 회계에 편입한다.

⑥ 산학협력단의 능력, 주소, 등기, 재산 목록, 이사, 해산 및 청산에 관하여는 「민법」 제34조부터 제36조까지, 제50조부터 제52조까지, 제53조, 제54조, 제55조 제1항, 제59조 제2항, 제61조, 제65조 및 제81조부터 제95조까지를 준용하며, 산학협력단의 청산인에 관하여는 같은 법 제59조 제2항, 제61조 및 제65조를 준용한다.

제32조(지출) ① 산학협력단은 다음 각 호의 지출을 할 수 있다.

1. 산학협력단의 관리·운영비
2. 산학연협력 계약의 이행에 필요한 경비
3. 대학의 시설·운영 지원비
4. 제31조 제1항 제2호부터 제7호까지의 자원 수입에 기여한 교직원 및 학생에 대한 보상금
5. 제36조에 따라 국·공립대학 또는 산학협력단이 설치한 학교기업의 운영비
6. 기술 지주 회사에 대한 출자
7. 제38조에 따른 협의회 등의 사업비 및 운영 지원비
8. 그 밖에 산학연협력과 관련되어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비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비



직무발명 보상 조세제도의 법률적인 문제점





III

직무발명 보상 조세제도의 법률적인 문제점

1. 직무발명 관련 조세제도

□ 직무발명의 개념

- 직무발명이란 종업원 등의 현재 또는 과거의 직무에 관하여 발명한 것이 사용자의 업무 범위에 속하는 발명을 의미함¹⁰⁾
- 즉, 직무발명이란 종업원이나 법인의 임원 또는 공무원이 그 직무에 관하여 발명한 것이 성질상 사용자나 법인 또는 국가나 지방자치단체의 업무 범위에 속하고 그 발명을 하게 된 행위가 종업원 등의 현재나 과거의 직무에 속하는 발명임¹¹⁾
 - 직무발명¹²⁾의 개념은 과거에는 (구) 「특허법」 제39조와 제40조에서 규정하였지만, 2006년 3월에 공포된 「발명진흥법」(법률 제7869호)으로 이관되어 「발명진흥법」 제10조부터 제19조까지에서 규정하고 있음¹³⁾

□ 직무발명 보상금의 의미

- 직무발명에 대한 권리를 사용자가 승계한 경우에는 「발명진흥법」 제15조 등에 의하여 정당한 보상을 하도록 하고 있는데, 이를 직무발명 보상금이라고 함

10) 손승우, 「지식재산권법의 이해」, 도서출판 동방문화사, 2017, p.241.

11) 「발명진흥법」 제2조 제2호.

12) 직무발명과 다른 개념으로는 자유발명과 업무발명이 있다. 자유발명이란 회사의 업무 범위에 속하지 않는 발명을 의미하며, 업무발명은 회사의 업무 범위에 속하지만, 종업원의 직무범위에는 속하지 않는 발명을 말한다. 이러한 자유발명과 업무발명은 직무발명에 해당하지 않기 때문에 법정보상의 대상은 아니다.

13) 이하 직무발명 보상의 개념에 대하여는 (김정완·김원준, 「지식재산권법」, 전남대학교출판부, 2013, pp.93-96) 및 (손승우, 「지식재산권법의 이해」, 도서출판 동방문화사, 2017, pp.240-249)의 내용을 바탕으로 하여 정리하였다.

- 우리나라의 「발명진흥법」은 법정 보상 제도를 채택하고 있는데, 이는 종업원의 직무발명에 대한 권리를 사용자가 승계한 경우 정당한 보상이 이루어지도록 법률로 의무화한 것을 의미함

□ 직무발명 보상금 관련 소득세 과세제도 개괄

- 이러한 직무발명 보상금의 성격을 어떻게 보느냐에 따라서, 종업원 등이 지급받는 직무발명 보상금에 대한 소득세의 소득 구분이 달라지고, 이에 따라서 소득세의 과세 방법과 세액의 크기에 영향을 미치게 됨
- 직무발명 보상금에 대해서는 1980년부터 비과세 기타소득으로 정하였음
 - 직무발명 보상금을 기타소득으로 구분한 이유는 직무발명 보상금의 성격 자체가 권리의 양도 대가이므로 근로소득 또는 사업소득 등에 해당될 수 없기 때문
 - 또한 연구 의욕의 고취와 기업의 생산 효율 증대 및 국가의 경쟁력 강화를 위해서 비과세하였음
- 그러나, 2011년 감사원은 직무발명 보상금의 성격을 형식적으로 판단하여 근로소득으로 보도록 지적하였음
 - 즉, 직무발명 보상금의 성격을 본질적으로 파악하는 것이 아니라, 주기적이나 반복적으로 그 대가를 지급하는 경우에는 근로소득이라고 판단함으로써 근로 소득으로 과세하도록 하였고,
 - 과세 관청도 이와 동일한 논리로 직무발명 보상금을 근로소득으로 과세하였음
- 이에 대하여 대법원 2014두15559 판결에서는 직무발명 보상금의 지급방식 등에도 불구하고 성격상 기타소득에 해당한다고 판단하였음
 - 그러나, 2016년 12월 말 「소득세법」을 개정하여 대법원의 판단과는 다르게 2017년부터 근로소득으로 구분하여 소득세를 과세하고 있는 실정임
 - 다만, 퇴직 후에 지급받은 경우에는 기타소득으로 하고, 500만 원 이하의 직무 발명 보상금은 비과세 대상으로 하고 있음



□ 대법원의 판결 전 소득세 과세 체계(1980~2016년)

- 직무발명 보상에 대해서는 1980년부터 비과세 기타소득으로 규정
 - (구) 「소득세법」 제5조 제5호 바목에서 사용인이 직무와 관련하여 발명한 대통령령이 정하는 우수 발명에 대하여 사용자로부터 지급받는 보상에 대하여 비과세 기타소득으로 규정하였음¹⁴⁾
- 이후 소폭의 개정을 거쳤지만, 2016년 말까지는 다음과 같이 「소득세법」상 기타소득으로서 비과세 대상으로 규정하였음
 - 「발명진흥법」 제2조 제2호에 따른 직무발명으로 받는 다음의 보상에 대하여는 기타소득으로서 비과세 대상으로 하고 있었음¹⁵⁾
 - 종업원이 「발명진흥법」 제15조에 따라 사용자로부터 받는 보상금
 - 대학의 교직원이 소속 대학에 설치된 「산업교육진흥 및 산학협력촉진에 관한 법률」에 따른 산학협력단으로부터 같은 법 제32조에 따라 받는 보상금
 - 이와 같이 직무발명 보상에 대하여 소득세를 비과세하였던 이유는 기본적으로 국내의 우수 발명을 촉진하기 위함임
- 한편, 2011년 감사원의 지적으로 과세 관청은 근로소득 또는 기타소득으로 과세하였음
 - 즉, 계속적 또는 반복적 지급에 대하여는 근로소득으로 과세하였고
 - 그 이외의 경우에는 기타소득으로 과세하였으며
 - 이러한 과세로 인하여 납세자와 과세 관청의 분쟁이 지속되었음

□ 대법원 판결의 주요 내용(2015년)

- 해당 판결은 정부 출연 연구 기관이 소속 연구원들에게 지급한 금액 중에서 연구 기관이 직무발명 보상에 따른 기타소득으로서 비과세 대상으로 보아 원천징수를 하지 않은 사안에 대하여, 과세 관청이 근로소득으로 보아 과세한 처분에 관한 사례임

14) 이 경우 우수 발명이란 특허 또는 실용신안권을 의미하는 것임

15) (구) 「소득세법」 (2016.12.20. 법률 제14389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2조 제5호 라목

○ 사실 관계¹⁶⁾

갑은 「과학기술 분야 정부 출연 연구 기관 등의 설립·운영 및 육성에 관한 법률」에 따라 방송·통신, 미디어 분야 연구 개발, SW·콘텐츠, IT분야 등 과학기술 분야의 연구를 주된 목적으로 설립된 정부 출연 연구 기관이다.

갑은 2006년부터 2010년까지 소속 연구원이 위 각 사업에 따른 직무를 수행하는 과정에서 특허권 등의 연구 개발 결과물을 발명한 경우 이를 승계한 후 그 연구 개발 결과물을 사용, 생산 등의 방법으로 실시하고자 하는 기업체 등과 실시 계약을 체결하고 그 대가로 지급받은 기술료 중 일부를 그 출원서나 특허 공보에 발명자로 등록된 연구자인 직원 또는 퇴직자에게 갑의 내부 규정인 지적재산권관리요령 제16조 및 제17조 제1호에 따라 실시 보상금(이하 “이 사건 보상금”이라 한다) 명목으로 지급하면서 이 사건 보상금이 「소득세법」 제12조 제5호 라목 1)에 따른 비과세소득인 「발명진흥법」상의 직무발명 보상금에 해당하는 것으로 보고 그에 대하여는 소득세를 원천징수하지 아니 하였다.

그런데, 갑사원은 2011년 8월 경 국세청장에게 갑과 같은 비영리 기관이 연구 개발 과제의 결과물을 기업체 등에게 실시하는 대가로 기술료를 징수하여 참여 연구원 등에게 지급한 기술료 성과급 등은 「발명진흥법」상의 직무발명 보상금과 성격이 다른 과세 대상 소득인 근로소득에 해당한다는 사유로 이 사건 보상금에 대하여 소득세 등을 징수하도록 통보하였다.

이에 과세 관청은 2011년 9월 27일 및 같은 해 10월 1일 갑에 대하여 재직자에 대한 근로소득세 합계 0000원과 퇴직자에 대한 기타소득세 합계 0000원 및 법인세(지급명세서 미제출에 따른 가산세) 합계 0000원을 경정·고지하였다(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

○ 납세 의무자와 과세 관청의 주장 근거

- 납세 의무자의 주장 근거

- 이 사건 보상금은 갑 소속 연구원이 원시 취득한 직무발명에 대한 특허권 등을 갑의 내부 규정에 따라 사용자인 갑에게 양도하고, 그에 대한 대가로서 받은 것이므로 「소득세법」 제12조 제5호 라목 1)에서 정하고 있는 비과세 대상 기타소득인 「발명진흥법」 제15조에 따른 직무발명 보상금에 해당함
- 따라서, 이 사건 보상금이 과세 대상 소득에 해당한다는 전제에서 이루어진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하므로 취소되어야 함

- 과세 관청의 주장 근거

- 이 사건 보상금은 다음과 같은 이유에서 「발명진흥법」 제15조에 따른 직무발명 보상금에 해당하지 아니하고 과세 대상인 근로소득에 해당하므로 이 사건 처분은 적법함

16) 이하 사실관계 및 당사자의 주장 근거는 (대전고등법원, 2014.11.12.선고, 2014누29 판결)의 내용을 정리한 것이다.



- 첫째, 「발명진흥법」 제15조에 따른 직무발명 보상공금은 종업원이 직무발명을 한 경우 그 직무발명에 대하여 특허 등을 받을 수 있는 권리를 종업원이 원시 취득하는 것을 전제로 사용자가 종업원으로부터 그 직무발명에 대한 권리나 관련 특허권 등을 이전받거나 전용실시권을 설정받는 등 종업원이 원시 취득한 직무발명에 대한 권리 등을 승계 취득하는 경우에 인정된다 할 것 인데, 갑의 경우와 같이 비영리 연구 기관이 정부 출연금을 재원으로 수행한 결과 얻어지는 국가 연구 개발 결과물의 소유권은 “국가 연구 개발 사업의 관리 등에 관한 규정”(이하 “국가연구개발사업관리규정”이라 한다) 제20조 제2항에 따라 주관 연구 기관인 갑에게 처음부터 귀속되는 것이므로 갑 소속 종업원이 직무 발명을 하였다 하더라도 그 직무발명에 대한 권리 내지 관련된 지식재산권은 갑이 이를 원시 취득하는 것으로 보아야 함
- 따라서, 이 사건 보상공금은 직무발명에 대한 권리를 종업원이 원시 취득하는 것을 전제로 하는 「발명진흥법」상의 직무발명 보상공금에 해당하지 않음
- 둘째, 갑이 기업체 등과 실시 계약을 체결하고 그 대가로 지급받은 기술료 중 일부는 출원서나 특허 공보에 발명자로 기재되어 있지 않은 참여 연구원과 해당 연구에 참여하지 않은 지원 인력 및 퇴직자에게도 지급되었으므로 이 사건 보상공금은 특허권 등의 권리 이전에 대한 대가로 지급된 실시 보상공금이 아니라 연구 장려금(인센티브)에 해당하는 점,
- 갑이 기술료 수입이라는 재원을 가지고 같은 근거 규정에 따라 자신의 소속 종업원에게 금원을 지급하면서 비창작자에게 지급한 금원에 대하여는 소득세를 원천징수하고, 창작자에게 지급한 금원에 대하여만 비과세로 처리한 것은 논리적으로 모순되는 점,
- 「소득세법」 제12조 제5호에 열거하는 기타소득은 그 속성상 일시적·우발적인 소득을 의미하는 것으로서 소득의 형식적 명칭이 위 제5호에 열거된 것과 일치 하더라도 그 소득이 일시적·우발적으로 발생한 것이 아니라 일정한 수익을 목적으로 계속적·반복적으로 행하는 사업 수행 과정에서 발생한 것이라면 그것은 그 명칭에도 불구하고 사업소득으로 보아야 할 것인 점,

- 비과세 대상이 되는 기타소득은 「발명진흥법」 제15조에 따라 사용자로부터 지급받는 보상금이어야 하고 「발명진흥법」 제15조 제1항은 실시권 중 전용 실시권만을 설정한 경우에 사용자로부터 지급받는 보상금을 직무발명 보상금에 포함시키고 있을 뿐 비독점적 통상실시권을 설정하고 사용자로부터 지급받는 금원은 직무발명 보상금에 포함시키고 있지 아니한 점 등에 비추어 보면, 갑이 소속 연구원에게 지급한 이 사건 보상금은 「소득세법」상 비과세 대상이 되는 직무발명 보상금이 아니라 연구 장려금(인센티브) 성격의 금원으로서 「소득세법」 제20조 제1항 제1호의 근로소득에 해당함

○ 대법원의 판결 내용(대법원 2015.4.23.선고, 2014두15559 판결)

- 정부 출연 기관인 갑 연구원이 지급받은 기술료 중 일부를 발명에 기여한 직원 등에게 실시 보상금으로 지급하면서 보상금을 「소득세법」 제12조 제5호 라목 1)에서 정한 비과세소득인 「발명진흥법」상 직무발명 보상금으로 보아 소득세를 원천징수하지 않자 과세 관청이 갑 연구원에 소득세 징수 처분을 한 사안에서,
 - 보상금은 갑 연구원 소속 종업원들이 갑 연구원의 내부 규정인 지적재산권 관리 요령에 따라 갑 연구원에 직무발명에 대한 권리 등을 승계하여 주고 이를 원인으로 하여 갑 연구원으로부터 지급받은 실시 보상금인데,
 - 갑 연구원이 내부 규정인 지적재산권 관리 규정과 인사 규정 등에 따라 합리적으로 산정한 것으로 보상금이 직무발명 보상금으로서 정당한 보상의 범위를 넘는 것이라고 보기 어려운 점,
 - 이 사건 보상금과 달리 갑 연구원이 소득세를 원천징수한 연구 장려금(인센티브)의 경우 이 사건 보상금과 그 산정 방법을 일부 공유하였으나 그 지급 근거와 지급 대상 및 지급 취지 등이 전혀 다른 점 등을 종합하여 보면,
 - 이 사건 보상금의 지급 방법이 규칙적·반복적이었다거나, 그 지급 원인이 된 직무발명이 갑 연구원의 목적 사업을 수행하는 과정에서 이루어졌다는 등의 사정만으로 이 사건 보상금이 근로소득에 해당한다고 할 수 없고,
 - 보상금은 과세 대상인 근로소득이라고 볼 수 없고 「소득세법」 제12조 제5호 라목 1)에서 정한 비과세 기타소득에 해당한다고 판시하였음



□ 대법원 판결 후 소득세 과세(2017년~)

○ 이후 2016년 12월 「소득세법」을 개정하여 2017년부터 직무발명 보상금의 경우 근로소득 또는 기타소득으로 하였음

- 다만, 300만 원 이하의 직무발명 보상금은 비과세소득으로 규정하였다가, 2019년 세법 개정을 통해 비과세소득을 500만 원까지로 확대하였음¹⁷⁾

○ 관련 규정을 구체적으로 살펴보면 다음과 같음

종업원 등 또는 대학의 교직원이 지급받는 직무발명 보상금은 근로소득으로 하되, 종업원 등 또는 대학의 교직원이 퇴직한 후에 지급받는 직무발명 보상금은 기타소득으로 한다.¹⁸⁾ 다만, 「발명진흥법」 제2조 제2호에 따른 직무발명으로 받는 다음의 보상금(이하에서 “직무발명 보상금”이라고 한다)으로서 연 500만 원 이하의 금액에 대하여는 근로소득세를 비과세한다.¹⁹⁾

- ① 「발명진흥법」 제2조 제2호에 따른 종업원 등(이하에서는 “종업원 등”이라 한다)이 같은 호에 따른 사용자 등으로부터 받는 보상금
- ② 대학의 교직원 또는 대학과 고용 관계가 있는 학생이 소속 대학에 설치된 「산업교육진흥 및 산학협력촉진에 관한 법률」 제25조에 따른 산학협력단으로부터 같은 법 제32조 제1항 제4호에 따라 받은 보상금

또한, 종업원 등 또는 대학의 교직원이 퇴직한 후에 지급받는 직무발명 보상금으로서 연 500만 원(해당 과세 기간에 근로소득으로 비과세되는 금액이 있는 경우에는 500만 원에서 해당 금액을 차감한 금액으로 한다) 이하의 금액에 대하여는 기타소득세를 비과세한다²⁰⁾.

□ 한편, 직무발명 보상금을 지급하는 법인의 입장에서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제8조의 연구·인력 개발비 세액 공제 대상 직무발명 보상금 여부에 대해서는 국세청 유권 해석이 있음²¹⁾

○ 「발명진흥법」에 따른 직무발명 보상금을 종업원에게 지출하는 경우 해당 지출액은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별표 6의 1. 연구 개발 라목에 따라 연구·인력 개발비 세액 공제를 적용받는 비용에 포함되는 것임

17) 직무발명 보상 지원을 강화하기 위하여 비과세 한도를 확대하였고, 비과세 대상자에 소속 대학의 산학협력단으로부터 학생이 받은 보상금도 추가하였다.

18) 「소득세법」 제20조 제1항 제5호 및 「소득세법」 제21조 제1항 제22의2호.

19) 「소득세법」 제12조 제3호 어목 및 「소득세법」 시행령 제17조의3.

20) 「소득세법」 제12조 제5호 라목 및 「소득세법」 시행령 제18조 제2항.

21) 조특, 서면-2017-법인-1724 [법인세과-209], 2018.1.25.

- 다만, 그 보상 형태가 「발명진흥법」에 따른 정당한 직무발명 보상금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사실 판단할 사항에 해당되는 것임
- 결국, 「발명진흥법」에 따른 정당한 직무발명 보상금이라면 지급하는 법인 입장에서는 연구·인력 개발비 세액 공제 대상에 해당되어 기업의 유형에 따라서 20~30%의 세액 공제를 받을 수 있게 됨

2. 직무발명 보상금 관련 주요 국가의 과세제도

□ 미국의 직무발명 관련 과세제도

○ 미국의 직무발명 제도의 개요

- 미국은 종업원의 직무발명과 관련하여 연방 차원의 단일법은 없으며, 「특허법」에서도 이와 관련된 규정은 존재하지 않는 실정임²²⁾
- 따라서, 종업원의 직무발명은 판례법에 근거하고 있으며 판례법에 근거한 직무발명은 특정된 발명, 일반적인 기술 개발 및 자유 발명 등으로 나눌 수 있음
 - 특정된 발명(specially hired to invent): 특정한 발명 또는 개량을 직무로 하여 고용된 경우로 이는 특허를 받을 권리가 사용자에게 자동 이전됨
 - 일반적인 기술 개발(hired to invent in general): 일반적인 기술 개발을 직무로 고용된 경우 또는 사용자의 설비 등의 자원을 사용한 발명
 - 자유 발명: 종업원이 발명 및 기술 개발의 직무와는 무관하게 발명한 경우²³⁾
- 「특허법」상 발명에 대해 특허를 받을 권리는 발명자가 취득(발명자주의)하도록 하고 있으므로 원칙적으로 종업원의 발명에 대한 권리는 종업원에 귀속된다고 보아야 함²⁴⁾

22) 다만, 8개 주(캘리포니아 주, 델라웨어 주, 일리노이 주, 캔자스 주, 미네소타 주, 노스캐롤라이나 주, 유타 주, 워싱턴 주)의 주법(州法)은 특정 자유 발명에 대해 예약승계(pre-assignment contract)를 금지하고 있다. 즉 사용자가 우월적 지위를 남용하여 개인 발명에 대해 양도하도록 강제하지 못하도록 한 것이다.

23) Joshua L. Simmons, *Inventions Made for Hire*, 2 NYU J.Intell. Prop. & Ent. L. 1 (2012); Dwight B. Cheever, *The Rights of Employer and Employee to Inventions Made by Either during the Relationship*, Michigan Law Review, Vol. 1, No. 5 (Feb., 1903), pp.384-392.

24) 35U.S.C. §101



- 그러나 사용자와 종업원 간의 계약이 있는 경우에는 판례법에 근거하여 다음과 같이 귀속되고 있음²⁵⁾
 - 종업원이 사용자에게 양도 의무가 발생하는 발명: 발명 목적으로 고용된 종업원이 연구 결과로 발생한 특허 가능 발명으로 사전 양도 계약은 체결되지 않았어도 고용 계약의 본질상 발명에 대한 권리를 사용자에게 양도할 의무가 있음
 - 무상으로 회사에 발명 사용권(통상실시권: shop right)이 발생하는 발명: 종업원이 근무(임무)와 관련된 연구 개발 또는 종업원이 발명 목적으로 사용자의 설비를 사용하여 발명을 한 경우 및 종업원이 사용자의 허가 없이 근무 시간 또는 사용자의 설비를 사용하여 발명한 경우로서 해당 발명에 대한 권리는 종업원에게 귀속되고, 사용자는 그 발명을 비배타적으로 실시할 권리를 가짐
- 이와 같이 직무와 관련된 발명에 대한 권리에 대해서는 판례법상 정립되어 있지만, 종업원에 대한 보상은 법률상 의무가 부여되어 있지는 않음
- 한편, 대학 교수 등의 발명에 대한 권리를 대학에 양도하는 경우 일반적으로 동일하지만, Bayh-Dole Act(1980년 제정)²⁶⁾에 의해 연방정부의 재정 지원으로 이루어진 연구 결과물은 그 권리를 대학 또는 참여 기관이 보유할 수 있음
- 그리고, 연방 정부의 공무원이 발명한 경우 그 발명이 근무시간 중에 이루어진 발명, 연방 정부의 시설·설비·재료·자금·정보 또는 공무 중에 다른 공무원의 시간이나 노무를 제공받아 이루어진 발명, 해당 발명자의 공무와 직접적인 관련이 있거나 공무의 결과로 이루어진 발명 등의 발명에 관한 모든 권리는 연방 정부에 귀속하도록 되어 있음
 - 다만, 연방 정부 공무원의 발명에 대한 권리가 연방에 귀속되는 경우 1986년에 제정된 연방 기술 이전법(Federal Technology Transfer Act)상 연방 기구의 사용료 수입 배분(Distribution of royalties received by Federal agencies) 규정에 따라 매년 2,000달러를 먼저 지급한 후 사용료로 15% 이상을 지급함²⁷⁾

25) Restatement of Agency (second) §397 (1958), Standard Parts Co. v. Peck, 264 U.S. 52 (1924)., United States v. Dubilier Condenser Corp., 289 U.S. 178 (1933).

26) 35 U.S.C. §§ 200-212.

27) 15 U.S.C.A. § 3710c(a)(1)(A)(i).

○ 미국의 직무발명 보상금 관련 과세제도

- 통상소득 및 양도소득

- 미국의 연방 재무부 시행규칙(treasury regulation)은 직무발명 보상금에 대해 통상소득(ordinary income)에 포함되는 근로소득이나 자본이득으로 분류하고 있음
- 재무성 시행규칙 §1.1235-1(c)(2)에서는 근로 계약 내용 중에서 종업원이 연구 또는 발명으로 창출된 지적재산권을 사용자에게 양도하도록 명시한 경우 직무발명 보상금은 종업원이 근로계약에 의해 연구 또는 발명으로 수취하게 되는 대가로 이는 양도소득(I.R.C. Section 1235)으로 보지 않는다고 봄
- 따라서, 직무발명 보상금이 통상소득이 되기 위해서는 직무발명 대가인지의 여부를 판단해야 하며, 이를 판단할 때는 “발명을 위한 고용(hired to invent)의 원칙”에 근거하게 됨²⁸⁾
- “발명을 위한 고용의 원칙”은 사용인이 연구 또는 발명을 목적으로 종업원을 고용한 것을 말하며, 종업원이 그 직무 수행에 따른 발명에 대해 별도로 그 대가를 지급한 금액은 통상소득으로 분류하고 있음²⁹⁾
- 통상소득인지 또는 양도소득인지의 여부를 판단함에 있어서 사용자가 고용 계약 등에 의해 받은 종업원에 대한 모든 실질적 특허권을 종업원이 양도했는지 또는 사용자에게 제공한 업무에 대한 보상인지의 여부가 문제될 수 있음
- 이러한 경우 고용관계의 모든 사실과 상황뿐만 아니라 그러한 금액이 사용자의 생산이나 판매 또는 고용의 가치에 달려 있는지의 여부에 따라 판단함
- 종업원이 양도한 특허권이나 보상금이 특허권 실시 이전에 기인한다고 판단되고 I.R.C §1235조에 따른 모든 다른 요건이 충족되는 경우에는 동

28) Peter T. Beach, Capital Gain Treatment of a Sale of Computer Software by a Research and Development Limited Partnership, 68 Cornell Law Review 554(1983), p.565.

29) John Gladstone Mills III, Donald Cress Reiley III, Rober Clare Highly and Peter D. Rosenberg, Tax Treatment of patents - Employee achievement awards, 5 Patent Law Fundamentals (2nd Edition), Westgroup, 2016, " 19 : 36. 재인용 정승영, “직무발명 보상금의 과세 문제에 관한 연구”, 「조세법연구」 제22권 제2호, 한국세법학회, 2016.8, p.160.



보상금은 특허 판매에서 파생된 수입금으로 취급되어야 한다고 보아 양도 소득으로 분류될 수 있다고 보고 있음

- 이와 같이 미국의 경우, 직무발명 보상금에 대해 과세상 통상소득인 근로 소득과 양도소득으로 취급될 수 있음

○ 직무발명 보상금 관련 판결례

- 미국의 경우에는 직무발명 보상금에 대해서는 근로소득으로 보는 경우와 양도 소득으로 보는 경우가 있음
- 따라서 근로소득으로 보는 판결례와 양도소득으로 보는 판결례 중에서 대표적인 것을 소개함³⁰⁾
- Blum v. Commissioner 사건³¹⁾
 - Blum이 엔지니어로 회사에 관련된 제품을 발명하였고, 해당 발명 제품에서 발생하는 수익의 일정 부분을 회사로 지급받았으며, 동 수익이 어떤 소득에 해당하는지 다툼이 된 사례임
 - 법원은 “일반적인 근로 계약과 직무와 관련된 발명의 별도 계약 간의 상관 관계를 인정하여 하나의 계약으로 취급하는 것이 합리적이고, 납세자가 기업에서 하는 역할이 특정한 발명을 위해 연구 및 개발을 하는 것이 주된 것이고, 납세자가 발명을 한 후 해당 발명으로 취득한 지식 재산을 기업에 귀속되도록 후속의 별도 계약을 맺어 보상금을 지급받은 소득이 지식 재산 양도에 따른 자본이득은 구성하지 못한다”라고 판시하였음
 - 즉, 동 판결에 있어서는 종업원 등이 근로 계약에 의해 연구나 발명 등 특정 사안을 해결하기 위해서 고용된 경우에는 그 소득은 통상소득으로서 근로 소득에 해당한다고 판단하였음
- Chilton v. Commissioner 사건³²⁾
 - 항공기 엔진을 설계하는 엔지니어인 종업원 Chilton은 근로 계약상 항공기 엔진 및 관련 부품 등에 발명에 따른 지식재산권이 회사로 귀속되도록 되어

30) 이 부분은 (정승영, “직무발명 보상금의 과세 문제에 관한 연구”, 「조세법연구」 제22권 제2호, 한국세법학회, 2016.8, p.160)의 내용을 바탕으로 정리하였다.

31) Blum v. Commissioner., 183 F.2d 281, 286-287(1950).

32) Chilton v. Commissioner, 40 T.C. 552, 563 (1963).

있으며, 이에 Chilton이 발명한 권리는 회사로 귀속되었고 회사는 이에 추가 지급금을 지급하였음

- 이에 회사는 추가 지급금을 사용료(royalties)의 일종으로 보았지만, 과세 관청(IRS)은 근로 계약을 근거로 근로소득으로 보았음
- 동 사건의 쟁점은 근로 계약상의 “inventive ability”라는 용어가 특정 결과물 (specific product)을 제시하는 발명과 연계되는 ‘hired to invent’의 개념과 의미로 해석될 수 있는지 여부
- 이에 대해 법원은 “근로 계약으로 근로 계약 중에서 해당 기업이 개발 완료 테스트 종료 후 90일 이내에 지식 재산의 귀속에 관한 서면 통지를 근로자에게 해야 하며, 해당 지적재산권이 종업원인 납세자에게 귀속된다는 점을 들어 ‘inventive ability’라는 용어 역시 단순하게 엔지니어링 작업 업무에서 추구 되는 수준을 이야기하여 직무발명으로 특허 등 지식 재산이 취득될 수 있다”라고 하여 근로소득이 아닌 양도소득으로 보아야 한다는 견해를 취하였음
- 즉, 근로 계약의 내용을 엄격하게 해석하여 통상소득인 근로소득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해석한 것임

□ 일본의 직무발명 관련 과세제도

○ 일본의 직무발명 제도의 개요

- 일본은 직무발명과 관련된 단일법은 가지고 있지 않으며, 「특허법」을 통하여 직무발명에 대한 규율 체제를 갖추고 있음
- 이와 같은 직무발명 제도를 설치한 이유는 사용자, 법인, 국가 또는 지방공공 단체 등(이하 이 항에서 “사용인 등”이라 한다)이 조직에서 행한 연구 개발 활동이 큰 역할을 하여 사용자 등이 연구 개발 투자를 적극적으로 할 수 있도록 안정적인 환경을 제공하고, 직무발명의 직접적인 담당자인 종업원, 법인의 임원, 국가 및 지방 공무원(이하 이 항에서 “종업원 등”이라 한다)이 사용자 등에 따라 적절하게 평가되고 보상되는 것을 보장함으로써 발명의 인센티브를 부여하기 위한 것임



- 이와 같이 사용인 등에 대하여 직무발명에 관해 안정적으로 특허권을 취득할 수 있도록 인정하는 한편으로 발명자인 종업원 등에 대해서는 직무발명과 관련된 권리를 사용인 등에게 승계되는 경우 “상당한 금전 기타 경제상의 이익”³³⁾ 청구권을 보장하고 있음
- 여기서 “상당한 금전 기타 경제상의 이익”은 발명자의 이익을 지키기 위해 금전에 한정하지 않고 금전 이외의 경제상 이익을 받도록 하는 것임
- 그리고, 계약이나 근무 규정 및 기타 규정에서 “상당한 이익”에 관하여 규정하는 경우 그 이익을 결정하기 위한 기준을 정할 때 사용인 등(기업)과 종업원 등 간에 행해지는 협의의 상황, 정한 기준의 개시(開示) 상황, 대가의 산정에 관한 종업원 등에게서의 의견 청취 상황 등을 고려하여 정하는 바에 따라 대가를 지급하는 경우에는 합리적이라고 인정됨³⁴⁾
- 또한, “상당한 이익”과 관련된 계약이 합리적이 못하다는 불합리성 판단에 있어서는 예시된 절차의 상황이 적정한지를 검토하고 그 절차가 적정하다고 인정되는 한 사용인 등과 종업원 등이 정한 계약이 존중되어야 함³⁵⁾
- “상당한 이익”에는 금전 이외의 경제상의 이익도 포함되어 있는데, 이는 경제적인 가치를 평가할 수 있는 것(예를 들면, 표창장 등에 의해 상대방의 명예를 높이는 것만은 경제적 가치를 가지고 있다고 평가할 수 없기 때문에 포함되지 않는다)
- 이러한 경제적 가치의 예를 살펴보면, ① 사용인 등 부담에 의한 유학의 기회 부여, ② 스톡옵션의 부여, ③ 금전적 우대가 수반된 승진 또는 승격, ④ 법령 및 취업규칙 소정의 일수기간을 넘는 유급 유가의 부여, ⑤ 직무발명과 관련된 특허권에 대해 전용실시권 설정 또는 통상실시권의 허락 등이 있음
- 한편, 대학 발명은 발명의 내용 등에 따라 승계 여부를 판단하고 대학에 귀속 시켜야 할지를 각각 판단하고 있음

33) 종전(2015년 개정 이전)에는 이를 “상당한 대가”로 규정되어 있었으며, 여기서 말하는 “상당한 대가”가 무엇인지에 관해서는 규정하지 않고 있지 않아 「特許法」 第35條 第5項의 규정된 상당한 대가 산정 시 고려되는 요인으로 구별하였다.

34) 日本「特許法」 第35條 第4項

35) 日本「特許法」 第35條第6項

- 여기서 판단 기준은 발명자로부터의 발명 신청, 발명 평가, 귀속 판정 (직무 발명 해당성, 특허성, 사업화 가능성 등에 근거한 승계 여부), 승계 절차 (양도증 수령) 등이 있음
- 다른 직무발명과 마찬가지로 미리 대학이 직무발명과 관련되어 특허를 받을 권리를 원시 취득한다는 규정이 없다면 발명자에게 원시 귀속하여 대학 기관이 승계 취득할 수 있음³⁶⁾

○ 직무발명 보상금 관련 과세제도

- 일본은 과세소득을 소득의 발생 원천에 따라 이자소득·배당소득·부동산소득·사업소득·급여소득·퇴직소득·산립소득·양도소득·일시소득 및 잡소득의 10종류로 구분하면서 직무발명 보상금에 대하여 소득세를 과세하고 있는데, 이자소득·배당소득·부동산소득·사업소득·급여소득·퇴직소득·산립소득·양도 소득 및 일시 소득 중 어느 소득에도 해당하지 않는 소득을 모두 잡소득에 포함시키고 있음³⁷⁾
- 직무발명 보상금에 대해서는 소득세를 과세하는데, 그 소득 구분에 관하여는 양도소득이라는 견해와 급여소득이라는 견해 및 잡소득이라는 견해로 나뉨³⁸⁾
 - 양도소득으로 보는 견해
 - 직무발명 보상금에 대해 모두 양도소득으로 보아야 한다는 견해는 우선 “직무발명에 관한 종업원 등이 사용자 등으로부터 취득한 금전의 법적 근거를 2가지로 대별할 수 있다”고 보고 있음³⁹⁾
 - 첫째, 「특허법」 제35조 제3항에 규정되어 있는 계약이나 근무 규칙 등에 근거하여 사용자 등으로부터 종업원 등에 지급한 보상금
 - “양 당사자의 합의에 의해 사용자 등으로부터 종업원 등에 대해 교부된 금전이기 때문에 그 소득 구분은 해당 합의 내용 여부에 따라서 결정된다”고

36) 大学等における産学官連携リスクマネジメント検討委員会, 「大学等における職務発明等の取扱いについて」, 文部科学省, 2016. p.9.

37) 김완석·정지선, 「소득세법론」, 삼일인포마인, 2018, pp.59-60.

38) 이 부분은 (中野辰洋, “職務発明対価に関する所得区分の再検討—大阪地裁平成23年10月14日判決を素材にして—”, 「立命館法政論集」第11号, 2013, pp.56-64)의 내용을 참조하였다.

39) 元氏成保, “職務発明に関して従業者等が使用者等から受け取る金員の所得区分”, 「行政と国民の権利: 水野武夫先生古稀記念論文集」, 法律文化社, 2011, p.513.



하면서 종업원 등이 특허를 받을 권리를 사용자 등에 승계 시킨 대가로 받은 경우에는 양도소득으로 보아야 한다는 것

- 둘째, 「특허법」 제35조 후단의 ‘상당한 대가’의 청구권에 근거하여 종업원 등이 사용자 등에 대해 청구한 상당한 대가
 - “특허를 받을 권리를 근무 규정에 따라 수반되어 강제적으로 사용자 등에 승계 시킨 대가로서 「특허법」 제35조 3항은 종업원 등에 대한 상당한 대가 지급 청구권을 취득하는 것을 법정(法定)한 것이기 때문에 해당 종업원이 그것을 실현함으로써 취득한 금전은 바로 특허를 받을 권리의 양도에 의한 소득이다”라고 하여 양도소득에 해당한다고 판단하고 있음
 - 직무발명 보상금이 양도소득에 해당하는 또 다른 이유로서 특허를 받을 권리를 재평가함에 있어서 해당 특허권 실시에 의해 사용자 등이 얻을 이익을 고려해야 할 요소의 하나에 지나지 않는다고 함
 - 즉, 다양한 요소를 고려해야 할 「특허법」 제35조의 규정에 따라 특허를 받을 권리를 재평가한 결과 추가적인 대가를 지급해야 할 사실이 명확하기 때문에 이 소득에 대한 과세는 바로 종업원 등이 소유하고 있는 자산에 귀속할 증가 이익에 과세하는 것이기 때문이므로 추가 대가의 지급이 양도소득에 해당 한다고 주장하고 있음
- 급여소득으로 보는 견해
 - 직무발명 대가에 대해 급여소득으로 보는 이유로 우선 酒井 교수는 급여소득 요건을 종업원으로서의 “지위”라는 단어를 사용하여 직무발명의 요건과 맞추어 급여소득 해당성을 검토하고 있음⁴⁰⁾
 - 구체적으로는 「특허법」 제35조에서 말하는 “직무”의 범위에 대해 “확실적으로 결정되는 것은 아니고, 종업원의 직종이나 직위 등을 감안하여 결정해야 한다”라고 해석하고,
 - 직무저작(職務著作) 사례⁴¹⁾에서 “「저작권법」 제15조 제1항의 ‘법인 등에 종사하는 자’에 해당하는지의 여부는 법인 등과 저작물을 작성한 것과의

40) 酒井克彦, “職務発明対価に係る所得税法上の所得区分(1) - 特許を受ける権利と相当の対価-”, 『先端技術関連法研究』 8号. 最先端技術関連法研究所, 2009, p.10.

41) 東京高裁 平成12年11月9日判決

관계를 실질적으로 보았을 때 법인 등의 지휘 감독 하에서 노무를 제공한다는 사실 관계에 있다. 법인 등이 그 자에 대해 지급된 금전이 노무 제공의 대가라는 평가를 할 수 있을지 여부를 업무 형태·지휘 감독의 유무·대가 및 지급 방법 등에 관한 구체적 사정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판단해야 할 것으로 해석하는 것이 상당하다.”라고 판시하고 있다는 점,

- 종업원 “지위”의 판단 시의 접근 방법 가운데 하나인 노무 제공 형태의 접근 방법(노무 제공이 어떠한 형태로 행해졌는지는 노무 대가의 지급 원인이 되는 노무 제공의 형태 측면에서 파악하는 접근 방법)과의 유사성을 지적하고 있음
- 급여소득의 요건으로서 열거된 비독립적인 노무 제공에 대해서도 언급하고 있는데, 「특허법」에서 말하는 직무가 사용자의 지휘 명령에 의한 것에 한정되지 않는 점이나 직무발명이 근무 시간 중 상당 정도 일어나면 직무발명을 인정하는 데에 충분하다고 판시되고 있는 점을 들어 급여소득에 해당 가능성은 상당히 높은 것으로 생각된다고 주장함
- 그리고, 佐藤 교수는 발명 등이란 다른 측면과의 균형을 이유로 급여소득 해당성을 주장하고 있음
- 佐藤 교수는 “예를 들면, 공구나 원자료 등을 모두 사용자가 제공하고 종업원이 스스로 고도의 기술을 행사하여 만든 공예품을 제작하는 경우 사용자가 종업원에 지급한 ‘급여’는 원칙적으로 전액이 급여소득이 된다고 주장하고 있음
- 그 이유는 그 종업원이 행한 것은 어쨌든 고도의 지식이나 기술을 필요로 하면서도 종속적인 노무를 제공한다는 점이기 때문임
- 이것과 비교할 경우 설비·원재료·자료·기타 연구 환경 일체에 관한 경비를 사용자가 부담하고 종업원은 사용자의 광의의 지휘 명령 하에서 연구를 행하고 그 연구를 행하는 것 자체가 당사자 간에 합의되어 기대되고 있는 노무 제공인 경우에 사용자로부터 종업원에 지급된 ‘대가’뿐만 아니라 종속적 노무 대가 이외의 아무것도 아닐 것이다”라고 전문적인 통상의 직무와 직무발명에 실질적으로 큰 차이가 없기 때문에 급여소득에 해당 한다고 보고 있음⁴²⁾

42) 佐藤英明, “使用者から与えられる報奨金等が給与所得とされる範囲”, 「税務事例研究」 61卷, 日本税務研究センター, 2001, p.21.



- 잡소득으로 보는 견해

- 직무발명 보상에 대해 잡소득으로 보아야 한다는 견해는 “직무발명의 상당한 대가는 영리를 목적으로 계속적으로 행한 자산의 양도에 의한 양도 소득에 해당하지 않고, 또한 노무 기타 역무의 대가로서의 성질을 가진 일시소득에도 해당하지 않으므로 잡소득에 해당한다”는 것임
- 특히 실시 보상금 등은 “권리의 이전에 의해 한 번에 실현되지 않기 때문에 세무상 양도소득에 해당하지 않으며, 상당한 대가청구권에 근거해 지급된 것이 대학이 해당 권리를 독점적으로 이용하여 얻은 이익의 실적에 근거하여 산정된 사용료와 같은 성격을 가진 것이나 발명 직원이 퇴직 또는 사망한 경우에도 해당 발명자나 상속인에 계속하여 지급되므로 급여소득에도 해당하지 않고 잡소득에 해당한다”고 보고 있음⁴³⁾
- 또한, “직무발명 대가는 양 당사자의 합의에 의해 사용자 등으로부터 종업원 등에 대해 교부된 금전이기 때문에 그 소득 구분은 해당 합의 내용 여부에 따라서 결정된다”고 하면서 실적 보상제도 등에 의해 해당 특허권의 실적에 따라 이익의 일부를 환원하는 성질을 가진 것은 잡소득으로 보았음⁴⁴⁾
- 이러한 잡소득으로 보는 견해와 함께 양도소득으로 보는 견해는 다음의 국세청의 해석(所得税基本通達)과 같다고 볼 수 있음

- 과세 관청의 과세상 취급

- 현행 소득세기본통달(所得税基本通達) 23~32共-1(사용인 등의 발명 등에 관한 보상금 등)에서는 사용인(종업원)이 발명 등에 의해 지급받은 보상금 등에 대해 특허를 받을 권리 승계 시 일시적으로 지급받은 것은 양도소득(讓渡所得)으로 분류하고, 특허 받을 권리가 승계된 후 지급받은 것은 잡소득(雜所得)으로 규정하고 있음
- 여기서 “승계 시 일시적으로 지급을 받는 것”에 대한 취급은 특허권 또는 특허를 받을 권리 등이 이전 가능하고 경제적 가치를 가진 자산이기 때문에 양도소득에 기인하는 자산에 해당한다는 이유가 됨

43) 日本 國稅廳, 「平成17年10月3日に岡山大学が行った事前照会」, 2005.

44) 元氏成保, “職務発明に関して従業者等が使用者等から受け取る金員の所得区分”, 「行政と国民の権利: 水野武夫先生古稀記念論文集」, 法律文化社, 2011, p.513.

- 그리고 “승계 후에 지급받은 것”에 대해서는 해당 금원(金員)이 승계후의 특허권 또는 특허를 받을 권리 등이 실시 성적에 따라 지급됨
- “상당한 대가”의 소득 구분과 관련된 다툼에서 국세불복심판소(国税不服審判所)의 재결 사례로서 2009년 4월 23일 재결과 2011년 9월 22일의 재결이 있음
- 2009년 4월 23일 재결: “본건 화해금은 … ‘특허를 받을 권리’가 양도된 후에 특허법 제35조 제3항의 규정에 근거하여 본건 직무발명과 관련된 ‘상당한 대가’의 추가분으로서 … 지급을 받은 것이며, 그 성질도 … 사용료와 동일하기 때문에 본건 화해금과 관련된 소득은 잡소득이 된다”, “‘특허를 받을 권리’가 양도된 후에 일시적으로 지급을 받은 금원은 양도소득이 되지만, 본건 화해금은 이와 달리 해당 권리가 양도된 후에 지급을 받은 금액에 해당하며, 양도소득 이외의 소득으로 해석해야 할 것이다”
- 2011년 9월 22일 재결: “실적 장려금에 대해 … 본건 화해금에 있어 청구인의 직무발명의 대가 부족분으로서 그 액을 최종적으로 확정시킨 것이며, 본건 화해금과 관련된 수입은 본건 화해의 시점에 있어 소득의 실현이 있다고 보는 것이 상당하며 …, 양도소득과세의 취지(한 번에 실현되는 것에 한정한다는 해석)에 비추어보아도 본건 화해금은 양도소득으로 해석할 수 없다”
- 이와 같이 재결례에서는 일관되게 양도 시 일시에 지급을 받는 것에 대해서는 양도소득, 승계 후에 지급을 받는 것에 대해서는 잡소득으로 판단하고 있음
- 일본의 과세 관청은 발명자가 가진 직무발명 등의 특허권 등에 대한 대가를 받을 권리(대가청구권)는 각 법령상의 고용 계약 등의 존재를 지급 전제로 하지 않으며, 또한, 「민법」 제466조 “채권의 양도성”에 근거하여 양도 가능하게 되어 고용 계약 등을 전제로 한 급여로 취급하는 것은 타당하지 않다고 보기 때문에 사용인(종업원) 등에 관한 보상은 잡소득으로 본다고 할 수 있음

○ 주요국의 직무발명 보상금 관련 과세제도의 시사점

- 우리나라뿐만 아니라 미국과 일본 등 거의 모든 나라가 직무발명에 대한 권리는 그 발명자에게 귀속되는 것으로 보고 있음



- 미국의 경우 「특허법」상 발명에 대해 특허를 받을 권리는 발명자가 취득 (발명자 주의)하도록 하고 있으므로 원칙적으로 종업원의 발명에 대한 권리는 종업원에 귀속된다고 보아야 함
- 일본의 경우에도 발명에 대한 권리는 발명자에게 귀속됨
- 미국의 경우에는 직무발명 보상금에 대해 통상소득(ordinary income)이나 자본 이득으로 분류하고 있음
 - 미국의 경우에는 통상소득으로 볼 여지가 있는데, 이는 직무와 관련된 발명에 대한 권리에 대해서는 판례법상 정립되어 있지만, 종업원에 대한 보상에 대해서는 법률상 의무가 부여되어 있지 않다는 점에서 우리나라와 근본적인 차이점이 존재하기 때문
 - 즉, 우리나라의 경우에는 「발명진흥법」상 보상이 강제되어 있지만, 미국의 경우에는 강제되어 있지 않은 것임
 - 따라서, 미국의 경우에는 우리나라와 달리 통상소득으로 볼 수 있는 여지가 있지만, 우리나라의 경우에는 법률에 의하여 보상이 강제되어 있기 때문에 통상소득이 아니라 기타소득으로 구분하는 것이 타당함
 - 한편, 미국의 경우에도 특허권의 실질적인 권리의 이전으로 발생하는 소득은 양도소득으로 신고할 수 있음
 - 즉, 특허권의 처분이나 사용 또는 활용도에 따라 특허권의 양도자가 주기적인 보수를 받아도 이와 관계없이 장기 양도소득으로 처리할 수 있음
- 일본의 경우에도 「특허법」에 명시적으로 일정한 보상금을 지급하도록 규정하고 있음
 - 일본의 법 체계가 우리나라와 거의 유사한데, 일본의 경우에는 기본적으로 양도소득 또는 우리나라의 기타소득과 유사한 잡소득으로 분류하고 있음
 - 즉, 계약 또는 근무 규칙을 통하여 지급되는 경우에는 1회성 보상으로서 양도소득으로 보고 있으며,
 - 소송 과정에서 지급받는 화해금의 경우에는 잡소득으로 분류하고 있음
 - 이와 같이, 일본의 경우에는 어떠한 경우에도 근로소득으로는 분류하지 않고 있음

- 그러나, 우리나라의 경우에는 과거에는 기타소득으로 분류하였지만, 2016년 말 세법 개정을 통하여 근로소득으로 보고 있는 것
- 이는 직무발명 보상금의 성격을 제대로 이해하지 못하는 것으로서, 우리나라의 제도 개선에 있어서 시사하는 점이 큼

3. 직무발명 보상금 관련 소득세 과세제도의 법률적인 문제점

□ 직무발명 보상금 관련 소득 구분의 문제점

- 직무발명 보상금에 대하여 종래에는 기타소득으로 구분하면서 소득세를 비과세 하였으며, 대법원 또한 해당 소득이 기타소득으로서 비과세소득에 해당한다고 판결하였음
- 그런데 2016년 12월에 「소득세법」을 개정하여 근로소득으로 구분하되⁴⁵⁾, 퇴직한 후에 받는 직무발명 보상금에 한하여 기타소득으로 구분하도록 하고 있음⁴⁶⁾
- 그러나, 이러한 현행 「소득세법」의 소득 구분에 관한 규정은 다음과 같은 문제점 때문에 그 타당성을 인정할 수 없다고 할 것임

□ 소득 구분의 성격에서 본 문제점

- 현행법상 소득 구분별 특징
 - 현재 직무발명 보상금에 대하여는 원칙적으로 근로소득으로 구분하되, 퇴직한 후에 받는 직무발명 보상금에 한하여 기타소득으로 구분하고 있음
 - 본래 특정한 자산의 양도로 인하여 발생한 소득은 그 속성상 양도소득에 해당 하지만, 현행 「소득세법」이 양도소득의 과세 대상이 되는 자산을 토지 및 건물, 부동산에 관한 권리, 주식 등, 특정 시설물 등의 이용권 등과 영업권(토지 등과 함께 양도하는 것에 한한다)으로 한정하고 있기 때문에 특허권 등의 양도에 따른 직무발명 보상금은 양도소득에 해당할 여지가 없음

45) 「소득세법」 제20조 제1항 제5호.

46) 「소득세법」 제21조 제1항 제22호의2.



○ 직무발명 보상금의 법적 성격

- 「특허법」 제33조 제1항에서는 “발명을 한 사람 또는 그 승계인은 이 법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특허를 받을 수 있는 권리를 가진다. 다만, 특허청 직원 및 특허심판원 직원은 상속이나 유증(遺贈)의 경우를 제외하고는 재직 중 특허를 받을 수 없다.”고 규정함
- 이는 발명에 대하여 특허 등을 받을 권리가 그 종업원인 발명자에게 원시적으로 귀속된다는 것을 의미한다고 할 것임
- 「발명진흥법」은 사용자가 종업원으로부터 발명을 승계 취득하는 것을 전제로 하여 보상금 청구권을 규정하고 있기 때문에 종업원 등이 그 직무에 관하여 발명 활동을 함으로써 사용자 등의 업무 범위에 속하는 직무발명을 한 경우에는 그 직무발명에 대한 권리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발명자인 종업원이 원시 취득하는 것임
 - 이와 같이 종업원 등이 특허 등을 받을 권리를 원시 취득하고, 계약 또는 근무 규정 등에 따라서 사용자에게 특허 등을 받을 권리 또는 특허권 등을 승계 또는 양도하거나 그 전용실시권을 설정하고 받는 보상금은 권리의 양도 대가 또는 사용 대가에 해당함
- 뿐만 아니라 직무발명 보상금을 근로소득으로 보는 것은 「발명진흥법」에서 채택하고 있는 법정 보상 제도의 취지에 위배되는 것으로서 그 정당성을 인정할 수 없다고 할 것임
 - 즉, 우리나라는 직무발명에 대한 권리를 승계한 경우에는 정당한 보상을 하도록 하는 법정 보상 제도를 채택하고 있는데, 그 이유는 선진국에 비하여 종업원이 고용 계약의 체결 시 보상 문제 등에 대하여 대등한 교섭력을 확보하고 있지 못하며, 사용자 등은 직무발명을 급여에 대한 반대 급부로 종업원의 노무의 산물이라는 인식이 아직 만연되어 있는 등 직무발명 제도에 대한 인식이 부족하기 때문임⁴⁷⁾
- 이와 같이, 직무발명 보상금은 급여와는 전혀 다른 성질의 소득임에도 불구하고, 근로소득으로 구분하는 것은 그 정당성을 인정할 수 없다고 할 것임

47) 손승우, 「지식재산권법의 이해」, 도서출판 동방문화사, 2017, p.241.

○ 직무발명 보상금의 특정 연도 편중성

- 직무발명 보상금은 특정 연도에 일시적으로 편중하여 수령하는 경우가 일반적이므로 현재와 같은 급격한 소득세 누진세율 구조 아래에서는 세부담의 누진적인 증가를 가져오는 문제가 있음
- 즉, 직무발명 보상금은 통상적 또는 정상적인 근로소득과는 달리 임시소득 또는 변동소득의 성격을 지니고 있는데, 임시소득이나 변동소득에 대하여는 일반적인 소득과는 달리 평균과세 장치를 도입하고 있음
- 일본은 변동소득과 임시소득에 대하여 평균과세를 허용하고 있음
 - 즉, 변동소득과 임시소득의 합계액이 그 소득 금액의 20% 이상인 때에는 평균과세가 적용됨⁴⁸⁾
 - 변동소득에는 원고료 또는 작곡료에 의한 소득과 저작권의 사용료에 관계되는 소득, 그 밖의 소득으로서 매년 변동이 현저한 것을 말하며, 임시소득이란 3년 이상의 기간에 걸쳐서 일정한 역무를 제공하기로 약정하고 일시적으로 받는 전속계약금으로서 연간 보수의 2배 이상인 것, 3년 이상의 기간에 걸쳐서 부동산 및 공업 소유권 등을 타인으로 하여금 사용하게 하는 계약을 체결하고, 일시적으로 받는 권리금 등으로서 연간 자산의 사용료의 2배 이상인 것, 휴업 보상으로서 받는 보상금·재해 보상금 등을 말함
 - 평균과세의 방법은 임시소득과 변동소득의 합계액의 20%만을 다른 소득과 합산하여 종합과세하고, 그 평균세율에 의하여 나머지 임시소득 등(임시 소득과 변동 소득의 합계액의 80%에 상당하는 금액)에 대한 세액을 산정하도록 하고 있음
- 독일의 경우에는 임시소득(außerordentliche Einkünfte)에 대하여 평균과세 장치에 의하지 아니하고 경감세율을 적용함으로써 누진세율 구조로 인한 모순을 완화하고 있음
 - 즉, 과세소득 중에 임시소득이 포함되어 있는 경우에는 납세 의무자의 신청에 의하여 경감세율을 적용하는데, 경감세율은 이중과세 방지 조약에 의하여 소득세가 비과세되는 국외소득을 더한 과세 표준을 기초로 세액을 계산할 경우에 산출되는 평균세율의 50%로 하고 있음⁴⁹⁾

48) 日本「所得稅法」第2條 第1項.

49) Einkommensteuergesetz(EStG) §34.



- 우리나라의 경우에는 직장 공제회 초과 반환금 및 퇴직소득에 있어서 평균 과세장치를 도입하고 있음
 - 직장 공제회 초과 반환금에 대하여는 그 초과 반환금에서 초과 반환금의 40%에 해당하는 금액과 불입 연수에 따른 일정한 공제액의 합계액을 차감한 금액에 대하여 연분연승법(年分年乘法)에 의하여 세액을 산출함⁵⁰⁾
 - 퇴직소득은 연분 연승법을 12년 단위로 환산하여 세액을 산출함⁵¹⁾
 - 양도소득에 대해서는 평균과세의 방법에 의하지 아니하고 장기 보유 특별 공제 및 양도소득 기본 공제, 장기 보유 자산에 대한 상대적으로 낮은 세율의 적용 등에 의하여 누진과세로 인한 결집 효과를 완화하고 있음

○ 소득 구분의 성격상 문제점

- 직무발명 보상은 사용자에게 특허 등을 받을 권리 또는 특허권 등을 승계 또는 양도하거나 그 전용실시권을 설정하고 받는 대가인데, 자산이나 권리의 일회적·비사업적인 양도 또는 대여로 인한 소득, 복권 당첨 금품, 승마 투표권의 구매자가 받는 환급금, 위약금 및 배상금, 유실물 습득 보상금, 재산권에 관한 알선 수수료와 사례금 등과 같이 일시적·우발적으로 발생한 소득들로 이루어져 있는 기타소득의 성격을 지니고 있음
- 더군다나 사용자에게 특허 등을 받을 권리 또는 특허권 등을 승계 또는 양도하거나 그 전용실시권을 설정하고 받는 대가로서의 직무발명 보상의 성격이 근로소득과는 동떨어진 것임은 의문의 여지가 없음
- 뿐만 아니라 직무발명 보상은 특정 연도에 일시적으로 편중하여 발생하는 임시소득 또는 변동소득의 성격을 지니고 있음
- 이처럼 일시적이고 임시적으로 발생하여 변동성이 큰 직무발명 보상을 근로소득으로 구분하여 과세하는 것은 타당하지 않음

50) 「소득세법」 제63조.

51) 「소득세법」 제55조 제2항. 퇴직소득의 경우에는 해당 과세기간의 퇴직소득과세표준에 종합소득세율을 적용하고, 이와 같이 산출한 금액을 12로 나눈 금액에 근속연수를 곱한 금액의 퇴직소득 산출세액으로 한다.

□ 다른 지식재산권의 양도 또는 대여로 인한 소득과의 차별적 취급

종업원 등이 받는 직무발명 보상금을 근로소득으로 구분하여 소득세를 과세하는 것은 동일한 성격의 소득에 대하여 기타소득으로 구분하여 소득세를 과세하는 특허권을 비롯한 지식재산권의 양도 또는 대여로 인한 소득이나 퇴직한 후에 받는 직무발명 보상금 등에 비추어 볼 때 자의적인 차별과세에 해당함

○ 다른 지식재산권의 양도 또는 대여로 인한 소득에 대한 과세상 취급

- 다른 지식재산권의 양도 또는 대여로 인한 소득 구분

- 지식재산권은 산업 발전을 목적으로 하는 산업재산권과 저작권 및 정보 통신 기술의 발전에 따라 새롭게 등장한 신지식재산권으로 구분할 수 있음
- 산업재산권은 특허권, 실용신안권, 상표권 및 디자인권을 말하며, 저작권은 저작인격권과 저작재산권으로 분류할 수 있음
- 신지식재산권은 산업저작권, 첨단산업재산권 및 정보산업재산권 등으로 분류할 수 있음⁵²⁾
- 이와 같은 지식재산권의 양도 또는 대여로 인한 소득은 그 속성상 기타소득에 해당하며, 현행 「소득세법」은 산업재산권·산업정보, 산업상 비밀 및 상표권 등을 양도하거나 대여하고 그 대가로 받는 금품에 대하여 기타소득으로 구분하고 있음⁵³⁾
- 위에서 산업재산권이란 「특허법」·「실용신안법」·「디자인보호법」 또는 「상표법」에 따라 등록된 특허권, 실용신안권, 디자인권 및 상표권을 말하는데,⁵⁴⁾ 직무발명 또한 특허·실용신안등록이나 디자인등록(이하 “특허 등”이라 한다)을 받았거나 그 특허 등을 받을 수 있는 권리이므로 바로 산업재산권에 해당하는 것임

- 퇴직한 후의 보상금의 소득 구분

- 종업원 등이 재직 중에 받는 직무발명 보상금은 근로소득으로 구분하지만, 퇴직한 후에 받는 직무발명 보상금은 기타소득으로 구분함

52) 이러한 지식재산권의 종류에 대한 구체적인 내용은 (김정완·김원준, 「지식재산권법」, 전남대학교출판부, 2013, pp.9-11)의 내용을 참조하기 바란다.

53) 「소득세법」 제21조 제1항 제7호.

54) 「발명진흥법」 제2조 제4호.



- 즉, 동일한 소득에 대하여 근무 관계의 유지 여부에 따라 세부담에 현저한 차이를 가져오는 소득의 구분 변경(근로소득에서 기타소득으로의 구분 변경)을 가져오도록 규정한 소득세법의 규정은 정당성이 없음
- 종업원 등 또는 대학의 교직원이 퇴직한 후에 지급받는 직무발명 보상금이라고 하여 재직 중에 받는 직무발명 보상금과 그 성격이나 담세력에 있어서 차이가 있는 것이 아니기 때문임
- 종업원 등이 사용자 등으로부터 받는 직무발명 보상금은 그 종업원 등의 퇴직 여부에 관계없이 동일한 소득으로 구분하는 것이 타당함
- 종업원 등이 퇴직한 후에 사용자 등으로부터 받는 직무발명 보상금을 근로 소득으로 보는 것은 문제가 있으며, 직무발명 보상금의 성격이 급여 등과 같은 근로소득의 성격과는 현격한 차이가 있기 때문에,
- 종업원 등이 사용자 등으로부터 받는 직무발명 보상금은 그 종업원 등의 퇴직 여부에 관계없이 동일한 소득으로 구분하기 위해서는 직무발명 보상금을 기타 소득으로 구분하여야 함
- 종업원 등의 그 밖의 발명에 따른 소득 구분
 - 종업원 등의 직무발명이라 하더라도 사용자 등이 「중소기업기본법」 제2조에 따른 중소기업이 아닌 기업인 경우 종업원 등과의 협의를 거쳐 미리 다음 중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계약 또는 근무 규정을 체결 또는 작성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그 특허 등을 받을 수 있는 권리나 특허권 등을 승계하거나 전용 실시권을 설정할 수 없음⁵⁵⁾
 - 종업원 등의 직무발명에 대하여 사용자 등에게 특허 등을 받을 수 있는 권리나 특허권 등을 승계시키는 계약 또는 근무 규정
 - 종업원 등의 직무발명에 대하여 사용자 등을 위하여 전용실시권을 설정 하도록 하는 계약 또는 근무 규정
 - 이 경우 종업원 등의 직무발명은 「발명진흥법」 제2조 제2호에 따른 직무 발명이 아니므로 종업원 등이 그 특허권 등을 양도하거나 전용실시권을 설정 한다고 하더라도 「소득세법」 제20조 제1항 제5호에서 정하는 근로소득에는 해당한다고 보기는 어려움

55) 「발명진흥법」 제10조 제1항 단서.

- 그리고, 사업자 등이 통지기간 안에 승계 여부를 알리지 아니한 경우에는 사용자 등은 그 발명에 대한 권리의 승계를 포기한 것으로 봄⁵⁶⁾
- 위와 같은 경우에는 종업원 등이 사용자 등 외의 타인에게 그 특허권 등을 양도하거나 전용실시권을 설정할 수 있는데, 해당 소득 또한 근로소득에 해당할 여지가 없음
- 한편, 직무발명 외의 종업원 등의 발명에 대하여 그 특허권 등을 양도하거나 전용실시권을 설정한다면 해당 소득은 근로소득에 해당한다고 할 수 없음
- 왜냐하면 직무발명 외의 종업원 등의 발명에 대하여 미리 사용자 등에게 특허권을 받을 수 있는 권리나 특허권 등을 승계시키거나 사용자 등을 위하여 전용실시권을 설정하도록 하는 계약이나 근무 규정의 조항은 무효이며, 따라서 「발명진흥법」 제2조 제2호의 직무발명이 아니기 때문
- 종업원 등의 직무발명과 그 실질이 동일하다고 하더라도 「발명진흥법」 제2조 제2호의 직무발명에 대한 보상금은 근로소득으로, 그 밖의 특허권 등의 양도 또는 대여로 인한 소득은 기타소득으로 과세함으로서 동일한 담세력에 대하여 서로 다른 크기의 소득세를 부담시키고 있는 것임

□ 동일한 소득에 따른 합리적 사유 없는 자의적 차별

- 헌법재판소는 평등권의 정당성 심사와 관련하여 자의금지(Willkürverbot) 원칙에 따른 자의성 심사⁵⁷⁾와 비례의 원칙(Verhältnismäßigkeit)에 따른 비례성 심사⁵⁸⁾의 두 기준에 의하여 위헌 여부를 심사하고 있음⁵⁹⁾
 - 헌법재판소가 심사 밀도(엄격한 심사 또는 완화된 심사)를 결정하는 기준은 입법자에게 인정되는 형성권의 정도인데⁶⁰⁾, 「헌법」이 스스로 차별 금지 조항을 통하여 직접 평등권을 구체화하고 있거나 또는 법률에 의한 차별 대우가 자유권에 영향을 미침으로써 평등권의 내용이 자유권을 통하여 구체화 될 수 있는 경우, 입법자의 형성권은 축소되고, 이에 따라 보다 엄격한 심사가 요청됨⁶¹⁾

56) 「발명진흥법」 제13조 제3항.

57) 자의성 심사를 완화된 평등심사라 한다(헌법재판소 2014.8.28. 2013헌바119).

58) 비례성 심사를 엄격한 평등심사라 한다.

59) 황치연, “헌법재판의 심사기준”, 「헌법재판연구」 제12권, 한국헌법판례연구회, 2011, pp.193-195.

60) 한수웅, 「헌법학」 제6판, 법문사, 2016, p.583; 정태호, “헌법재판소 평등권 심사기준의 재정립 필요성”, 「헌법학연구」 제19권 제3호, 한국헌법학회, 2013, p.86.

61) 정종섭, 「헌법학원론」 제5판, 박영사, 2010, p.441.



- 종업원 등의 직무발명 보상금과 산업재산권 등의 양도 또는 대여로 인한 소득 간의 세제상의 차별 금지는 「헌법」이 스스로 차별 금지 조항을 통하여 직접 평등권을 구체화하고 있는 경우는 아님
 - 그러므로 이 연구에서는 자의성 심사를 통하여 「소득세법」 제20조 제1항 제5호의 위헌 여부를 검토하고자 함
- 직무발명 보상금과 산업재산권 등의 양도 등으로 인한 소득 간의 조세 부담의 차이 존재 여부
- 현행법상 근로소득에 해당하는지, 아니면 기타소득에 해당하는지에 따라서 부담하는 소득세의 크기에 현저한 차이가 발생하게 됨
 - 근로소득의 경우에는 총급여액에서 근로소득 공제를 적용하여 근로소득 금액을 산정하고, 기타소득 금액의 경우에는 해당 과세 기간의 총수입 금액에서 이에 사용된 필요경비를 공제한 금액으로 하기 때문⁶²⁾
 - 기타소득 중 산업재산권 등의 양도 대가와 원작자의 원고료 등에 대하여는 총수입 금액의 60%를 필요경비로 인정하고 있음⁶³⁾
 - 직무발명 보상금이 근로소득에 해당하는 경우 근로자 등의 급여 등(직무발명 보상금을 제외한다)의 합계액이 4천 5백만 원을 초과하면 그 초과하는 금액의 5%에 상당하는 금액이, 그리고 1억 원을 초과하면 그 초과하는 금액의 2%에 상당하는 금액이 근로소득 공제로서 공제받을 수 있을 뿐
 - 이에 비하여 직무발명 보상금이 기타소득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근로자 등의 급여 등(직무발명 보상금을 제외한다)의 합계액의 다과에 관계없이 그 직무발명 보상금의 60%에 상당하는 금액을 필요경비로서 공제하는 것
 - 예를 들면, 급여 등(직무발명 보상금을 제외한다)의 합계액이 5천만 원인 종업원의 직무발명 보상금이 2억 원이라면, 근로소득인 경우에 종합소득 금액(근로소득금액)은 232,250,000원이지만, 기타소득인 경우에 종합소득 금액(근로소득금액과 기타소득금액의 합계액)은 115,250,000원에 지나지 않게 됨⁶⁴⁾

62) 「소득세법」 제21조 제2항.

63) 「소득세법」 제37조 제2항 제2호 및 「소득세법」 시행령 제87조 제1호 나목.

64) 근로소득금액은 35,250,000원이고, 기타소득금액은 80,000,000원이다.

- 위에서 본 바와 같이 직무발명 보상금이 근로소득에 해당하는지, 아니면 기타 소득에 해당하는지에 따라서 부담하는 소득세의 크기에 현저한 차이가 발생하는 것임

○ 직무발명 보상금에 대한 차별 대우의 정당성 심사

- 자의 금지 원칙이란 본질적으로 같은 것을 자의적으로 다르게, 본질적으로 다른 것을 자의적으로 같게 취급하여서는 안 된다는 원칙이며, 자의적이란 차별을 정당화하는 합리적 이유의 결여를 의미함⁶⁵⁾
- 그러므로 어떤 차별이 그 차별을 정당화하는 객관적이고 합리적인 관점이 존재한다면 자의적이 아닌 것으로 판단됨
- 차별을 정당화하는 합리적인 이유로 고려되는 관점은, 크게 비교 대상 간에 존재하는 사실상의 차이와 입법자가 차별 대우를 통하여 달성하려고 하는 입법 목적으로 나누어 볼 수 있음
 - 입법자가 특허권 등의 양도 또는 대여로 인한 소득과는 달리 직무발명 보상금에 대하여 소득세를 중과세함으로써 달성하고자 하는 차별 목적을 찾아볼 수 없음
 - 오히려 특허권 등의 양도 또는 대여로 인한 소득에 대한 과세보다 직무발명 보상금에 대한 과세를 완화하는 것이 소득의 성격이나 직무발명 보상제도의 취지에 부합한다고 할 수 있음
- 그렇다면, 종업원 등의 직무발명 보상금에 대하여 일반 특허권 등의 양도 또는 대여로 인하여 발생한 소득보다 소득세의 부담을 무겁게 지우도록 하고 있는 현행 「소득세법」 제21조 제1항 제5호는 자의적 차별임
- 본질이 일반 특허권 등의 양도 또는 대여로 인한 소득 등과 전적으로 동일한 종업원 등의 직무발명 보상금과의 소득세의 차별적 취급은 이를 정당화할 객관적이고 합리적인 이유가 존재하지 않으며, 따라서 「헌법」 제11조의 평등권 내지 조세 평등주의에 위반된다고 할 수 있음

65) 한수웅, 앞의 책, p.577; 계획열, 「헌법학」(중), 박영사, 2000, p.212.



IV

직무발명 보상 조세제도의 개선 방안





IV

직무발명 보상 조세제도의 개선 방안

1. 직무발명 보상 조세제도의 개선 필요성

□ 효과적인 지식 재산 창출을 위한 정책 지원의 필요성

○ 특허청의 2018년도 지식 재산 활동 실태 조사에 따르면, 효과적인 지식 재산 창출을 위해서는 다음과 같은 지원을 필요로 하고 있음⁶⁶⁾

- 기업의 경우, 효과적인 지식 재산 창출을 위해 ‘직무발명 보상제도 실시 기업에 대한 세제 혜택 부여 및 관련 규정의 정비 지원’이 필요하다고 인식하고 있는 기업의 비중이 59.8%로 가장 높게 나타났음
 - 대기업, 중견기업, 중소기업에 모두 가장 높은 필요도를 나타내고 있음
 - 특허, 실용 신안 출원 기업의 49.3%만이 직무발명 보상제도에 대해 인식하고 있다고 응답했으며, 대기업(79.4%)에 비해 중소기업(44.3%)의 인식 수준이 매우 낮음
 - 따라서 중소·중견기업이 직무발명 보상 규정을 도입할 수 있도록 제도 개요 및 세제 혜택에 대한 지속적 안내와 홍보를 통해 직무발명에 대한 정당한 승계와 보상 문화를 정착시킬 필요가 있음
- 대학 및 공공(연)에서는 효과적인 지식 재산 창출을 위해 ‘연구자 등을 대상으로 한 지식재산권 관련 교육 지원’이 필요하다고 응답한 비율은 전체의 67.9%로 가장 높게 나타남
- 다만, 대학에 비하여 공공(연)에서는 ‘다양한 기술 분야에 대한 특허맵 구축 지원’ 다음으로 ‘직무발명 보상제도를 도입하거나 보상 수준을 확대할 수 있도록 지원’의 필요성이 요구되고 있음

66) 특허청, (2018년도) 지식재산활동 실태조사, 2018

2. 직무발명 보상 소득세 과세제도의 개선 방안

□ 직무발명 보상금의 소득 구분 개선 방안

- 직무발명 보상금은 종업원 등의 퇴직 여부와 관계없이 모두 기타소득으로 구분하는 것이 타당함
 - 직무발명 보상금의 소득 구분의 문제점에서 살펴본 바와 같이, 직무발명 보상금의 법적 성격과 다른 지식재산권과의 과세 형평성 및 「발명진흥법」의 취지 등에 비추어 보아 직무발명 보상금을 근로소득으로 구분하고 있는 현행 규정은 그 정당성이 없음
- 우리나라의 경우에는 발명자주의를 채택하고 있기 때문에 직무발명으로 특허 등을 받을 수 있는 권리 또는 직무발명에 따라 출원되어 등록된 특허권 등의 경우에는 종업원에게 귀속됨
 - 「발명진흥법」 제15조에 따른 직무발명 보상금이란 종업원 등이 직무발명을 사용자 등에게 승계시키는 것에 대한 보상 차원에서 지급되는 것임
 - 즉, 종업원 등에게 원시적으로 귀속된 후에 사용자 등에게 승계시키면서 보상차원으로 지급받는 것이 직무발명 보상금이라고 할 수 있음
 - 직무발명 보상금의 성격을 이와 같이 본다면 직무발명 보상금은 「소득세법」상 양도소득 또는 기타소득에 해당할 것임
 - 양도소득의 경우에는 과세 대상을 부동산과 주식 등으로 한정하고 있기 때문에 양도소득세의 과세 대상으로 보기 어려우며, 직무발명 보상금의 경우에는 그 특성상 취득가액 자체가 존재하기 힘든 구조상 수입 금액의 일정한 비율을 필요경비로 공제하는 기타소득으로 분류하는 것이 타당함
- 직무발명은 매우 이례적이거나 일시적으로 발생하는 사건임
 - 매우 이례적이고 일시적인 소득을 근로소득으로 과세하는 것은 근로소득의 성격에 맞지 않는 것으로서 그 정당성을 인정할 수 없음
 - 현행 「소득세법」상 소득의 종류인 이자소득, 배당소득, 사업소득, 근로소득, 연금소득, 기타소득, 퇴직소득 및 양도소득 중에서 일시적인 소득으로서의



성격이 강한 것은 기타소득과 양도소득인데, 이 중에서 기타소득으로 분류하는 것이 타당함

- 지식재산권 등과의 과세 형평성 차원에서도 직무발명 보상금에 대하여는 기타 소득으로 과세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할 것임
 - 즉, 「발명진흥법」상 직무발명 보상제도의 본질과 「소득세법」 제21조에서 지식재산권 등에서 발생하는 소득 등을 기타소득으로 분류하고 있는 점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직무발명 보상금은 기타소득으로 분류하여 과세하는 것이 바람직함
- 퇴직한 후에 지급받는 직무발명 보상금은 거의 대부분 소송 등을 통하여 받는 경우임
 - 이러한 소득에 대하여는 기타소득으로 과세하고, 근무 중에 지급받는 경우에는 근로소득으로 과세하는 것은 근로자에게 더 불리하게 취급하는 것이 되어 불합리한 결과를 초래한다고 할 것임
- 직무발명 보상금의 지급 방식이라는 우연한 사실에 따라서 소득의 구분을 정하는 것은 소득세의 기본 논리에 맞지 않는 것으로서 그 정당성을 인정할 수 없다고 할 것임
 - 2016년 12월 「소득세법」의 개정 이전에 과세 관청에서 직무발명 보상금이 기타소득이 아니라 근로소득에 해당한다고 판단한 주요한 근거는 직무발명 보상금의 지급방식이 여러 번에 걸쳐서 지급되기 때문이었음
 - 그러나, 앞에서 설명한 바와 같이 직무발명 보상금의 경우에는 그 지급방식을 1회 지급할 것인지 또는 계속적·반복적으로 지급할 것인지는 사용자 등의 자금 사정 등에 따라서 달라질 수 있는 것⁶⁷⁾
 - 직무발명 보상금의 실질적인 성격을 파악하지 아니한 채, 지급 방식이라는 형식적인 측면만 가지고 소득 구분을 판단하는 것은 정당성을 인정할 근거가 없음⁶⁸⁾

67) 연예인 및 직업 운동 선수 등이 사업 활동과 관련하여 받는 전속 계약금의 경우에는 1회 지급받지만, 그 성격상 사업소득으로 분류하고 있다. 이와 관련된 소득 구분의 경계 및 판례 등에 대한 구체적인 내용은(김완석·정지선, 「소득세법론」, 삼일인포마인, 2018, pp.206-207)의 내용을 참조하기 바란다.

- 일본의 경우에도 직무와 연관된 연구 결과가 고안 등이 실시된 후에 그 실적 등에 따라서 계속적으로 대가를 지급받는 경우에도 근로소득이나 사업소득이 아닌 잡소득(雜所得)으로 과세하도록 하고 있음⁶⁹⁾
- 대학의 교수는 「산업교육진흥 및 산학협력촉진에 관한 법률」 제25조에 따른 산학협력단과는 고용 관계가 없는데, 이와 같이 고용 관계가 없는 산학협력단으로부터 지급받는 보상에 대하여 근로소득으로 과세하는 것은 그 정당성을 인정할 수 없음
- 즉, 대학의 경우 종업원은 교직원이며, 실제 사용자는 대학(총장)으로, 별도의 법인인 산학협력단과 교직원은 사용자와 종업원 관계가 성립되지 않기 때문에 산학협력단이 발명자인 교직원에게 지급하는 보상의 경우에는 기타소득으로 과세하는 것이 타당함⁷⁰⁾
- 직무발명 보상금과 일반적인 근로소득과의 성격 차이로 인하여 근로소득으로 과세하는 것은 불합리함
- 근로소득은 일반적인 급여와 상여금 등으로 구분할 수 있는데, 직무발명 보상금은 기본적으로 일반적인 급여와는 그 성격이 매우 상이함
- 상여금과 비슷하기 때문에 근로소득으로 과세하여야 한다는 견해가 있는데, 직무발명 보상금과 상여금은 그 성격이 매우 상이하기 때문에 직무발명 보상금을 근로소득으로 과세하는 것은 그 정당성을 인정할 수 없다고 할 것임
- 왜냐하면, 상여금의 경우에는 종업원 등의 개인적인 성과에 대하여 지급하기 보다는 회사 전체의 성과에 대하여 지급하는 것인데 반하여, 직무발명 보상금의 경우에는 그 종업원 등의 개인적인 성과에 대하여 지급하는 것이기 때문임

68) 발명에 기여한 사람이 받은 직무발명 보상금의 경우에는 사내 직무발명 규정 등에 따라서 객관적이고 합리적으로 가치가 산정되어 지급되었다면 지급 시기와 횟수 등 지급 방식 등은 소득 분류를 좌우하지 못하는 것이다(정승영, “직무발명 보상금의 과세 문제에 관한 연구”, 「조세법연구」 제22권 제2호, 한국세법학회, 2016.8, p.165).

69) 日本 所得稅 基本通達 23-35共-1(1)~(3).

70) 한편, A 대학에서 (가)의 발명에 대한 직무발명 보상금을 수령하던 연구자인 甲이 퇴직한 후, B 대학으로 이직하여 (나) 발명에 대한 직무발명 보상금을 수령하는 경우를 가정하여 보자. 이 경우, A 대학에서 연구자인 갑에게 (가) 발명에 대한 보상금은 근로소득으로 처리하고, 퇴직한 후에는 (가) 발명에 대한 보상금을 기타소득으로 처리하는 것이다. 그리고, B 대학에서 (나) 발명에 대한 직무발명 보상금에 대하여는 근로소득으로 처리하는 것이다. 이와 같이, 甲의 경우에는 실질적으로 동일한 활동을 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각각 근로소득 또는 기타소득으로 과세되게 되는데, 이는 그 정당성을 인정할 수 없다고 할 것이다.



□ 기타소득 구분 시 필요경비

○ 직무발명 보상금을 기타소득으로 구분할 경우, 필요경비의 인정 여부

- 일정한 기타소득의 경우에는 필요경비로 확인된 금액에 한하여 인정하는 경우가 있고, 일정한 기타소득의 경우에는 60%와 같이 일정한 금액을 필요경비로 의제하여 주는 경우가 있음
- 직무발명 보상금의 경우에는 어느 부분으로 분류하는 것이 타당한지의 여부가 문제될 수 있음
- 특허권 등을 사용자가 아닌 제3자에게 양도할 경우 그 양도 대가는 같은 법 제21조 제1항 제7호⁷¹⁾에 따라 기타소득으로 구분되어 같은 법 시행령 제87조 제1의2호에 따라 금액 규모에 관계없이 60%의 필요경비를 인정받게 됨
- 따라서, 양도 대가가 일정 규모를 초과하는 경우 특허권 등을 사용자가 아닌 제3자에게 양도하여 기타소득으로 받는 것이 세제상 더 유리지게 되므로, 현행 세법은 직무발명 보상제도의 활성화를 오히려 저해하는 요인이 되고 있음⁷²⁾
- 이처럼 다른 지식재산권 등과의 과세형평을 위해서 60%를 필요경비로 의제하여 주는 것이 타당하다고 판단됨

□ 종합과세 여부

○ 현재 기타소득으로 과세되는 직무발명 보상금은 「소득세법」 제14조에 따라 무조건 종합과세됨

- 원천징수되는 대부분의 기타소득은 기타소득금액이 300만 원 초과인 경우 종합과세되고, 300만 원 이하인 경우 분리과세를 선택적으로 적용할 수 있도록 하는 조건부 과세 방식을 채택하고 있음

71) 소득세법 제21조(기타소득) ① 기타소득은 이자소득·배당소득·사업소득·근로소득·연금소득·퇴직소득 및 양도소득 외의 소득으로서 다음 각 호에서 규정하는 것으로 한다.

7. 광업권·어업권·산업재산권·산업정보, 산업상 비밀, 상표권·영업권(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점포 임차권을 포함한다), 토사석(土砂石)의 채취허가에 따른 권리, 지하수의 개발·이용권, 그 밖에 이와 유사한 자산이나 권리를 양도하거나 대여하고 그 대가로 받는 금품.

72) 특허권 등의 양도 대가를 X라고 할 때 사용자에게 양도하여 직무발명 보상금을 받으면 과세 대상 금액은 (X-500만 원), 제3자에게 양도하여 그 양도 대가가 기타소득으로 과세되면 과세 대상 금액은 (1-0.6)X가 됨. 과세 대상 금액이 동일 [X-500만 원 = (1-0.6)X] 해지는 X는 약 833만 원. 근로소득공제, 특별소득공제, 특별세액공제 등 종업원의 통상적인 근로소득에 적용되는 각종 공제는 고려하지 아니하였음.

- 뇌물, 알선수재 및 배임수재에 의하여 받는 금품, 계약금이 위약금·배상금으로 대체되는 경우에는 원천징수가 되지 않으므로 무조건 종합과세됨
- 기타소득에 해당하는 직무발명 보상은 원천징수되는 소득임에도 불구하고 조건부 과세 방식을 적용하지 않고 원천징수되지 않는 뇌물 등과 같이 무조건 종합과세가 되고 있음
- 이는 2016년 12월 정부가 직무발명 보상에 대한 과세 방식을 개정할 당시 조건부 과세 방식을 적용하는 기타소득을 열거한 「소득세법」 제14조 제3항 제8호 가목에 직무발명 보상을 나타내는 신설 조문인 「소득세법」 제21조 제1항 제22호의2를 열거하지 않아서 나타난 입법 오류로 판단됨
- 기타소득으로 과세되는 직무발명 보상의 과세 방식을 무조건 종합과세 방식에서 조건부 과세 방식으로 하는 것이 타당할 것임

□ 비과세 금액의 타당성 여부

- 2016년 「소득세법」이 개정되기 전에는 기타소득으로 분류하되, 그 금액 전체를 비과세 대상으로 하였는데, 2016년 「소득세법」의 개정으로 근로소득으로 분류하고, 비과세 금액을 300만 원으로 한정하였음
- 이와 같이 비과세 금액을 대폭 하향 조정한 것은 발명자의 직무발명의 창출 및 기술 개발 의욕을 저하시키고, 기업의 기술 사업화 활동을 위축시켜서 산학 협력 및 국가의 경쟁력을 약화시킬 수 있음
- 다음과 같은 근거로 직무발명 보상에 대한 비과세 금액을 대폭적으로 상향 조정할 필요가 있다고 할 것임
 - 2016년까지는 금액에 상관없이 전액을 비과세 대상으로 하였는데, 2017년부터 그 금액을 300만 원에 한정하여 비과세하다가 2019년부터는 500만 원까지 비과세하고 있음
 - 비과세 한도액을 300만 원으로 설정한 이유는 평균 지급 수준 등을 감안한 것으로, 보상의 형태 중에서 기술 실시 계약에 따른 실시 보상이 많음에도 불구하고 보상의 규모가 적은 등록 보상을 기준으로 산정한 것⁷³⁾

73) 기획재정부, 「2016년 세법개정 후속 시행령 개정」, 2016.12.28.



- 그러나, 국가 연구 개발 사업의 기술 이전에 따른 직무발명 보상금의 경우에는 평균적으로 3,000만 원 정도인 점을 고려하면 그 한도액이 매우 적게 설정된 것으로서 타당성을 인정할 수 없음
- 이러한 상황에서 2019년부터 비과세 한도를 500만 원으로 상향 조정하였음
- 직무발명 보상금은 종업원의 발명에 대한 보상인데, 「발명진흥법」에 정당한 보상을 지급받을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지만, 종업원과 기업의 관계 때문에 정당한 보상보다는 적게 받는 경우가 많을 것임
- 이와 같이, 그 보상금액이 정당한 금액보다 적은 경우가 많은데, 이에 추가적으로 그 직무발명 보상금 중 500만 원 초과분에 대하여 소득세를 과세하게 되면, 창의적인 연구 개발이 활발하게 이루어지기 힘들 것으로 판단됨
- 「산업교육진흥 및 산학협력촉진에 관한 법률」과 「기술의 이전 및 사업화 촉진에 관한 법률」은 연구의 생산성을 높이고 산학의 협력을 증진시키기 위해서 제정한 것인데, 동 법률의 취지에 맞게 비과세 대상 금액을 상향조정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할 것임
- 즉, 「산업교육진흥 및 산학협력촉진에 관한 법률」 제1조에서는 “산업교육을 진흥하고 산학협력(産學研協力)을 촉진하여 교육과 연구의 연계를 기반으로 산업사회의 요구에 따르는 창의적인 산업인력을 양성하며, 효율적인 연구개발체제를 구축하고, 나아가 산업발전에 필요한 새로운 지식·기술을 개발·보급·확산·사업화함으로써 지역사회와 국가의 발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고 규정하고 있으며,
- 「발명진흥법」 제1조에서는 “이 법은 발명을 장려하고 발명의 신속하고 효율적인 권리화와 사업화를 촉진함으로써 산업의 기술 경쟁력을 높이고 나아가 국민 경제 발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 「기술의 이전 및 사업화 촉진에 관한 법률」 제1조에서는 “이 법은 공공연구기관에서 개발된 기술이 민간부문으로 이전되어 사업화되는 것을 촉진하고, 민간부문에서 개발된 기술이 원활히 거래되고 사업화될 수 있도록 관련 시책을 수립·추진함으로써 산업 전반의 기술 경쟁력을 강화하여 국가 경제의 발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고 규정하고 있음

- 이러한 법률의 취지에 맞게 비과세 금액을 상향 조정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할 것임
- 발명이 사업화에 따라서 수익이 창출되면, 이러한 수익에 대하여 추가적으로 법인세 등을 부과할 수 있기 때문에 직무발명 자체에 대하여는 일정한 금액을 비과세하여도 국가 전체적인 입장에서는 세수 손실이 거의 없을 뿐만 아니라, 오히려 증가할 수도 있을 것임
 - 즉, 회사의 연구원이 개발에 참여하여 특허 출원을 하고, 이에 회사의 직무발명 보상 규정에 따라 특허 출원 시에 보상금을 받은 경우, 일반적으로 제품의 제조와 판매, 기술 이전 및 특허권의 라이선싱 등을 통하여 회사는 연구원에게 지급한 보상금보다 훨씬 많은 이익을 창출하게 될 것임
 - 이와 같이 창출된 이익에 대하여는 법인세를 과세할 수 있을 뿐만 아니라, 그 회사의 이익에 대하여 주주가 수령하게 되는 배당에 대한 소득세와 주식의 양도 차익에 대한 양도소득세 등 다양한 조세를 부과할 수 있을 것임
- 「발명진흥법」 제4조 및 제5조에서는 “정부는 발명 진흥을 위하여 예산의 범위에서 발명자와 그 승계인(承繼人), 발명의 연구나 진흥 사업을 수행하는 개인 또는 단체에게 보조금을 지급할 수 있으며, 정부는 국민에게 발명의 중요성을 인식시키고 발명 의욕을 북돋우기 위하여 매년 5월 19일을 발명의 날로 정하고 발명 진흥을 위한 기념행사를 개최한다”고 규정하고 있음
 - 이러한 규정의 취지에 비추어 보아도 비과세 금액을 상향조정할 필요가 있음
- 직무발명 보상제도를 통하여 연구개발투자와 시설 등을 제공한 사용자와 창조적인 노력을 제공하여 발명을 한 종업원 사이에 합리적인 이익배분을 함으로써 종업원의 개발의욕을 장려하고 기업은 이를 사업화에 활용함으로써 이윤을 창출하고 R&D에 재투자할 수 있으며, 궁극적으로는 국가의 산업발전에 이바지할 수 있음⁷⁴⁾
- 기업은 직무발명 보상에 대하여 출원·등록·실시 보상 등을 시행하고 있는데, 출원·등록 보상은 건당 일정금액의 보상을 시행하고 있으며, 실시 보상은 기준 금액에 일정한 비율만큼을 보상하고 있음

74) 손승우, 「지식재산권법의 이해」, 도서출판 동방문화사, 2017, p.242.



- 「2016년 직무발명 보상제도 운영 우수사례집(통계청)」에 소개된 기업 가운데 실시 보상을 시행하는 기업을 중심으로 살펴보면, (주)이엔에프테크놀로지는 영업이익의 1~5%(연 최대 1억 원, 3년간 보상), 그린루브 주식회사는 기준금액(순이익×당해 제품에서 직무발명의 이용률)의 2~3%, 파워테크 주식 회사는 공헌이익의 50% 등의 방식으로 지급하고 있음
- 따라서 실시 보상만 가지고 보더라도 영업이익 등의 기준금액의 크기에 따라 직무발명 보상금의 지급 규모는 현행 비과세 한도인 500만 원보다 훨씬 커질 수 있음
- 한편, 대학의 경우에는 실시 보상만을 시행하고 있으며, 서울대학교는 기술 이전을 통해 실시료가 발생하면 지식재산권리화 비용과 기술 이전 관련 비용을 선공제한 후 남은 실시료 수익금액에서 발명자 보상금을 지급하고, 나머지는 산학협력단으로 배분하고 있음
- 이때 발명자 보상금은 수익금을 기준으로 다음과 같이 계산한 금액에서 이미 지급한 금액을 공제한 금액을 지급함⁷⁵⁾
 - 수익금이 2,000만 원 이하인 경우, 그 수익금의 100%
 - 수익금이 2,000만 원을 초과하고 1억 원 이하인 경우, 2,000만 원에 2,000만 원을 초과하는 부분의 90%를 합한 금액
 - 수익금이 1억 원을 초과하고 5억 원 이하인 경우에는 9,200만 원에 1억 원을 초과하는 부분의 80%를 모두 합한 금액
 - 수익금이 5억 원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4억1,200만 원에 5억 원을 초과하는 부분의 70%를 모두 합한 금액(단, 2014.1.1. 이후 발생하는 실시료에 한하여 적용)
- 이와 같이, 기업과 대학의 직무발명 보상 중 출원 및 등록보상은 일정액으로 지급되지만, 실시 보상은 직무발명을 통한 공헌도에 따라 그 금액이 천차만별로 커질 수 있기 때문에 비과세 혜택의 범위도 실시 보상 지급 규모를 고려하여 설정되어야 할 필요가 있음

75) 「서울대학교 실시료 분배 지침」 제3조 및 제4조

- 현재의 비과세 금액인 500만 원은 너무 미미하기 때문에 비과세 금액을 대폭적으로 상향조정하는 것이 필요함
 - 이 경우 구체적으로 어떻게 하는 것이 바람직한지의 여부가 문제인데, 직무발명 보상금에 대한 급격한 세부담의 증가를 방지하기 위하여 직무발명 보상금의 50%에 상당하는 금액을 비과세하되, 다음과 같은 점을 고려하여 그 금액이 3,000만 원에 미달하는 경우에는 직무발명 보상금의 전액을 비과세하는 것이 가장 바람직하다고 할 것임
 - 국가 연구 개발 사업의 기술 이전에 따른 직무발명 보상금의 평균이 3,000만 원 정도에 해당하고, 과거 기타소득으로 그 전액을 비과세 대상으로 하였는데, 급격한 세부담의 증가를 초래하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기 때문에 그 금액이 3,000만 원에 미달하는 경우에는 그 전액을 비과세하는 것을 바람직하다고 할 것임

3. 직무발명 보상제도 과세 체계 개선이 경제 발전에 미치는 영향

□ 직무발명 보상제도 개선안에 따른 세수 효과

- 이상에서 논의한 직무발명 보상제도 과세 체계의 개선 방안을 요약하면 다음과 같음
 - 직무발명 보상금은 종업원 등의 퇴직 여부와 관계없이 모두 기타소득으로 구분하는 것이 타당함
 - 기타소득의 필요경비는 60%로 의제하고, 조건부 종합과세로 전환하여야 함
 - 기타소득의 비과세 한도는 직무발명 보상금의 50%에 상당하는 금액을 비과세하되, 그 금액이 3,000만 원에 미달하는 경우에는 전액을 비과세하는 방안을 제시하였음
- 이러한 개선안을 반영하는 경우 예상되는 세수 효과는 다음과 같음
 - 퇴직 전 수령한 직무발명 보상금의 경우 근로소득에서 기타소득으로 소득구분이 변경되게 됨



- 근로소득으로 구분되는 경우: 해당 직무발명 보상금에서 근로소득 공제를 차감한 금액이 기존 급여와 합산되어 근로소득 금액을 구성하게 됨(보다 높은 누진세율 구간이 적용됨)
- 기타소득으로 구분되는 경우: 해당 직무발명 보상금에서 필요경비(60%)를 차감한 금액(40%)이 기타소득 금액이 되고, 다른 소득과 종합과세 여부는 기타소득 금액이 300만 원을 초과하는지 여부에 따라서 달라지게 됨(적용 세율이 달라짐)
- 퇴직 후 수령한 직무발명 보상금의 경우 소득 구분은 기타소득으로 동일하지만, 비과세 한도의 차이로 인하여 세부담은 줄어들게 됨
- 또한 과거와 같이 양도 대가의 크기에 따라서 특허권 등을 사용자가 아닌 제3자에게 양도하여 기타소득으로 받는 것이 세제상 더 유리해지는 불합리한 상황이 없어질 것임

○ 관련 세수 변화

- 이러한 개정으로 인한 소득 세수 감소 효과는 사실상 정확하게 파악하기는 힘든 실정임
- 직무발명 보상금 비과세를 핵심으로 하는 소득세법 일부 개정 법률안(의안번호 10159, 김정진 의원 등 10인, 2017.11.14.)에 대한 국회예산정책처의 비용 추계서 역시 다음과 같이 그 추계가 불가능한 사유를 밝히고 있음⁷⁶⁾
 - 본 개정안의 추계를 위해서는 직무발명 보상금 수령 인원 및 그들의 과세 정보, 직무발명 보상금 지급 규모 등에 대한 구체적인 정보가 필요하나, 이에 대한 정보를 알 수가 없어 현 시점에서 합리적인 추계가 곤란함
 - 직무발명 보상금에 대한 과세가 2017년부터 시행됨에 따라 이에 대한 과세 정보가 아직 축적되지 않았고, 직무발명 관련 업무를 담당하고 있는 통계청에서도 직무발명 보상금을 받는 인원이나 보상 규모 등에 대한 통계 자료를 가지고 있지 않음
- 따라서 구체적으로 비과세 한도가 증가함에 따른 소득세 세수 손실이 얼마나 되는지를 파악할 방법은 현실적으로 없음

76) 국회예산정책처, 비용추계서 미첨부 사유서, 「소득세법 일부개정법률안」의 비용추계 의뢰에 대한 회답 - 직무발명 보상금 비과세, 2017.11.16.

- 논리적으로는 다음과 같은 과정을 통하여 그 효과를 유추할 수 있음
 - 개선 방안에 따르면, 직무발명 보상금에 대하여 비과세 한도를 증가시키고 기타소득으로 구분함으로서
 - 발명자의 직무발명 창출 및 기술 개발 의욕을 제고하여 직무발명 보상금의 활성화를 통하여
 - 다양한 발명이 사업화됨에 따라서 우리나라 기술의 국제 경쟁력이 강화될 것임
 - 해당 기업이 보상금 지급액의 20~30%의 연구 및 인력 개발 세액 공제를 받더라 하더라도
 - 신성장 동력을 갖춘 기업의 소득 증가의 파급 효과로 오히려 국가 전체의 세수를 증대시키는 효과가 있을 것임
 - 이와 같이 창출된 이익에 대하여는 법인세를 과세할 수 있을 뿐만 아니라, 그 회사의 이익에 대하여 주주가 수령하게 되는 배당에 대한 소득세와 주식의 양도차익에 대한 양도소득세 등 다양한 조세를 부과할 수 있을 것임

□ 경제적 파급 효과 분석

- 비과세 한도 조정은 세수 추계와 마찬가지로 이유로, 경제적 파급 효과를 정확하게 분석하는 것은 불가능함
- 다만, 대학의 경우에는 다음과 같은 파급 효과를 제시할 수 있음
- 다음 <표 4.1>에서는 2017년 소득세법 시행령 개정 이후 근로소득으로 과세된⁷⁷⁾ 직무발명 보상금을 대상으로 2018년에 48개 대학의 산학협력단의 과세 현황을 보여주고 있음

77) 해당 시점에서는 비과세 한도가 300만 원이었기에 연간 300만 원을 초과하여 보상금을 받은 연구자를 대상으로 한 조사 결과임



<표 4.1> 2018년 대학 산학협력단의 직무발명 보상금 과세 현황

(단위: 명, %, 만 원)

	소속 연구자수(A)	직무발명 보상금에 대해 과세를 받은 소속 연구자수(B)	직무발명 보상금에 대해 과세를 받은 소속 연구자 비율(B/A)	소속 연구자의 직무발명 보상금 총액(C)	1인당 직무발명 보상금(C/B)
전체 합계	4,109	951	23.14	1,508,704	1,586
전체 평균	85	19.81	23.14	31,431	1,586

자료: 전국대학교 산학협력단장·연구처장협의회 내부자료

- 2018년에 전체 대학에서 근로소득으로 과세된 직무발명 보상금의 총액은 약 150억 원 수준이며, 대학별 평균적으로 3억 1,431만 원이 지급되었음
- 전체 연구자 중에서 23.14%만이 직무발명 보상금으로 인하여 본 급여 외에 추가적인 근로소득세가 과세되었으며, 1인당 평균적으로 1,586만 원이 과세되었음
- 대부분의 대학 산학협력단 소속 연구자들은 소득세율 구간이 높으며, 여기에 직무발명 보상금이 근로소득에 추가로 합산됨에 따라서 최대 46.2%(지방소득세 포함)의 세부담이 예상됨
- 여기에 건강보험료 등 근로소득 금액을 기준으로 부과되는 준조세 부담 증가 또한 연구 의욕을 저하시키게 됨
- 해당 조사 결과에 따르면
 - 연구자의 소득 수준에 따라 높은 세율이 적용됨에 따라서 중대형(1억 원 이상) 기술 이전을 기피하는 현상이 발생하고 있고
 - 기술 이전 수입이 현저히 낮아지고, 기타소득으로 과세되는 일반 기업체 용역 체결 수가 급증하고 있으며
 - 특허권 등 기술 이전보다 산업자문, 기술지도 등 우회적 방법을 활용하는 사례가 발생하는 등의 부작용이 매우 심각한 것으로 나타남
- 이러한 직무발명 보상금을 본 연구의 개선 방안에 따라서 기타소득으로 구분하고, 비과세 한도를 상향 조정하게 된다면 이러한 부작용을 해소함으로써 각 개인 연구자 입장에서는 직무발명 의욕이 고취될 것임

- 이로 인하여 직무발명 보상금 제도의 실효성 또한 크게 증가할 것으로 사료됨
- 만약 개선안과 같이 1인당 평균 보상 금액이 기타소득으로 분류되고 비과세 한도가 3,000만 원으로 증가되며 60%의 필요경비를 인정받게 된다면, 개인의 입장에서는 대부분 비과세 될 것임
- 실무적으로 산학협력단에서 중대형 계약으로 보고 있는 1억 원 이상 규모의 직무발명 보상금의 경우에는 근로소득 구분 시에 비하여 기타소득 구분 시에 세부담이 현저히 줄어들게 됨
 - 2018년 A교수 기술 이전 인센티브 지급액: 32,006,000원
 - 인건비 기준(30%) 납세액: 9,601,800원
 - 기타소득 기준(6.6%) 납세액: 2,112,396원
 - 2018년 B교수 기술 이전 인센티브 지급액: 11,735,000원
 - 인건비 기준(25%) 납세액: 2,933,750원
 - 기타소득 기준(6.6%) 납세액: 774,510원
 - 소득세법 시행령 개정 전인 2016년 직무발명 보상금을 1,570만 원 받은 C교수는 2017년 직무발명 보상금으로 1,368만 원을 받아 전년보다 202만 원 감소하였으나 결정세액은 1,260만 원에서 1,670만 원으로 400만 원 증가함
 - 2018년 직무발명 보상금 2,559만 원(2016년 대비 989만 원 증가)을 받아 연말소득 정산 결과 결정 세액이 2,580만 원(2016년 대비 1,320만 원 증가)이 되어 직무발명 보상금보다 세금이 더 많게 되었다며 직무발명 보상금으로 인한 세금 증가로 기술 이전에 대해 부정적인 견해를 갖게 됨
- 한편, 전체 대학의 직무발명 보상금 규모에 최고세율을 적용하는 경우에도 소득세 세수는 63억 원 정도($150\text{억} \times 42\%$, 근로소득 공제, 개인별 인적 사정 등 고려하지 않은 단순 최대 수치)
- 이를 기타소득으로 구분하는 경우에 전체 금액이 비과세 대상에 해당한다고 하더라도 세수 감소 효과는 63억 원에 불과하게 됨
- 또한 기타소득으로 구분하고, 전체 금액이 과세 대상에 해당하는 경우라고 가정하고 60% 필요경비에 최고세율을 적용한다면 대략 25억 원 정도의 세수가 확보됨($150\text{억} \times (1-0.6) \times 42\%$)



- 결국 기타소득으로 구분되는 경우에 소득세 세수 감소는 최대 63억 원에서 최소 38억 원 정도의 규모로, 직무발명으로 인한 경제 효과에 비하여 매우 미미한 수준에 불과함

○ 이처럼 직무발명 보상금의 소득 구분에 따른 경제 효과는 국가 전체적으로 보았을 때 아주 미미한 수준의 세수지만, 연구자 개인에게는 상당한 세부담으로 받아들여지고 있음을 파악할 수 있음

- 이는 국가가 앞장서 직무발명 보상제도를 활성화시킴으로써 기업에 더 유능한 인재를 유치할 수 있도록 지원하고 기업의 매출 증진을 통한 국가 경제를 활성화를 도모하는 선순환 구조가 될 수 있도록 노력하여야 함에도, 오히려 비과세 한도의 축소를 통하여 이를 방해하고 있는 것임
- 뿐만 아니라 직무발명 보상금에 대한 비과세 한도를 축소한 것은 공공 기술 사업화 활성화를 저해하는 문제를 발생시키고 있음
- 김경진 의원은 2017년 개최된 공공 기술 사업화 활성화를 위한 토론회에서 “문재인정부의 국정 운영 5개년 계획은 과학기술 발전이 선도하는 4차 산업 혁명에 대비하여 고부가 가치 핵심 기술 개발, 신산업 육성 등을 강조하고 있는데, 개정된 소득세법은 연구자의 연구 의욕을 감소시켜 직무발명 창출 및 기술 사업화 활동을 위축시킴으로써 국가 경쟁력이 약화될 수 있다”고 언급함
- 즉, 과거에 기타소득으로서 비과세 대상으로 규정할 때에는 세금에 대한 부담 없이 성과를 낸 만큼 연구자가 보상금을 받음으로써 연구 의욕이 고취되고 이는 기업의 생산 효율 증대로 연결되면서 종국적으로 국가의 경제 활성화로 이어질 수 있었지만, 현행 세법으로는 연구자가 직무발명을 통하여 수령한 보상금을 최대 46.2%까지 세금으로 국가가 징수해 가니 연구자는 연구 의욕을 상실할 수밖에 없는 실정을 이야기한 것임
- 또한, 연구자의 입장에서 볼 때, 연구 개발을 한다고 하여 무조건 보상금을 받는 것도 아니고 직무발명에 대한 실패 부담까지 안은 상태로 직무발명 보상금 수령 조건을 모두 갖추 때에야 비로소 보상금을 수령할 수 있는 것인데, 이러한 연구자의 직무발명에 대한 위험은 고려하지 않고 비과세 한도 500만 원까지만 인정하고 초과분은 과세하는 것은 발명진흥법의 근본 취지에도 부합하지 않음⁷⁸⁾

78) 위 <표>에서 확인 가능한 것처럼, 전체 연구자 중에서 직무발명 보상금을 수령한 비율은 23% 정도에 불과함.

- 오늘날 과학기술이 고도화되면서 기업의 연구개발은 회사 내의 연구소를 중심으로 하여 체계적으로 행하는 경우가 많으며, 그 연구소 내의 물적·인적 자원 및 구체적인 경험을 기초로 하여 이루어지는 발명이 큰 비중을 차지하고 있음
 - 또한, 특허청에 출원된 전체 특허 출원 중에서 직무발명이 차지하는 비율이 80%를 넘고 있으며, 직무발명이 기술 혁신에 차지하는 비중이 갈수록 증대되고 있음⁷⁹⁾
 - 이와 같이 직무발명은 국가의 경쟁력 제고에 매우 많은 역할을 수행하고 있기 때문에 비과세 금액을 상향 조정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할 것임

79) 특허청 홈페이지(www.kipo.go.kr) 및 김정완·김원준, 「지식재산권법」, 전남대학교출판부, 2013, pp.93-95.



결론: 직무발명 보상 조세제도 개선에 대한 정책 제언





V

결론: 직무발명 보상 조세제도 개선에 대한 정책 제언

1. 현행 직무발명 보상 조세제도 개선의 당위성

□ 직무발명 보상 조세제도 개선이 필요한 이유

- 선진국들과 마찬가지로 우리나라의 경우 전체 특허의 80%가 대학이나 연구소 같은 기관 또는 법인에서 생산되는 직무발명에 속하므로, 직무발명은 곧 국가 기술 경쟁력의 원천이고, 국가 R&D의 핵심 자원임에 틀림없음
- 직무발명으로 생산된 산업재산권(예, 특허 등)에 대한 권리를 사용자가 승계한 경우에는 「발명진흥법」 제15조 등에 의하여 정당한 보상금을 받도록 받는데, 이를 ‘직무발명 보상금’이라고 정의하고, 이에 대하여 적절한 세금의 종류(예, 기타소득세, 근로소득세)와 과세 한도를 정하는 소득세법 규정과 그 시행령의 행사를 직무발명 보상법과 제도라고 칭함. 이중 직무발명 보상 조세법(이하 직무발명조세법)은 다른 법률과 마찬가지로 국민의 평등권과 조세 형평성 및 공정성이 생명임
- 한 국가의 기술 경쟁력은 일반적으로 독점적인 양질의 산업재산권 보유량으로 비교되기도 하므로, 이것의 선점 여부가 국가의 기술 경쟁력을 좌우한다고 봐야 함. 따라서, 국가 산업 발전은 연구원들의 직무발명 의욕을 통한 우수 특허의 생산과 이의 상용화를 위한 특허권 양도 시 적절한 보상이 이루어져야 지속적인 발명의 동기 부여와 추진력을 제도적으로 지원하여, ‘국가 R&D의 선순환 시스템’을 구축하는 것이 중요함
- 하지만, 최근의 상황을 보면, 우리나라는 직무발명 조세 정책 면에서 정부가 크게 잘못을 하고 있어 발명 연구자와 정부의 조세 관리 부처, 대학 산학협력단 간에

많은 갈등과 혼란을 겪고 있음. 바로 연구자 차별과 불공평 징벌적 과세를 부과하도록 개정된 직무발명 조세법 때문임. 이로 인해 연구원들의 발명 의욕 저하는 물론이고, 국가 기술 경쟁력의 쇠퇴와 무역 분쟁에서 극복이 크게 우려되고 있음

- 사실, 직무발명 보상에 대하여 정부는 1980년부터 2016년 말까지는 비과세 대상 또는 기타소득으로 인정하여 비교적 세금이 부담스럽지 않아, 연구 발명자들이 의욕적으로 다양한 분야에서 창의적인 발명을 통해 기술 이전을 활발하게 할 수 있었고, 그 덕에 힘입어 오늘날 우리나라의 기술 수준이 선진국 수준으로 상승할 수 있었음은 잘 알려진 사실임

□ 현행 직무발명 보상 조세제도는 과학기술 혁신의 장애물

- 기획재정부가 주도해 2016년 말에 졸속으로 개정한 ‘현 직무발명 조세법’에 따르면, 직무발명 보상금에 대해, 재직 중인 직무발명자에게만 최대 42%의 징벌적 근로소득세를 과세하는 등 재직자와 퇴직자를 차별해 세금을 부과하고 있음. 이로 인해 지속적인 후속 연구 기회는 물론 발명 의욕마저 상실하고 있는 게 현실임
- 더욱이 요즘 무역 분쟁이 치열하고, 신기술 개발에 막대한 투자가 이루어지고 있는 때에 정부 내 부처 간에도 발명 진흥과 관련해서도 일관성이 없을 뿐 아니라 발명 의욕을 북돋을 아무런 유인책도 없음. R&D투자와 발명자의 연구 몰입이 동시에 이루어 질 때 새로운 지식재산권 창출을 기대할 수 있음. 기획재정부 등 조세 당국의 발명 연구자들에 대한 불합리한 징벌적인 세금 폭탄은 이런 국가적 위기 상황을 극복하기는커녕 시대적 흐름을 역행하는 일임
- 정부가 최근 일본의 수출 규제에 대응하기 위해 2020년에 4조 7천억 원을 투자해 원천 기술과 소재 개발을 촉진하고, 혁신 성장을 위한 의지를 보여주는 것도 이러한 맥락에서 이루어졌음. 그러나 무엇보다도 이런 정책의 성공 여부는 연구자의 발명 의욕이 가장 중요한 핵심 요인이므로, 현재의 직무발명 소득세법 하에서는 그런 막대한 투자 효과를 기대하기 어려울 전망이다



- 이러한 잘못된 조세정책은 과학기술 혁신을 가로 막고 있을 뿐 아니라, 국민의 평등권(헌법 제11조)을 무시한 위법적인 법 시행으로 그 폐해가 심각함(제3장 참조). 조만간 이 징벌적인 직무발명 조세제도를 고치지 못할 경우, 치열한 무역 분쟁과 기술 경쟁 속에서 국가 기술 혁신의 동력을 잃는 치명적인 결과를 가져 오지 않을까 우려됨
- 결론적으로, 현재 시행 중인 정부의 직무발명 조세정책은 법적 근거와 시행상 많은 문제점을 안고 있으며 이로 인한 각종 부작용의 발생은 물론 향후 국가 기술 혁신 과정을 막을 수 있는 우려 때문에 이의 개정이 시급한 실정임

2. 현행 직무발명 보상 조세제도의 주요 결함과 그로 인한 부작용 가능성

현재 시행 중인 직무발명 조세제도는 앞에서 언급했듯이 크게 3가지 중대 결함으로 요약됨. 이들은 별개가 아니라 상호 의존적이며 인과 관계로 뒤엉켜 있어 이를 해결할 수 있는 유일한 방법은 현행 직무발명 소득세법과 그 시행령을 대폭 개정하는 것임

□ 3대 결함 사항

- 하나: 현 직무발명 소득세법(소득세법 제20조 제1항 제5호)은 헌법 제11조 평등권에 저촉됨
 - 현행법은 입법자가 특허권 등의 양도 또는 대여로 인한 소득과는 달리 재직자의 직무발명 보상금에 대하여 근로소득세(최고 42%)를 중과세하고 있는데 (「소득세법」 제20조 제1항 제5호), 이는 목적이 분명하지 않은 자의적 차별 행위이므로 위헌심판 대상이기도 함. 본질이 일반 특허권 등의 양도 또는 대여로 인한 소득 등과 전적으로 동일한 종업원 등의 직무발명 보상금에 대하여 소득세를 과세함에 차별적으로 처분하는 것은 「헌법」 제11조의 평등권 내지 조세 평등 주의에도 위반된다고 할 수 있음

○ 둘: 현 직무발명 조세법은 이중적 과세 기준을 적용하고 있어 위법임

- 현행 소득세법에서도 발명 특허와 같은 산업재산권 양도는 모두 기타소득으로 규정해 놓고 있는데, 동일한 기타소득에 대하여 근무 관계의 유지 여부(재직 vs 퇴직)에 따라 세부담에 현저한 차이를 주는 소득의 구분 변경(근로소득에서 기타소득으로의 구분 변경)을 초래하는 것은 위법임
- 특허 양도 계약으로 얻은 기타소득에 무거운 근로소득세를 부과하고 있음은 과세 요건 법정주의 및 명확주의를 위배하여 국민의 재산권을 과도하게 침해한 것으로 볼 수 있음
- 특허권 등을 양도하거나 그 전용실시권을 설정하고 받는 보상금이 근로소득세 부과 대상이라고 처분하는 것은 「발명진흥법」에서 채택하고 있는 법정 보상 제도의 취지에도 위배됨

○ 셋: 현행 직무발명 조세법은 사회적 합의 없이 졸속으로 개악된 소득세법으로 원천 무효로 생각됨

- 비과세를 하던 과거 직무발명 소득세법을 현재의 문제가 많은 직무발명 소득세법으로 개정할 때, 관련 분야 종사자들에게 왜 이처럼 급격하게 소득세법을 바꿔야 했는지에 대한 당위성이나 이유를 공개적으로 제시한 바 없고, 국민적 합의 과정을 위한 논의도 없었던 까닭이 졸속 입법을 강행한 것이 맞다면, 사회 통념상 현행 직무발명 소득세법은 완전 무효일 수 있음

□ 5대 부작용

○ 부작용 1. 현 직무발명 관련 조세법은 발명 의욕 저하와 조기 퇴직을 유도해 제품화 개발을 막고 있음

- 현행법은 활동이 왕성한 재직 연구자들이 직무발명 보상금에 부과되는 막대한 근로소득세를 피하기 위해 조기 퇴직과 발명을 포기하게 함으로써, 그들의 산업화 지원 연구를 미리 차단할 우려가 있음

○ 부작용 2. 위헌적인 직무발명 조세법을 남용함으로써 정부 스스로 국가 기술 혁신을 방해하고 기술 경쟁국을 이롭게 하고 있음



- 2015년 대법원과 조세심판원의 여러 판결들에 의해 지급 방법이 세금종류를 결정했던 사례가 위법 판정을 받았는데도 정부가 직무발명 소득에 대해서만 불평등하고 차별적 과세를 계속 하는 것은 국가 권력의 중대한 남용일 수 있음
- 이로 인해, 연구력이 저하되어 국가 기술 혁신이 가로막힐 수 있을 뿐 아니라, 우리의 기술 경쟁국인 일본, 중국을 이롭게 할 수 있음
- 부작용 3. 국가 R&D 선순환을 파괴하여 새로운 기술 개발을 차단할 수 있음
 - 현 직무발명 조세법은 국가 기술경제 개발의 원동력인 R&D 선순환 시스템을 파괴하여 연구 의욕 저하와 기술 투자 등을 차단할 수 있음
- 부작용 4. 현행 직무발명 조세법은 연구 발명자들의 과도한 재산권을 침해하고 있음
 - 직무발명 소득은 정상적인 근로소득과는 달리 임시소득 또는 변동소득의 성격을 지니고 있어, 특정 연도 편중성은 불가피한데, 현행법 하에서는 평균과세 장치를 도입하여 무조건적인 종합소득세를 부과하는 데, 이는 곧 지나친 재산권 침해임
 - 기타소득에 해당하는 직무발명 보상금은 원천징수되는 소득임에도 불구하고 조건부 과세 방식을 적용하지 않고 원천징수되지 않는 범죄성 뇌물 등과 같이 무조건 종합과세가 되고 있어 매우 불합리함
 - 특히, 근로소득세와 지방세, 종합소득세를 내는 바람에 오히려 받은 보상금보다 세금을 더 내는 억울한 사례도 실제 보고되고 있음(<표 1.2> 참조)
- 부작용 5. 발명 의욕 저하로 기술 변화에 적응 못해 글로벌 시장에서 사라진 노키아의 길을 따라갈 수 있음
 - 정부가 오직 세수 확보에만 혈안이 되어 발명자에게 세금 폭탄을 던지는 근시안적인 조세정책을 과감히 바꾸지 않으면, 휴대폰의 선두주자였다가 기술 변화에 적응 못해 경쟁 대열에서 사라진 노키아의 길을 따라갈 수 있음

3. 직무발명 관련 조세제도의 개선을 위한 정책 제안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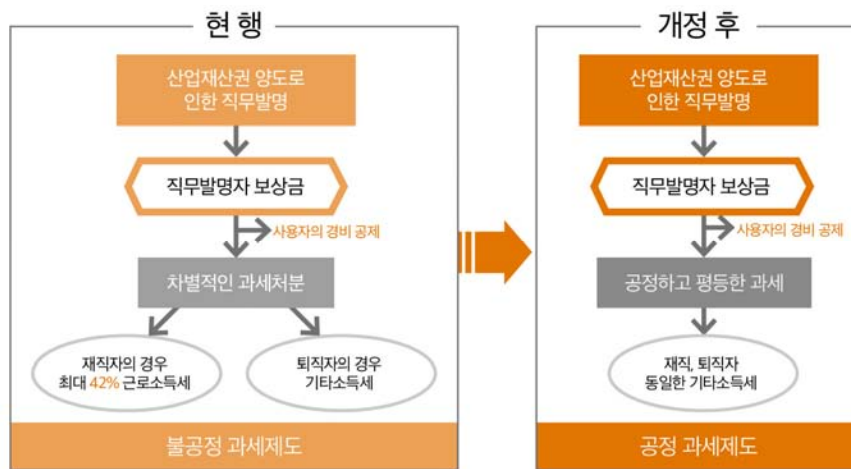
특허청의 2018년도 지식 재산 활동 실태 조사에 따르면, 효과적인 지식 재산 창출을 위해서는 기업의 경우, ‘직무발명 보상제도 실시 기업에 대한 세제 혜택 부여 및 관련

규정의 정비 지원'을 해서라도 직무발명에 대한 정당한 승계와 보상 문화를 정착시킬 필요가 있으며 보상 수준을 확대하는 것을 검토해야 한다는 제안이 나온 바 있음. 이에 따라, 본 정책 연구에서는 현 직무발명 조세제도가 갖고 있는 갖가지 문제점에 대한 개선 방안과 그의 법률적, 상식적 근거를 각기 다른 각도에서 분석하여 제시하고자 함

□ 직무발명 보상에 대한 과세 체계 개선안 제언

- 향후 직무발명 보상 과세 체계는 <그림 5.1>과 같이 개선되어야 하는데 그 이유는 다음과 같음

<그림 5.1> 직무발명 조세제도의 개정 전과 개정 후의 차이



- 하나, 직무발명 현행 소득세법은 국민의 평등권(헌법 제11조)의 정신에 따라 개정되어야 함
 - 근무 지속 여부에 따라 동일한 소득에 대해 재직 여부에 따라 차별적인 세금 부과는 「발명진흥법」의 취지 등에 비추어 보아 당연히 철폐되어야 함. 퇴직한 후에 지급받는 직무발명 보상금은 거의 대부분 소송 등을 통하여 받는 경우 이므로, 재직 중에 지급 받은 직무발명 보상금에 근로소득으로 과세하는 것은 근로자에게 더 불리한 결과를 초래하기 때문임



- 둘, 다른 산업재산권 양도와 동일하게 직무발명 보상금에 대한 과세도 기타소득세를 적용하여야 함
 - 직무발명 보상금은 「소득세법」(제21조 제1항 제7호)상 양도소득 또는 기타 소득에 해당할 수 있으나 실제로 전자의 경우 과세 대상을 부동산과 주식 등으로 한정하고 있어 이의 적용은 불가능함. 직무발명 보상금은 소득의 특성상 취득가액 자체가 존재하기 힘든 현행 조세 구조를 갖고 있기 때문에 수입 금액의 일정한 비율을 필요경비로 공제하는 기타소득으로 분류하는 것이 더 타당함(<그림 5.1>)
 - 직무발명 보상금은 매우 이례적이거나 일시적으로 발생하는 소득이므로, 지급 방식에 상관없이 기타소득으로 분류되어야 함. 기타소득의 비과세 한도는 직무발명 보상금의 50%에 상당하는 금액을 비과세하되, 그 금액이 3,000만원에 미달하는 경우에는 전액을 비과세하는 게 바람직함
 - 고용 관계가 없는 지급 기관(예, 대학 산학협력단)이 발명자인 교직원에게 발명 보상금을 지급하는 경우에는 기타소득으로 과세하는 것이 타당함
- 셋, 직무발명 수입에 대해서는 ‘조건부 종합과세’가 되어야 함
 - 현재 기타소득으로 과세되는 직무발명 보상금은 「소득세법」 제14조에 따라 무조건 종합과세 되는데, 이는 뇌물, 알선 수재 및 배임 수재에 의하여 받는 금품, 계약금이 위약금·배상금으로 대체되는 경우에는 원천징수가 되지 않는 것을 근거로 무조건 종합과세되는 것과 같은 방식으로 처분되고 있음
 - 문제는, 기타소득에 해당하는 직무발명 보상금은 원천징수되는 소득임에도 불구하고 조건부 과세 방식을 적용하지 않고 원천징수되지 않는 뇌물 등과 같이 무조건 종합과세가 되고 있어 매우 불합리함
 - 지금처럼 무조건적인 종합과세로 변경된 이유는 정부의 어처구니없는 행정 착오나 실수 때문으로 보임. 즉, 2016년 12월 정부가 직무발명 보상금에 대한 과세 방식을 개정할 당시 조건부 과세 방식을 적용하는 기타소득을 열거한 「소득세법」 제14조 제3항 제8호 가목에 직무발명 보상금을 나타내는 신설 조문인 「소득세법」 제21조 제1항 제22호의2를 행정 착오로 열거하지 않아서 생긴 입법 오류이므로 반드시 재개정되어야 함

- 넷, 현행 소득세법을 개정 시에는 보다 투명한 절차로 진행해야 함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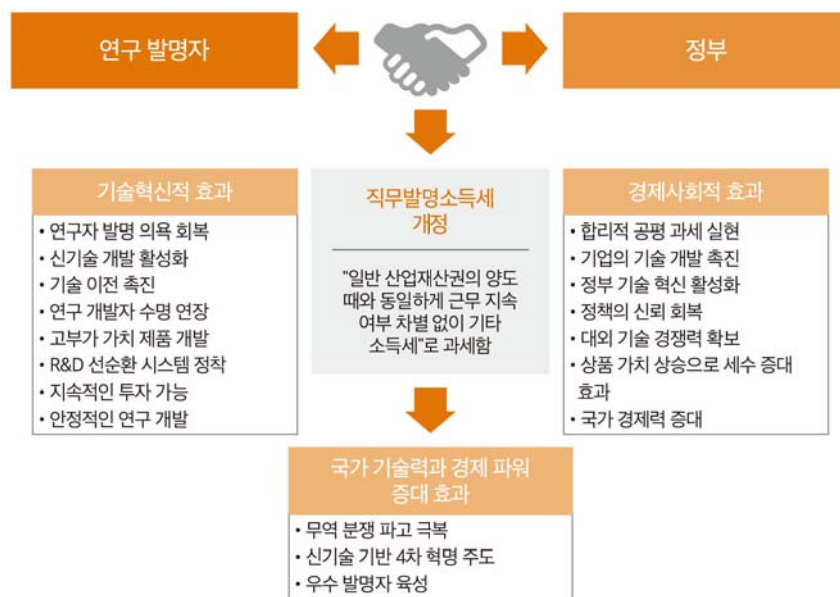
과거 2016년 말에 일어난 일을 교훈 삼아 이번에 새로 본 소득세법을 개정 시에는 기획재정부가 정부안을 만든 후 관련기관과 협의는 물론 이해 관계가 있는 민간 과학기술 단체 등과도 공청회를 통해 충분히 의견을 수렴한 후 의원 입법 등의 절차를 통해 진행하여야 한다고 생각함

4. 직무발명 보상제도 과세 체계 개선이 경제 발전에 미치는 긍정적인 영향

□ 개선 방안에 따르는 긍정적인 경제 효과

- 현 직무발명 보상 조세제도를 제안한 대로 개선할 경우 다음과 같은 긍정적인 효과가 나올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함(<그림 5.2>)

<그림 5.2> 직무발명 조세제도 개선 후 기대되는 경제적 파급 효과





5. 종합 결론

- 개선 방향: 직무발명 보상에 대한 조세제도를 개정할 때는 발명자의 의욕을 살려 직무발명을 장려하고 활성화시켜 국가 기술 경쟁력을 강화시키는 쪽으로 추진해야 함
 - 발명자주의를 채택하고 있는 우리나라에서는 근무 지속 여부로 세금 부담이 달라짐은 재직자에 대한 차별임
 - 퇴직한 후에 지급받는 직무발명 보상공금은 거의 대부분 소송 등을 통하여 받는 경우가 많으므로, 근로자에게 더 불리한 결과를 초래하기 때문에 현재 소득세법을 보다 발명자 친화적인 소득세법으로 개정해야 발명 의욕이 회복될 것임
 - 공평 과세: 다른 산업재산권 양도와 동일하게 직무발명 보상공금도 근무 지속 여부와 관계없이 기타소득세로 과세해야 함
 - 직무발명 보상공금은 「소득세법」(제21조 제1항 제7호)상 양도소득 또는 기타소득에 해당한다고 규정한 만큼, 발명자의 근무 여부와 상관없이 기타소득으로 해야 함
 - 그리고 소득의 특성상 취득가액 자체가 존재하기 힘든 현행 조세 구조를 갖고 있기 때문에 수입 금액의 일정한 비율을 필요경비로 공제하는 기타소득으로 분류하는 것이 더욱 타당함
 - 양도소득세로 과세할 경우는 부동산과 주식 등으로만 과세 대상을 한정하고 있어 이의 적용은 불가능함
 - 고용 관계: 대학의 경우 산학협력단이 발명자인 교직원에게 발명 보상공금을 지급하는 경우에는 당연히 기타소득으로 과세하여야 함
 - 대학의 발명 연구 관련 교직원은 산학협력단과는 고용 관계가 없으므로 여기서 지급받는 직무발명 보상공금에 대하여 근로소득으로 과세하는 것은 정당하지 않음
 - 실제 사용자는 대학(총장)으로, 별도의 법인인 산학협력단과 교직원은 사용자와 종업원 관계가 성립되지 않기 때문임

- 소득의 성격: 직무발명 보상금이 마치 급여의 일부인 상여금으로 취급해 근로소득세로 부과하는 것은 시정해야 함
 - 상여금은 회사 전체의 성과에 대하여 정기적으로 지급하는 것인데 반하여, 직무발명 보상금의 경우에는 그 종업원 등의 개인적인 성과에 대하여 지급하는 것이기 때문에 근로소득의 일종이 아님. 당연히 기타소득이 되어야 하는 이유임
 - 우리나라와 여러 가지 면에서 비슷한 경쟁 상대인 일본의 경우도, 이를 근로 소득의 종류인 상여금이 아닌 “일시적인 잡소득”으로 보고 있음을 유념해야 함
- 비과세 한도: 특허권 양도 관련 직무발명 소득세 부과 시 적절한 비과세 한도를 설정해야 함
 - 특허권 등을 사용자가 아닌 제3자에게 양도할 경우 그 양도 대가는 같은 법에 따라 기타소득으로 구분되어 같은 법 시행령 제87조 제1의2호에 따라 금액 규모에 관계없이 일정 한도의 필요경비를 인정받게 되어있음
 - 현재 전국 직무발명 평균소득이 선진국에 비해 매우 영세함을 감안해 기타 소득에서 정하는 비과세 한도를 3,000만 원으로 정하고, 초과분에 대하여는 규정대로 처분하는 것이 바람직함
- 법률 오류 시정: 행정 착오로 발명보상 시 조건부 종합과세를 못하게 한 입법 오류는 즉시 수정되어야 함
 - 지금처럼 직무발명 보상 소득이 무조건적인 종합과세로 변경된 이유는 정부의 어처구니없는 행정 실수로 인한 것이므로 즉시 수정되어야 함
 - 즉, 2016년 12월 정부가 직무발명 보상금에 대한 과세 방식을 개정할 당시 조건부 과세 방식을 적용하는 기타소득을 열거한 「소득세법」 제14조 제3항 제8호 가목에 직무발명 보상금을 나타내는 신설 조문인 「소득세법」 제21조 제1항 제22호의2를 행정 착오로 열거하지 않아서 생긴 명백한 입법 오류이기 때문임
 - 현재 기타소득으로 과세되는 직무발명 보상금은 「소득세법」 제14조에 따라 무조건 종합과세 되는데, 이는 뇌물, 알선 수재 및 배임 수재에 의하여 받는 금품, 계약금이 위약금·배상금으로 대체되는 경우에는 원천징수가 되지 않는 것을 근거로 무조건 종합과세되는 것과 같은 방식으로 처분되고 있음



○ 직무발명 보상에 대한 조세제도를 설계할 때는 직무발명을 장려하고 활성화시킬 수 있는 방향으로 추진되어야 함

- 직무발명 보상금에 대하여는 근무 지속 여부나 근무처에 관계없이 기타소득세를 적용함으로써 발명자의 의욕을 높이고 국가 기술 경쟁력을 강화시키는 쪽으로 가야 함
- 국내·외적으로 무역 분쟁과 첨단 기술 개발 등 4차 산업혁명과 관련된 국가의 혁신 기술이 요구되는 때이므로, 이 모든 것의 전제는 “발명자의 발명 욕구 회복”임. 이번 제안된 직무발명 조세제도의 혁신은 발명자의 사기와 국가 경쟁력을 동시에 제고시킬 수 있는 가장 첫걸음일 것임
- 발명이 상용화로 이어져 판매 수익이 창출되면, 이러한 수익에 대하여 추가적으로 법인세 등을 부과할 수 있기 때문에 직무발명 자체에 대하여는 일정한 금액을 비과세하여도 국가 전체적인 입장에서는 세수 손실이 거의 없을 뿐만 아니라, 오히려 증가할 수 있는 결과를 가져올 수 있을 것임. 회사의 연구원이 개발에 참여하여 특허 출원을 하고, 이에 회사의 직무발명 보상 규정에 따라 특허 출원 시에 보상금을 받은 경우, 일반적으로 제품의 제조와 판매, 기술 이전 및 특허권의 라이선싱 등을 통하여 회사는 연구원에게 지급한 보상금보다 훨씬 많은 이익을 창출하게 될 것임. 이와 같이 창출된 이익에 대하여는 법인세를 과세할 수 있을 뿐만 아니라, 그 회사의 이익에 대하여 주주가 수령하게 되는 배당에 대한 소득세와 주식의 양도 차익에 대한 양도소득세 등 다양한 조세를 부과할 수 있을 것인데 현행법을 유지함은 ‘소탐대실의 우’를 범하는 것임
- 직무발명 보상제도를 통하여 연구 개발 투자와 시설 등을 제공한 사용자와 창조적인 노력을 제공하여 발명을 한 종업원 사이에 합리적인 이익 배분을 함으로써 종업원의 개발 의욕을 장려하고 기업은 이를 사업화에 활용함으로써 이윤을 창출하고 R&D에 재투자할 수 있으며, 궁극적으로는 국가의 산업 발전에 이바지할 수 있고, 기업은 직무발명 보상에 대하여 출원·등록·실시 보상 등을 시행하고 있는데, 출원·등록 보상은 건당 일정 금액의 보상을 시행하고 있으며, 실시 보상은 기준 금액에 일정한 비율만큼을 보상하고 있음

- 정부는 오직 세수 확보에만 혈안이 되어 발명자에게 세금 폭탄을 던지는 근시안적인 조세 정책을 과감히 바꾸어 특허권을 키워서 제품이 생산되어 많은 세수를 확보할 수 있는 긍정적인 방안을 채택할 것을 강력히 권고하고자 함

□ 통합적인 노력으로 직무발명 보상 조세법을 개정해 국가 기술 개발과 경제 발전을 촉진시켜야함

- 통합적 노력: 직무발명 조세제도 개선을 위해 정부, 국회 연구계 및 산업계가 일치단결하여, 직무발명 보상제도를 구체적으로 다음과 같이 개선해야 함
 - 정부는 우선 연구자 친화적 직무발명 조세법을 발의하여 직무발명 보상의 생산적 확산을 추진해야 하고, 평등권 기반 직무발명 조세제도를 정착시켜야 함
 - 국회는 계류 중 조세법 개정안을 신속 처리 처리해 발명 진흥 관련법의 선진화는 물론 발명자보호법 의원 입법을 발의해야 함. 구체적으로 다음과 같은 법조항의 개정을 요구함
 - 기업은 직무발명 기반 기술 경쟁력 선진화 정착을 통해 사용자와 발명을 한 종업원이 합리적으로 이익을 배분할 수 있도록 하여, 종업원의 발명 의욕을 회복시켜야 하고
 - 이를 사업화에 활용함으로써 이윤을 창출해 R&D에 재투자할 수 있으며, 궁극적으로는 국가의 산업 발전에 이바지할 수 있어야 함
 - 대학은 산학단과 교원, 그리고 연구원 간의 합리적 이익 공유 제도를 실행하고, 직무발명자 지원 시스템을 확대해 기술 이전 후에도 연구가 지속되도록 장려해야 함
- 시너지 효과: 현행 직무 관련 조세법 개정이 앞서 언급한 방향으로 이루어진다면 발명자의 발명 욕구가 회복되고 첨단 기술 개발 등 4차 산업혁명과 관련된 국가의 기술 혁신도 앞당길 수 있을 것임
- 세수 증대: 발명이 사업화에 따라서 수익이 창출되면, 이러한 수익에 대하여 추가적으로 법인세, 주식 차익에 따른 양도소득세 등을 부과할 수 있기 때문에 직무발명 자체에 대하여는 일정한 금액을 비과세하여도 국가 전체적인 입장에서는 세수 손실이 거의 없을 뿐만 아니라, 오히려 증가할 수도 있을 것임



□ 직무발명 조세법의 개정 대상 법조항 및 관련 조치

- 첫째: 소득세법 제12조 제3호 어목의 비과세소득을 모든 직무발명 보상금으로 수정 및 관련 규정 정비
- 둘째: 소득세법 제20조 제1항 제5호 및 제21조 제22호의2 등의 삭제 및 간주 필요경비 규정 정비
 - 제20조(근로소득) 제1항 제5호 종업원 등 또는 대학의 교직원이 지급받는 직무발명 보상금
 - 제21조(기타소득): 제22의 2. 종업원 등 또는 대학의 교직원이 퇴직한 후에 지급받는 직무발명 보상금(제20조 제1항 제5호가 삭제될 경우 22의2는 불필요함)
- 셋째: 소득세법 시행령 제17조의3에 따른 비과세되는 직무발명 보상금의 범위를 3,000만 원까지로 상향.

□ 맺음말

본 보고서에서는 전체 주제에 대한 문제점과 왜 그것들이 개선되어야 하는 지에 대한 논리적 당위성을 기술했음. 또한, 직무발명에 대한 정부의 과거 잘못된 인식과 법적용의 불공정성 문제 등을 질문 형식으로 제기해 정부의 근본적인 발상의 전환을 촉구하였으며, 이를 토대로 정부는 현행 직무발명 조세제도의 핵심인 소득세법 일부(소득세법 제20조 제1항 제5호)를 최단 시일 내 대폭 개선할 것으로 본 정책 연구를 통해 강력히 요청하고자 함

참고문헌

- 제희열(2000). 헌법학(중), 박영사.
- 과학기술정보통신부(2018). 국가기술혁신체계(NIS) 고도화를 위한 국가R&D 혁신 방안(안).
- 국가통계포털(2019). 과학기술 분야 전임교원 1인당 기술이전 건수 및 기술료 현황, http://kosis.kr/statHtml/statHtml.do?orgId=112&tblId=DT_112017N_055&vw_cd=&list_id=00000054&scrId=&seqNo=&lang_mode=ko&obj_var_id=&itm_id=&conn_path=R1&path
- 국회예산정책처(2017). “비용추계서 미첨부 사유서, 「소득세법 일부개정법률안」의 비용추계 의뢰에 대한 회답 - 직무발명 보상금 비과세”.
- 기획재정부(2016). 2016년 세법개정 후속 시행령 개정, 보도자료, 2016.12.26. https://academic.naver.com/article.naver?doc_id=301605924
- 김완석·정지선(2018). 소득세법론(개정 24판), 삼일인포마인.
- 김정완·김원준(2013). 지식재산권법, 전남대학교출판부.
- 나동규(2013). “대학 직무발명 보상금 비과세제도에 대한 제언”, 한국산학기술학회 논문지, 제14권 제11호, 한국산학기술학회, pp. 5594~5600.
- 노민선(2012). “지식재산 조세지원제도 개선 방안 연구”, 지식재산연구, 제7권 제4호, 한국지식재산연구원, pp.115~140.
- 설민수(2015). “직무발명 보상금 소송의 쟁점: 산정방식과 그 구체적 산정요소를 중심으로”, 사법논집, 제60집, 사법발전재단, pp.205~264.
- 손승우(2017). 지식재산권법의 이해, 동방문화사.
- 윤선희(2005). “직무발명에 있어서 보상제도”, 법조, 제54권 제11호, 법조협회, pp. 19~54.
- _____(2012). “발명진흥법 제15조 제2항에 따른 직무발명 보상에 관한 검토”, 법조, 제61권 제4호, 법조협회, pp.168~198.
- 정승영(2016). “직무발명 보상금의 과세 문제에 관한 연구”, 조세법연구, 제22권 제2호, 한국세법학회, pp. 131~181.



- 정영룡(2019). 직무발명보상금에 대한 소득세법 개정 제언, 제134회 한림원탁토론회 자료집, pp. 81~88.
- 정종섭(2010). 헌법학원론(제5판), 박영사.
- 정태호(2013). “헌법재판소 평등권 심사기준의 재정립 필요성”, 헌법학 연구, 제19권 제3호, 한국헌법학회, pp. 79~124.
- 지선구(2016). “대학 직무발명 보상금에 대한 소득세 과세 관련 쟁점 검토”, 한국산학기술학회 논문지, 제17권 제5호, 한국산학기술학회, pp. 219~226.
- 통계청(2016). 2016년 직무발명 보상제도 운영 우수사례집.
- 특허청(2017). (2017년도) 지식재산활동 실태조사.
- _____(2018). (2018년도) 지식재산활동 실태조사.
- 특허청·한국발명진흥회(2011). 2011년도 직무발명제도 운영 우수사례집.
- 하홍준 외(2018). 직무발명보상금과 조세제도 분석 및 시사점, 심층분석 보고서 2018-18, 한국지식재산연구원. p. 2.
- 한수웅(2016). 헌법학(제6판-2016년판), 법문사.
- 황치연(2011). “헌법재판의 심사기준”, 헌법재판연구, 제12권, 한국헌법판례연구회, pp. 181~237.
- 大学等における産学官連携リスクマネジメント検討委員会, 2016. 「大学等における職務発明等の取扱いについて」. 文部科学省.
- 図子善信(2012). “職務発明の対価の所得区分について”, 「新・判例解説Watch, 租税法NO70」, TKCローライブラリー.
- 元氏成保(2011). “職務発明に関して従業者等が使用者等から受け取る金員の所得区分”, 「行政と国民の権利：水野武夫先生古稀記念論文集」, 法律文化社.
- 酒井克彦(2009). “職務発明対価に係る所得税法上の所得区分(1) - 特許を受ける権利と相当の対価-”, 「先端技術関連法研究」8号, 最先端技術関連法研究所.
- 中野辰洋(2013). “職務発明対価に関する所得区分の再検討—大阪地裁平成23年10月14日判決を素材にして—”, 「立命館法政論集」第11号.
- 佐藤英明(2001). “使用者から与えられる報奨金等が給与所得とされる範囲”, 「税務事例研究」61巻, 日本税務研究センター.

- Peter T. Beach(1983). Capital Gain Treatment of a Sale of Computer Software by a Research and Development Limited Partnership, 68 Cornell Law Review 554.
- John Gladstone Mills III, Donald Cress Reiley III, Rober Clare Highly and Peter D. Rosenberg(2016). Tax Treatment of patents - Employee achievement awards, 5 Patent Law Fundamentals (2nd Edition), Westgroup.
- Joshua L. Simmons(2012). Inventions Made for Hire, 2 NYU J.Intell. Prop. & Ent. L. 1.
- Dwight B. Cheever(1903). The Rights of Employer and Employee to Inventions Made by Either during the Relationship, Michigan Law Review, Vol. 1, No. 5 (Feb., 1903).
- 한국발명진흥회 홈페이지. www.kipa.org

한림연구보고서 128

국가 기술 경쟁력 강화를 위한 직무발명 보상 조세제도의 개선

A Proposal for Amendment of Taxation System for Compensation Act of the
Employee Invention

발 행 일 2019년 12월
발 행 처 한국과학기술한림원
발 행 인 한민구
전화 031) 726-7900
팩스 031) 726-7909
홈페이지 <http://www.kast.or.kr>
E-mail kast@kast.or.kr

편집/인쇄 (주)디자인여백플러스 02)2672-1535

I S B N 979-11-86795-49-1 94060

I S B N 979-11-86795-45-3 (세트)

- 이 책의 저작권은 한국과학기술한림원에 있습니다.
- 한국과학기술한림원의 동의 없이 내용의 일부를 인용하거나 발췌하는 것을 금합니다.



이 사업은 복권기금 및 과학기술진흥기금 지원을 통한 사업으로
우리나라의 사회적 가치 증진에 기여하고 있습니다

